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론▶ 5·18특별법과 과거청산 / 박성민

특집▶ 동경재판이 은폐한 전쟁범죄자들

동경재판을 모면한 사람들 / 박원순

-천황 하로하토와 731부대를 중심으로

인도(人道)에 반하는 범죄로서의 일본 종군위안부제도 / 김원

-동경군사재판소에서의 기소 실패를 중심으로

판례평석▶ 이중기동적 양벌규정 / 손동권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특별연구▶ 국제법에 비추어본 제3자 개입금지 규정의 효력 / 조용한

-연대회의 사건에 관한 인권이사회 결정을 중심으로

세계의 인권단체▶ 국제법률기위원회 (ICJ) / 이성훈

논단▶ 과로사의 보상이론과 실무상의 쟁점 / 이경우

아시아의 인권보장체제, 그 현실과 전망 / 박원순

-국가안보로부터 인간안보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

수혈 또는 혈액제제에 의한 에이즈 감염과 법적 책임 / 김삼화

최담▶ '법과 문학'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

/ 안경환, 정종섭, 신현욱, 박성호, 차병직(사회)

• 유현석 변호사의 법조회고 [5] • 피고인석에서 본 재판 • 권말자료

역사비평사

역사비평사

서울시 종로구 풀동 2가 120-1
전화 279-0157, 0976

역
비
인
물
연
구

허 현 언 주



제1부 허현의 생애
출생과 시대적 배경/청년시절
/3·1운동/세계일주여행과
약소민족대회 참석/신간회와
민중대회/단파방송사건과
온둔생활/해방과 건국활동/
남조선노동당/미소공위 결렬과
단독정부 수립/남북연설회의와
최고인민회의/조국전선과
한국전쟁/맞음말

제2부 자료편
일제시기/해방정국/정부수립
이후/부록

심지연 지음
(경남대 교수)

파란의 한국 현대사를 살다간 양심적이고 비타협적인 한 민족주의자의 행로를 되밟은 책

일찍이 일제의 번호사로서 활동하면서도 민족의 입장에 서기를 서슴지 않았고, 조선의 젊은 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민족해방을 위해 싸우는 진실한 혁명기임을 굳게 믿어 이들에 대한 후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았으며, 해방후 민주통일국가 건설을 위해 활동하였던 민족주의자 허현이 왜 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파란의 한국 현대사를 살다간 양심적이고 비타협적인 한 민족주의자의 삶의 궤적을 재구성하였다.

제1부 「허현의 생애」와 제2부 「자료편」으로 구성된 이 책은 격동의 현대사를 살다간 한 한국 지식인의 삶의 편리를 볼 수 있는 출중한 평전일 뿐만 아니라 당시의 시대상황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하다.

472쪽/12,000원

북한사회에 대한 이해을 기적 편향 극복을 위한 책

조선로동당연구

-지도사상과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영구보관

이종석 지음

조선로동당연구

-지도사상과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이종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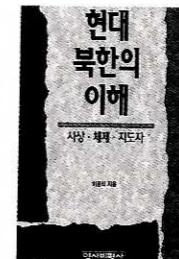
(400쪽 / 신국판 양장본 / 15,000원)

심
시구사에 기초하여 조선로동당의 이론과 역사, 현실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서. 그동안
이데올로기적 장벽으로 인하여 언급조차 힘들었던 북한사회의 올바른 인식을 위하여, 필자는 40여 년간
북한에서 출입된 로동신문, 「근로자」 등 각종 공식 문헌 및 내부 문헌, 망명자들의 증언, 각국 공산당
의 경험 등을 교차 확인하여 북한사회에 대해 내재적·비판적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방
한노리가 이 땅에 횡행하던 시절, 한편으로부터는 주시파라는 의혹과 다른 한편으로부터는 북한
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타부시당한 그 '불행했던 시절'에, 북한사회에 대해 객관적이고 학술적으로 접근
하고자 했던 필자의 대단기의 고민과 노력의 흔적이 병대한 1차장에 대한 치밀하고 철저한 해석 속에
배어 있다.

현대 북한의 이해 : 사상·체제·지도자

이종석 지음



사상=주체사상 체제=유일체제 지도자=김일성·김정일
오늘날 북한사회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요소입니다.
이 책에는 이 세 가지 핵심적인 요소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분석·고찰되어 있습니다.

(304쪽 / 신국판 / 9,500원)

서울시 종로구 풀동 2가 120-1 전화 279-0157, 0976 ▶ 역사비평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차례

시론▶

- 5 · 18특별법과 과거청산 / 박성민 · 10

특집

동경재판이 은폐한 전쟁범죄자들

- 동경재판을 모면한 사람들 / 박원순 · 15
-천황 히로히토와 731부대를 중심으로
인도(人道)에 반하는 범죄로서의 일본 종군위안부제도 / 김원 · 83
-동경군사재판소에서의 기소 실패를 중심으로

판례평석▶

- 이중기능적 양벌규정 / 손동권 · 131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유현석 변호사의 법조회고▶

- 책에 없는 시시한 이야기 ⑤ / 유현석 · 149

특별연구▶

- 국제법에 비추어본 제3자 개입금지 규정의 효력 / 조용환 · 161
-연대회의 사건에 관한 인권이사회 결정을 중심으로
(자료) 국제연합 제네바 인권센터 결정문

세계의 인권단체▶

- 국제법률가위원회(ICJ) / 이성훈 · 199

논단▶

- 과로사의 보상이론과 실무상의 쟁점 / 이경우 · 209
아시아의 인권보장체계, 그 현실과 전망 / 박원순 · 232
-국가안보로부터 인간안보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
수혈 또는 혈액제제에 의한 에이즈 감염과 법적 책임 / 김삼화 · 247

피고인석에서 본 재판▶

- ‘조문파동–구속에서 무죄석방까지’ / 이창복 · 258

좌담▶

- ‘법과 문학’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 / 안경환, 정종섭 · 272
신현숙, 박성호, 차병직(사회)

권말자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 영화진흥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 · 299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 · 305
방송법(안)에 대한 의견 · 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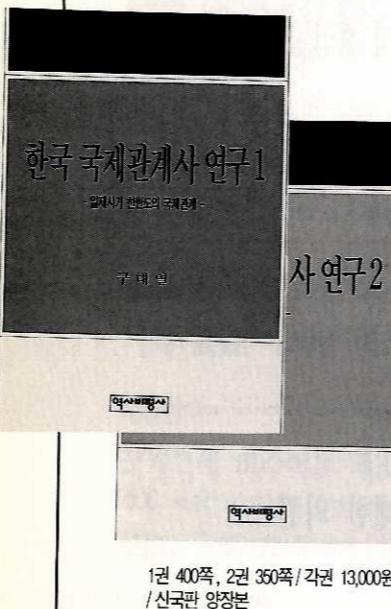
한국 국제관계사 연구

1권 일제시기 한반도의 국제관계

2권 해방과 분단

구 대 열

방대한 외교문서를 기초로 하여 일제시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적 문제들을 정리한 최초의 연구서!!



두 권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일제 식민지시기 한반도의 국제관계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1945년 한국의 해방과 독립이 국제정치의 어떠한 구조 속에서 처리되는지를 규명하려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개국 이후 구한말을 거치면서 열강들은 한국의 상황을 그들의 물질문명이란 기준에서 부패, 무능, 혼란 등으로 인식했던 반면, 일본은 한국에서 근대적 개혁을 추진한다고 평가하면서 전략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도덕적 측면에서도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지지했다. 열강들의 이러한 경험과 인식이 일제시기는 물론, 해방 이후 한국문제를 처리하는 데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한국의 해방과 독립 그리고 분단의 문제는 1945년 종전 혹은 1941년 말 태평양전쟁의 발발과 함께 연합국들이 취하는 정책을 시발점으로 해서는 완전히 이해될 수 없다.

이 책은 이러한 한국 외교사의 한 공백기를 메운다는 형식적 목적과 함께, 당시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제기되는 '한국문제'의 본질을 그 배경을 이루는 열강들의 역사적 인식과 구체적인 정책 등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1권 400쪽, 2권 350쪽 / 각권 13,000원
/ 신국판 양장본

서울시 중구 편동 2가 120-1
전화 279-0157, 0976

역사비평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역사비평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책을 내면서

1권 일제시기 한반도의 국제관과

2권 해방과 분단

1995년 12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제 이 땅에도 정의가 살아숨쉬게 되는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제5호를 폐내면서 젖게 되는 감회이다. 비록 때늦은 감은 있으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과 그 하수인들에 대한 구속수사와 기소는 어두웠던 과거를 청산하고 우리 사회를 정의롭게 하는 데 하나의 출발점으로서 자리매김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5·18특별법 제정과정에서 정부·여당이 특별검사제 도입을 강력 반대했던 사실로부터도 알 수 있듯이, 과거청산의 길목에는 숱한 장애물들이 도사리고 있다. 군사반란 및 내란자 전원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더한층 요구되는 때이다.

이번 제5호에서는 특집으로 “동경재판이 은폐한 전쟁범죄자들”을 기획하였다. 반세기 전에 있었던 재판이 지금에 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시의 냉전상황이 이른바 ‘일본 천황제’를 유지·존속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남성중심주의 시각은 종군위안부와 같은 성차별 문제를 은폐시켰다. 이러한 상황과 시각은 전쟁범죄의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일본의 국제적 시각 형성에 기본틀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동경재판은 미완(未完)의 과거청산이다.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일본 우익인사들의 과거사 왜곡 발언은 시작단계에서부터 축소·왜곡된 과거 청산작업이 종국적으로 어떠한 결말을 초래하는지 우

리에게 하나의 교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별연구로는 「국제법에 비추어본 제3차 개입금지 규정의 효력」을 마련하였다. 이 논문을 통해 우리는 한국의 노동인권 상황이 국제인권 수준에 비추어 얼마나 현격히 동떨어져 있는가를 확인해볼 수 있다. 우리 정부와 사법부의 낙후된 인권의식도 엿볼 수 있다.

그밖에도 여기서 일일이 소개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의 좋은 글들이 제5호에 실려 있다. 바쁘신 중에도 좋은 글을 보내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민변 회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또한 이번에도 변함없이 많은 도움을 주신 역사비평사 여러분과 민변 실무간사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1995년 12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고영구

시론

5·18특별법과 과거청산

박 성 민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거청산 작업은 국민적 염원이라 할 수 있는 올바른 역사인식과 그 실천을 위한 첫걸음에 불과한 것이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 기소를 과소평가하자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1995년에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건과 같은 비극적 현실이 전·노 두 압제자의 구속으로 인해 극복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러한 점에서 어떠한 불행 속에서도 인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 국면전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멋진 한 해였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전·노 두 사람을 비롯한 그 하수인들은 국가에 충성해야 하는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동물적 차원의 권력욕에 사로잡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정권을 강탈했었다. 1980년 민주화의 봄이 무르익던 그 시절 그들은 박정희 군사독재의 잔재를 청산하고 이 땅에 민주사회를 이룩해보고자 노력했던 학생들의 열망과 생존권 보장을 외쳤던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더구나 그들은 5·18민주항쟁에 나선 광주시민들에게 도저히 국민의 군대가 저질렀다고는 믿을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고야 말았다.

그 후 전·노 두 사람은 대통령직을 오손도손 나누어 해먹었고, 그들의 하수인들에게는 푸짐한 논공행상의 잔치를 베풀어주었다. 독재권력의 유지에 혈안이 된 저들의 민주세력에 대한 압제는 계속되었고, 압제에의 항거 또한 끊임 줄 모르고 되풀이되었다. 참으로 암담하고 긴 세월이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전·노 두 사람과 그들의 추종자들 중 어느 누구도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해 책임진

적이 없었다. 심지어 이른바 문민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겸찰은 12·12나 5·18 관련자들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법률적으로 명백히 함으로써 국민들을 불노케 하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두 전직 대통령이 연이어 구속된 사실에 대해 ‘무슨 국가 망신이냐’고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의당 구속되어야 할 자들이 구속된 것이고,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자랑스러워하자. 요하(遼河)에서 당태종의 눈에 화살을 쏘았던 고구려군처럼 통쾌해 하자. 우리나라 역사책 그 어디를 들춰보아도 이러한 퀘거는 자주 등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이런 극적인 드라마가 연출되었던가. 직접적으로는 김대통령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전두환의 구속은 그것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대통령의 결단은 국민들 누구나 눈치채고 있겠지만 그가 처한 정치적·법적 난관이 그에게 강요한 것이었다. 우선 노태우로부터 얼마의 대선자금을 받아썼는지를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집중적인 의혹을 받고 있었다. 또한 다가오는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고 그 후의 정치적 국면에서 주도권을 장악해야겠는데, 안팎의 제반 여건들이 그에게는 부정적으로만 흘러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下에서 그로서는 “역사의 평가에 맡기자”고 외쳤던 5·18문제에 대한 기존의 방침을 뒤집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김대통령으로 하여금 이러한 기존의 방침을 번복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 환경변화는 누가 만든 것일까. 그것은 다름아닌 국민들이다.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힘은 참으로 위대하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알다시피 1995년 9월 30일 제5차 5·18특별법 제정촉구 국민대회가 전국 13개 도시에서 수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바 있으며, 5·18 서명교수 6천 4백여 명은 ‘전국대학 서명교수 모임’을 발족하기도 했다. 더구나 전국 110여 개 대학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동맹휴업까지 감행하였다. 그밖에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펼치지 않았던가.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거청산 작업은 국민의 결집된 힘에서 피어난 하나의 열매요 꽃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이 위대한 개혁정신을 아끼고 가꾸어 나

가지 않으면 안된다. 5·18특별법이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고 미완의 것으로 남은 현 상황하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특별법 제정시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던 '특별검사제'의 도입이 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철저히 외면됨으로써 특별법은 집행되기도 전에 그 효용이 반감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정치권의 동향에 민감한 검찰의 행적이다. 12·12와 5·18 관계자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강변하던 검찰은 돌연 종전의 법률적 입장을 뒤집어버리고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서둘러 수사에 뛰어드는 기민함(?)을 보여주었다. 지금도 우리는 대통령이 특별법 제정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발표가 나오자마자 검찰이 보여준 그 법석떨며 허둥대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이 얼마나 망치한 일인가. 검찰의 이와 같이 조변석개하는 태도로 인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조반도 들지 못하고 붙잡혀가는 것을 보고 검찰의 처사에 분개하는 여론도 있었다는 식의 해괴한 언론보도가 나오는 지경에까지 이르고야 말았으며, 급기야는 전씨의 단식이 뉴스거리로 연일 보도되기도 했다. 단식보고에 접한 검찰이 전전긍긍하였다니 이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수많은 국민들이 현재 진행중인 과거청산 작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심지어 두 전직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절 그 독재자들의 나팔수 노릇을 마다하지 않던 언론들도 하나같이 입을 모아 철저한 과거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떠들어대고 있다. 말 그대로 과거청산의 기회는 도래했다.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그런데 어쩐지 과거청산이라는 이 명제가 흐뭇한 결실을 가져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과연 이 작업에 관여하는 세력들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확고한 역사인식과 실천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먼저 검찰을 보라. 검찰은 지금이라도 종전의 잘못된 입장을 국민 앞에 확실히 참회해야 한다. 그런 다음 광범위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국민에게 새로운 검찰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재개하면서 밝힌 입장선회의 변은 참으로 듣기 믿망한 수준의 것이었다. 고작 노태우 씨의 비자금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상황이 변했다는 것이 전부였다. 사실 검찰은 박계동 의원의 폭로 발언 훨씬 이전부터 노씨의 비자금에 대해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검찰로서는 과거에는 정치권이 바라지 않아서 손대지 못했는데 이제는 정치권이 바라고 있으니 손대게 되었다고 속시원히 털어놓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이러한

솔직함을 보여주어야만 검찰은 앞으로나마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 아닐까.

수사절차 면에서도 만일 검찰이 역사적인 과거청산 작업을 철저히 할 요량이라면, 먼저 12·12와 5·18 관계자 전원을 예외없이 모조리 기소해야 한다. 비자금과 관련해서도 수십억, 수백억 원의 뇌물을 갖다바친 재벌총수들을 모두 구속해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2·12와 5·18 관련자들에 대해서 누구누구 선에서 구속하느냐 마느냐 하면서 검찰 스스로도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며 갈피를 못잡고 있다. 게다가 종래에는 단지 수억 원의 뇌물 공여자도 구속하던 검찰이 재벌총수에 대해서는 불구속 원칙을 고수하는 등 불공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검찰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는 하다. 무엇보다도 검찰을 통치수단으로 삼아온 정치권력에 원죄가 도사리고 있다. 우리 사회 지배계층의 핵심인 정치권력이 재벌과 결탁하여 부정부패를 일삼으며 국가적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군림해온 것이 비극의 원천이다. 이 점에서 정치권의 여·야를 구분해보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릇된 역사를 올바로 세우자고 외치면서 제대로 과거청산을 해보자고 다짐하는 지금에도 15대 선거를 목전에 두고 여당과 제1야당이 벌이는 논쟁이란 것이 고작 색깔 시비인 것만 보더라도 그렇다.

두 정당의 보스들은 그동안 서로 앞다투어 민주화운동의 투사라고 자화자찬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제는 재야인사들의 영입을 둘러싸고서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고 있다. 역사와 민주주의에 대한 그들의 인식은 과연 이런 수준이란 말인가.

문득 인(仁)과 의(義)를 목이 아프도록 외치면서 벼슬자리를 구하던 공자(孔子)를 꾸짖던 장자(莊子)가 생각난다. 장자가 하늘에서 지금의 우리를 내려다보며 무엇이라 말할까 상상해본다.

이들 두 정당이 새롭게 마음의 심지를 돋우고 팔을 걷어붙여 함께 덤벼들어도 힘겨울 싸움이 바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거청산 작업이 아니던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좋은 역사적 여건을 마음껏 이용하여 잘못된 역사를 곧추세우도록 힘써야 하지 않겠는가.

아직도 정치권의 일각에는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거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도사리고 있다. 그들 중에는 노골적으로 과거청산 작업을 반대하는 자들도 있으

며 심지어는 파당을 지어 공공연히 세력확대를 꾀하고 있기도 하다. 이들은 5·18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입법을 방해하거나 기권 또는 마지못해 찬성하는 등 제각각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모두 같은 부류인 것이다. 그들은 분명 반역사적, 반민주적 집단이다. 그밖에도 역사의 전진을 두려워하는 재벌들이 있다. 이들은 아직도 민주적인 대(對)권력관계, 민주적인 노사관계에 익숙하지 않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의 곳곳에는 과거 독재시대를 그리워하고 진정한 민주사회의 도래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잔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참다운 과거청산의 실현은 새로운 정치권력이 등장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과거 청산은 일순간에 완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산과정도 미래의 완성을 위해 소중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현단계에서 무엇보다도 필요 한 것은 과거청산에 대한 확고한 역사인식과 실천의지라고 본다.

(변호사, 민변 부회장)

특집 : 동경재판이 은폐한 전쟁범죄자를

동경재판을 모면한 사람들

- 천황 히로히토와 731부대를 중심으로 -

박 원 순

1. 서론

소화(昭和). 평화를 드러내어 명백히 한다는 말. 히로히토 일본 천황의 연호. 1926년 12월 25일 일본의 천황이 되면서 정해졌던 이 연호의 의미는 그의 재임 중에 전아시아에 걸쳐 일본이 벌였던 전쟁과 살륙과 학대, 그 피비린내 나는 이미지와는 얼마나 역설적인가. 종전의 일본 천황이 아시아의 전대륙을 침략하고 그 점령 주민을 학살한 일본군대의 최고 책임자였다는 사실은 당시의 일본 법체제와 정책추진의 실제에 있어서 너무도 명약관화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난 후 실시된 동경전범재판에서 일본 천황 히로히토는 면책되었으며 심지어 증인으로 소환되는 것까지 회피할 수 있었다. 그의 전쟁책임에 관한 자료는 은폐되고 논의조차 금기시되었으며 그는 자신의 연호와 같이 평화를 애호하는 군주로 이미지화되었다.¹⁾ 그의 과거는 묻혀졌다. 일본의 국제사회 복귀와 더불어 히로히토도 1971년 이후 본, 파리, 런던 등을 방문하였으며 1975년에

1) 뒤에서 보듯이 전쟁 직후에 전범으로 기소되어야 한다는 점에 별다른 의문을 갖지 않았던 미국 사회에서 히로히토가 전범이었다는 주장은 별반 근거없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가 되었다. David Bergamini라는 사람이 쓴 *Japan's Imperialist Conspiracy*라는 책자는 히로히토의 전쟁책임을 강조하는 영문 책자였는데 수많은 학자들의 혹독한 비판에 의해 사망했다고 할 지경이었다(Edward Behr, *Hirohito : Behind the Myth*, Villard Books, New York, 1989, 서문, xxi).

는 미국을 방문함으로써 그의 오랜 어두운 이미지를 벗어던질 수 있었다. 그러나 진실을 영원히 잠재울 수는 없었다. 히로히토의 책임에 관한 자료들은 계속 공개되었으며 역사 속에서나마 그의 책임을 묻는 질문과 논의들이 계속되었다.

731부대. 악마의 이름. 수많은 중국인과 연합국의 포로들을 생체실험의 희생물로 몰아넣었던 일본의 세균전 부대.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생체실험을 감행했던 '죽음의 천사'들이나 다를 바 없는 인류사상 가장 잔인한 범죄자들이었다. 일본 학자들은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전쟁책임을 부정하면서 흔히 히틀러의 나치와 비교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 비교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것이 일본의 경우에는 나치의 유대인 수용소와 생체실험과 같은 극단적인 대량의 인권침해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731부대의 존재야말로 그들이 고의적으로 숨겨온 일본군국주의의 야만과 참혹의 상징이었다. 이 부대의 존재와 잔학성, 그 후의 은폐와 면책의 과정이 제대로 밝혀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었다.

전범재판의 첫 순서에 올랐어야 했던 최고의 전쟁범죄자들이 동경전범재판의 피고인 명단에서 빠져 있었다. 이들의 제외야말로 동경제판이 지난 역사적 한계로 지적되어왔다. 최고의 전쟁책임자와 죄악의 전쟁범죄자들의 면책이야말로 동경제판의 의미를 삐闾, 탈각시키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천황 히로히토와 731부대 지휘관들의 면책이란 동경제판과 그에 부수한 수많은 B, C급 전범재판을 회화화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동경제판은 엄정한 법적 심판이라거나 구체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국제법적 규범의 정립에 기념비적인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바로 위 두 건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지울 수 없는 흔을 남기고 말았다.

우리는 동경제판에서 이 두 건의 면책과정과 그 배경을 검토함으로써 당시의 일본의 전후처리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정치적 외교적 상황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경제판의 본질과 한계, 그 역사적 의미를 분석하는 데에도 천황과 731부대의 면책문제는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당시 역사의 뒷전에서 진행되었던 이 추악한 거래를 통하여 우리는 인류가 진전시켜야 할 정의와 자유의 수레바퀴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것임을 알 수 있다.

2. 천황 히로히토의 전쟁책임과 동경제판

1) 개관

(1) 성역, 히로히토의 전쟁책임

올봄 대학입시에서 지방대학인 시마네(島根)대학이 출제한 논술시험문제를 둘러싸고 최근 일본 내에서 일대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월 25일 이 대학의 법문학부가 '천황의 전쟁책임과 전후정치' '국제화시대의 상징 천황제의 존재' 등을 논한 현법학자의 글을 소개한 뒤 자신의 견해를 밝히도록 논술시험문제를 출제한 것. 이를 한달 뒤 우익잡지가 기사화, '일방적인 설문'이라고 비난하고 나섰고 잇따라 인근 오사카의 우익단체 회원들이 전화와 편지 등으로 대학당국에 항의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며칠 뒤 우익단체의 가두선전 차량 8대가 학교에 몰려가 시위를 벌였고 우익정치단체 간부들이 학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²⁾

이 에피소드는 일본사회에서의 우익단체의 활동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줌과 동시에 이들의 정신적 지주로서의 천황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히로히토 천황의 전쟁책임은 아직도 객관적으로 논의될 수 없는 정신적 상황에 일본은 처해 있다. 터무니되던 히로히토의 전쟁책임이 1989년 그의 죽음으로 공개적인 토론의 장으로 옮겨지는 것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이다. 히로히토의 측근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일기와 회고록이 공개되면서³⁾ 히로히토가 결코 정당정치의 옹호자가 아니었으며 실질적 군최고사령관이었다는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

오히려 히로히토의 전쟁책임은 구미에서 더욱 잘 알려져 있거나 잘 추궁되고 있다. 1971년 10월 12일 히로히토 천황부처가 독일의 본을 방문하였을 때 다수의 독일인 학생들과 다른 아시아인 유학생들이 천황의 방문 반대시위를 벌였다.

2) 「동아일보」 1994년 5월 24일자 기사

3) 1990년 한해에 상당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비공개 일기와 회고록 등 6종이 공개되었다. 그 가운데 1925년에서 1935년까지 히로히토의 시종장이었던 마키노 노부야끼의 일기, 역시 그의 군사보좌역을 담당하였던 나라 타케지의 일기도 들어 있었다(Herbert Bix, "Emperor Hirohito's War", *History Today*, Vol. 41, December 1991, p. 13).

이들이 내걸은 플래카드에는 “히틀러는 6백만 명의 유대인을, 히로히토는 5천만 명의 아시아인을 [살해하였다]”라고 써어 있었다. 이들 가운데 11명이 체포되고 몇 명은 재판까지 받았다.⁴⁾

히로히토의 전쟁책임은 생전의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아키히토조차 세계 어느 곳이나 자유스럽게 여행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원죄’이다. 아키히토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을 방문하였을 때, 그 어디에서도 일본의 전쟁책임을 묻는 항의의 목소리가 드높았다. 아직도 일본이 일으킨 전쟁책임으로 여전히 수많은 아시아인 희생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책임에 대한 사죄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일본의 상징으로서 ‘천황’의 방문길에 언제나 항의와 분노의 시위가 잇따를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2)‘최상의 방어’

전쟁의 종료가 가져온 가장 침예한 문제는 바로 천황제 자체의 존립이었다. 개인 히로히토의 운명보다도 천황제의 미래 자체에 더 많은 일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일본인은 아들 아키히토에 대한 히로히토의 양위가 천황의 전쟁책임을 진정시키는 유효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견해는 당시 황족인 나시모토(梨本宮守正)나 측근 기도(木戸幸一) 등이 전범용의자로 구금되면서 더욱 설득력이 있었다. 일본 정부와 관리들은 연합국이 히로히토를 전범으로 처벌하려는 의지와 암시가 분명하였다면 퇴위를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고려하였던 것이 분명하다.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로히토는 동경제판의 피고인으로 기소되기는커녕 중인으로 등장하는 일까지 피할 수 있었다. 더구나 비록 신격화된 신분에서 인간의 지위로 내려오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왕관을 벗는 것조차 모면하였다.⁶⁾ ‘일본제

4) 井上清, 『天皇の戦争責任』, 現代評論社, 1975, 1쪽

5) Gen. Weckerling, *The Japanese Emperor*, 15 January 1946, p. 10(RG 319 Army Staff/Intelligence G - 2 Library/P' File 1946-1951/Box. 1411, Project 2900), p. 4

6) 천황의 가장 가까운 내신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기도(木戸)조차 자신이 구금되어 있던 쓰가모 형무소에서 천황에게 몰래 보낸 서신에서 천황의 직위를 사임할 것을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을 정도였다(Herbert Bix, 앞의 책, p. 18).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폐하는 폐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일단 포츠담선언이 완전히 이행되고 평화협정이 조인되면 天皇家와 국기를 위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국’의 동맹국이자 파트너였던 독일의 ‘제3제국’이 완전히 붕괴하고 ‘제3제국’을 움직였던 나치당 등의 조직이 불법조직으로 해체되었으며 그 지도자들이 처벌받게 된 것과는 참으로 대비되는 일이었다. 히틀러가 만일 자살하지 않고 살아 있었다면 그를 살려두고 전후 독일의 점령정책을 시행하는 데 활용하였으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에 따라 전전의 히로히토의 이미지는 사라지고 그 어두운 시대의 기억을 가진 사람은 줄어들었다. 그 반면 일본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사람들은 히로히토가 ‘수동적’이고 ‘내향적인 군주 과학자’, ‘해상 생물학자’로 남아있게 된 것이다.⁷⁾ 히로히토는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엘리자베스 여왕, 포드 대통령 등 세계의 군주들과 정치지도자들의 영접을 받았다. 1989년 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는 영국과 스페인의 왕가 이상으로 안정적인 입헌군주로서 그 영예를 누렸다. 일본 국민들로부터 전쟁을 종식시킨 천황으로 존경받으면서 세상을 마칠 수 있었다.⁸⁾ 히로히토는 단순히 살아남아 ‘마지막 황제’가 되지 않은 데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대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가장 ‘장수 군주’가 되었다. 그는 분명 행운의 사나이였다.⁹⁾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전후 일본의 천황가는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방어를 한 것이다.¹⁰⁾

이러한 일은 물론 당시 일본점령의 책임을 지고 있던 미국의 공모와 합동에 의해 가능하였다. 미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천황의 보호와 천황제의 유지를 결정해놓고 그 실현에 노력하였다. 당초에는 일본의 효과적인 점령정책을 위해서, 나중에는 냉전 격화에 따른 소련의 진출에 대한 방파제로서 일본의 안정과 부흥을 위해 미국은 천황제의 유지와 보호를 통해 일본과 밀월관계를 계속할 수 있었다.

방법입니다. … 이렇게 함으로써 전몰자 유족과 부상자, 미송환자와 전범자 가족에게 약간이라도 보답의 느낌을 줄 것입니다. 皇家에 집중된 국가적 정체성에 중요한 공헌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 결과는 皇家만이 책임을 지지 않게 되고 영원한 상처를 남길 불확실한 분위기가 계속될 것입니다.”

7) Edward Behr, 앞의 책, 서문 xxii

8) 1989년 2월 24일 치러진 히로히토 장례식에는 영국의 왕자 필립, 벨기에의 국왕 바우두앵, 스페인의 후안 카를로스 국왕, 스웨덴의 구스타브 16세, 후세인 요르단 국왕, 조지 부시, 미테랑 등 163개국의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이 참석한 채 치러졌다(Edward Behr, 위의 책, p. 390).

9) 카이저 빌헬름 2세가 1918년 독일 붕괴 이후 망명중에 세상을 떠난 일이나 벨기에 레오폴드 3세가 단지 독일 점령기간중에 영국으로 도피하지 않고 왕위를 그대로 가졌다는 이유로 조국에 대한 반역행위를 회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위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상기한다면 더욱 그러하다(Edward Behr, 위의 책, 서문 xxv).

10) ‘이쿠히토 하타’라는 일본 역사학자는 이를 두고 “기적에 다름없는 일(nothing short of miraculous)”이라고 표현하였다(Edward Behr, 위의 책, p. 331 참조).

물론 이 과정에서 역사적 기록을 명확히 해독 기회가 회생되고 말았다.¹¹⁾

2) 히로히토 전쟁책임의 진상과 그 논쟁

(1) 천황의 법적 지위와 전쟁의 권한

천황은 '대일본제국'의 유일최고의 통치권자이자 '대일본제국' 군대의 유일최고의 통수권자였다. 그뿐만 아니라 천황은 "일본국 창조의 신의 만세일계의 자손이라고 칭해지는 신적 권위"였다.¹²⁾ 히로히토는 '하늘의 아들'인 천황으로서 공식적으로 124대였다. 이 최고의 권력과 신적 권위인 천황의 명령과 통수 없이는 일본국과 그 군대의 대외전쟁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나치독일의 '프로파간다시트' 알브레히트 폰 우라히(Albrecht Fürst von Urach)는 "일본의 천황 승배는 국가형태, 국가의식, 종교적 광신주의의 세계에 있어서 가장 독특한 융합"이라고 단정하였다.¹³⁾ 이러한 광신주의야말로 나치독일에서는 긍정적이고 소망스러운 것이었다. 나치 지도자들이 바로 이러한 천황승배문화를 독일 국민에게 주입시키려 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천황이 일본 군대의 최고 통수권자임은 메이지(明治) 천황이 1882년 일본의 근대적 육해군을 창설하면서 일본군대와 군인의 모랄을 가르치기 위해 만든 이름바 '군인칙유(軍人勅諭)'에서 비롯된다. 여기서 일본군대는 천황 자신이 통수하고 "천황은 모든 군인의 대원수이며 생명은 새털처럼 가벼우나 천황에 대한 충절은 태산처럼 무겁다"는 것 등을 가르치고 있다.¹⁴⁾ 천황은 일본의 모든 국민과 군인들에게 신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었다.

더구나 천황의 권위에 관한 이같은 지위는 단순히 윤리에 그치지 않고 법률적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른바 '대일본제국헌법' 제11조는 "천황은 육해군을 통수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육해군을 통수하는 것은 오직 천황일 뿐 정부도, 제국의회

11) John W. Dower, *Japan in War and Peace*, New Press, New York, 1993, p. 352

12) 당시 시행중이던 '대일본제국헌법'의 제1조는 "대일본제국은 萬世一系의 천황이 통치한다", 제3조는 "천황은 神聖하여 침범할 수 없다", 제4조는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揽하고 이 협약의 조항에 의하여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13) Ian Buruma, *The Wages of Guilt : Memories of War in Germany and Japan*, Farrar Straus Goux, New York, 1994, p. 35

14) 井上清, 앞의 책, 8~9쪽

도 전혀 관여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참모총장을 장으로 하는 육군, 군령부총장을 장으로 하는 해군의 군령부가 천황의 명을 받아 실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이들은 천황에 직속하고 정부로부터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은 정부나 국민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오직 천황의 명령을 받아 작전계획, 통수에 관한 제규정, 명령과 안을 만들고 천황에게 보고하며 그 재가를 받아 육해군성, 부대의 사령관 기타 필요한 육해군기관에 천황의 명령으로 전달되고 실시된다.¹⁵⁾ 이러한 상황에서 천황이 전쟁의 결정과 추진, 그 결과에 대해 면책될 수는 없다. 그 만큼 천황의 군대에 대한 통수권은 완벽하면서도 절대적이었던 것이다.

(2) 책임면책의 이론과 허구

이 지위에 있었던 히로히토의 전쟁책임은 논의의 여지조차 없는 일이었다. 이의문의 여지없는 사실이 일본에서는 논쟁거리가 되고 있었다.¹⁶⁾ 그 책임을 부정하는 견해를 하나 예를 들어본다.

히로히토 천황은 예외적으로 단 두 번에 걸쳐 기관설(機關說)적 성격을 버리고 친정을 행사하였다. 그것은 2·26사건과 종전의 때였다. 앞의 경우 잠시 정부의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만 이니셔티브를 쥐었고 정부의 기능을 회복시켰다. 뒤의 경우 정부가 스스로 기능을 포기하고 천황의 이니셔티브를 호소하였다. 그 당시 천황은 자신의 기관설적 성격을 버림으로써 자신에게 강제된 통수권적 성격을 극복하였다. …(그러나) 개전 당시에는 정부의 기능이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천황이 친정을 행사할 여지가 없었다. …파국의 수년 전에 천황이 종전 당시와 같이 이니셔티브를 가졌다면 역사는 달라졌을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종전 때와 달리 아직 미래에 무수한 가능성 있는 상황에서 책임자를 무시하고 친정을 행사하지 않은 것을 책임하는 것은 사후의 예언이 될 뿐이다.¹⁷⁾

이상의 주장을 요약하면 천황은 2·26사건과 종전 당시에만 친정적 기능을 행사하였던바 이것은 천황의 통수권적 기능이었다. 또한 이것은 천황의 기관설적 기능을 버린 경우였다. 그러나 개전 당시에는 정부의 기능이 확립되어 있어 천황의

15) 井上清, 위의 책, 10쪽

16) 井上清, 위의 책, 서문

17) 竹山道雄의『昭和の精神史』중에서(ねつ・まさし, 『批判 日本現代史』, 日本新評論社, 161쪽에서 재인용)

친정이 발동될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 책임은 모두 정부, 즉 도조(東條)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나아가 천황이 친정적 기능을 왜 개전 당시에 행사하지 않았는가 하는 비판은 미래의 여러 가능성 있는 상태에서는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으로 편리한 해석이 아닐 수 없다. '좋은 것은 모두 천황이, 나쁜 것은 도조에게'라는 원칙이 그 해석에 관철되어 있다. 그러나 천황의 헌법상 권한이 '통수권적 기능'이었다는 사실은 위 견해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천황이 '통수권적 기능'을 버리고 '기관설적 기능'에 만족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히로히토는 '입헌군주'로서 명목상의 권한만 가지고 있었다는 결론이 된다. 그렇지만 히로히토가 당시 모든 전쟁의 결단과 그 수행과정에서 헌법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행사하였다는 점은 이미 움직일 수 없는 자료와 증언에 의해 뒷받침되어 있다.¹⁸⁾ 이러한 자료들에 의해 히로히토가 침략전쟁의 과정에서 어떻게 권한을 행사하였는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3) 천황의 절대적 권력 행사의 사례들

가 : 2·26사건과 천황의 위력 천황 히로히토는 일상적으로는 조칙에 의해 직접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통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필요하다고 여길 때는 정부나 통수부 기타 그 어느 보좌기관의 빌의도 필요없이 또는 그 반대를 무시하고라도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었다. 가장 현저한 사례가 바로 2·26사건이었다. 1936년 2월 26일 동경의 일부 육군장교가 반란을 일으켜 천황의 중신들인 내대신 사이토(齊藤實)를 살해하고 시종장 스즈키(鈴木貫太郎)를 상해하는가 하면 수상관저 등을 포위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군사행동으로 육군수뇌부를 통하여 천황을 움직여 국가의 유신을 단행하려 한다는 명분이었다. 당시의 육군대신 가와도리 요시유키(川島義之)는 천황의 군사 최고고문기관인 군사참의관을 소집하여 반란군을 설득하여 군대로 복귀시키는 한편 이들의 뜻을 이해한다는 포고와 함께 계엄령을 내려 이들도 계엄군의 일부로 편입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받은 히로히토는 처음부터 반란으로 단정하고 이들의 체포를 지시하여 반란 4일째 반란군 지도자들의 일부는 자살하거나

18) 히로히토의 전쟁에 관한 모든 언급과 태도, 군부와 내각 지도자들과의 대화내용 등이 '木戸日記', '近衛文庫', '権密院重要議事覽書'(深井英五), '岡田啓介', '大日本権密日誌(種村佐孝)등에 소상히 기록되어 있다.

나 체포 또는 자수함으로써 모든 사태가 끝이 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히로히토는 자신의 주체적인 판단에 따라 주변의 권고와 조치와는 별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명석하고도 단호하게 결정하고 지시한 사실이 정확히 드러났다.¹⁹⁾

나 : 중국침략과 히로히토의 개입 히로히토는 아직 천황이 되지 않은 채 설정으로서 있을 당시인 1925년 12월 일본의 만주침략의 지주로서 만주 군벌 장작립(張作霖)을 보호하고 그 반군인 광송령(郭松齡)을 압박하기 위하여 본국 및 조선으로부터 3만 5천의 병력을 파견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그가 천황이 된 후 중국 내 일본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1927년과 1928년 두 해에 걸쳐 네 번이나 수천 내지 수만 명의 일본군을 중국 산동성 등에 출병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출병은 중국의 항의를 받았고 일본을 지지하던 장작립마저 일본에 등을 돌리자 일본군은 1928년 6월 은밀히 그를 폭사시키고 말았다. 그러나 히로히토는 그 해결과정의 책임을 물어 수상 다니카(田中義一)를 해임하였다.²⁰⁾

1931년 중국 봉천에 가까운 유조구에서 남만주철도선로를 폭파하고 이것을 중국군이 한 것으로 가장한 다음 이를 구실로 봉천시를 점령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른바 만주침략이 시작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선군사령관과 관동군 사령관이 원래 관할구역 밖으로 출동할 때 받아야 하는 '봉착명령'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독자적으로 출동했는 데도 히로히토는 모두 이를 사후 승인함으로써 당시 중국에 주둔한 현지 사령관이 사실상 마음놓고 중국 침략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였다. 1932년 1월 8일 히로히토는 미국의 항의까지 받은 중국의 금주(錦州) 점령을 치하하는 칙어를 내렸다. 이 칙어를 통하여 히로히토는 "자위의 필요상 각지의 비적을 토멸하고 경비의 임무를 완수"한 '충열'을 친양하고 "이로써 동양평화의 기초를 확립"하도록 부탁하고 있다. 결국 '동양침략'을 적극 지지하면서 이 침략정책을 주도한 장교들을 부추김으로써 이들이 점차 침략의 범위를 민주와 내몽고, 나아가 중국의 상해 등 본토로 확대한 것이다.²¹⁾

1937년의 노구교(蘆溝橋) 사건은 중국의 본격적 침략을 야기하였다. 다급해진

19) 자세한 것은 井上清, 앞의 책, 52~58쪽

20) 井上清, 위의 책, 68쪽

21) 이 과정에서 히로히토는 참모본부가 올린 결제를 구체적으로 재가하지 않은 일이 적지 않을 정도로 독자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井上清, 위의 책, 73쪽).

중국측의 책임자 쳐벌 등의 약속과 함께 잠시 휴전이 성립되었지만 일본 군부는 계속 본격적인 중국 침략의 준비를 하였다. 이른바 '대군의 화북파견'을 추진하면서 참모총장 한원궁(閑院宮)이 천황을 만났을 때 히로히토는 배후에 있는 소비에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을 정도로 세심한 고려 끝에 참모본부의 안을 재가하였다. 중국침략의 승리를 잡은 군부는 조기 화평론을 제시하였으나 내각은 이를 반대하였다. 히로히토는 철저한 침략정책을 주장한 내각에 동의함으로써 자신의 중국침략에 대한 책임을 의문의 여지없이 만들고 말았다.²²⁾

다 : 도조 전시내각 수립과 진주만 공격의 책임 도조 히데키(東條英機)의 전시내각을 불러온 1941년 10월의 고노에 수상의 사임은 바로 히로히토 자신의 전쟁에 대한 의지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고노에가 개전반대론을 폄다가 결국 사임을 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때부터 이미 히로히토 자신이 개전의 편에 서 있었음을 알 수 있다.²³⁾ 육군대신 도조에게 수상의 직위를 부여한 지 7주가 되지 않아 히로히토는 진주만 공격을 허가하였다.²⁴⁾ 히로히토는 미국과의 전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도조에게 그 전쟁의 명분이 무엇인지 묻기도 하고 때로는 구체적인 작전의 타당성에 관하여 상세한 질문을 하기도 하였다. 작전 연구를 함께 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히로히토는 독일을 미국과의 전쟁에 협력케 한다든가로마 법왕청을 통하여 외교사절 채널을 확보하는 등 '전쟁종결의 경우의 수단을 처음부터 확보해두는 일'을 지적하기도 하였다.²⁵⁾

12월 1일 미국과의 전쟁을 최종 결정한 '어전회의'는 바로 히로히토가 주재한 것이었다. 곧이어 그해 12월 8일 미국과 영국에 대한 선전포고의 조치를 내려 모든 제군육군과 해군이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고 제국의 영광과 위신을 향상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도조는 천황인 히로히토에게 개전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의사를 대단히 존중한 것임이 분명히 드러났다. 이후 4년의 태평양전쟁 기간 동안 히로히토는 '말과 행동'으로써 일본의 전쟁목적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 일본의 국가원수로서 활동하였다.²⁶⁾

22) 井上清, 위의 책, 88~97쪽

23) 1946년 2월 고노에 전 수상의 측근들이 조직하여 약 5개년에 걸친 노력으로 간행한 『近衛文磨』에는 천황이 자신의 비전론을 비판하였다는 내용의 기술이 있다(井上清, 위의 책, 142쪽).

24) Herbert Bix, 앞의 글, p. 14

25) 山田 郎 외, 『遅すぎた壘斷: 昭和天皇の戦争指導と戦争責任』, 東京: 昭和出版, 1991, 32쪽

라 : 전쟁수행의 구체적 책임 히로히토가 군최고사령관으로서 야전군의 구체적 작전을 지시하고 전쟁수행의 전영역에서 감독을 수행한 사실은 분명하다. 이른바 '야마다 문서'는 히로히토 천황이 전쟁수행을 지도하는 데 개입한 11가지의 중요한 예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히로히토는 대본영에 '바탕 반도'를 포함하여 필리핀에 대한 조기 공격을 명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또한 구아달카날 전투에서 육군항공부대의 투입을 명하거나 뉴기니아의 공격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중앙 솔로몬제도로부터의 철수를 비판하였으며 알류샨 열도에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미국에 대한 해상전투를 명하였다. 사이판섬의 제작악과 오키나와 전투의 공격준비도 그의 고집에 의한 것이었다.²⁷⁾ 히로히토의 재가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중요 전략과 전투의 결정이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다.

진주만 기습공격의 성공, 말레이 반도와 필리핀에의 상륙, 베마 침공과 일본군의 공세작전이 순조롭게 진전되는 상황에서는 히로히토의 작전에 관한 발언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천황을 방관하고 있지 않았고, 천황을 독자적으로 검토하고 통수부를 격려하거나 때로는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통수부로서도 천황의 기대에 응하기 위해 그 지시를 작전계획에 포함시켰다. 1942년 1월 6일 히로히토는 "남방작전은 기존 계획보다 상당히 진도가 앞서나가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없는가"라고 물어 스기야마(杉山) 참모총장이 신작전계획의 수립을 담당부장에게 지시하기도 하였다. 천황의 이름으로 발령되는 대본영의 명령뿐만 아니라 남방군이 각 방면군이 예하부대에 내리는 명령에도 개입한 사례들도 있다. 1942년 5월 19일에는 "필리핀에 있는 16사단을 만주에 주둔시킬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²⁸⁾ 이어 남방작전이 거의 끝난 이 시점을 이용하여 중경을 공략하도록 지시한 것도 바로 히로히토였다.

3) 종전전 미국과 연합군의 천황 처리방침

(1) 미국의 대일점령정책과 천황제 문제

이미 오래 전부터 미국의 대일본점령정책은 천황제를 존속시키는 전제 위에서

26) Gen. Weckerling, 앞의 문서, p. 10

27) Herbert Bix, 앞의 글, p. 15

28) 山田 郎 외, 앞의 책, 53쪽

준비되고 있었다. 원래 미국은 대일선전포고 직후인 1942년 2월 세계대전 종료 후의 전후계획에 관하여 혈국무장관을 장으로 하는 '전후대외정책에 관한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Post-War Foreign Policy)'를 새로이 설치하고 이어 그에 여름에는 극동반(Far Eastern Group)을 조직하여 전후 대일점령정책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다.²⁹⁾ 이 연구 결과 '일본국파괴론'에서부터 '일본제국은존론'까지 6가지의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³⁰⁾ 그러나 극단적 입장보다는 점차 '서양적인 의회민주주의의 수립이 아니라 타국의 권리를 존중하는 비군국주의 정부의 수립을 연합국의 대일목적으로 한다'는 개입신중론이 드세하였다.³¹⁾ 미국 국무성은 1944년 2월 국무성 간부들로 구성된 '전후계획위원회(Committee on Post-War Programs)'에서 대일점령정책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일본에 정통한 온건한 전문가들은 행정관료들의 협력을 얻고 점령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일본국민의 협력을 얻어야만 한다는 점을 먼저 강조하였다. 이들은 천황제를 폐지하면 이들의 협력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임을 경고하였다. 천황의 실권을 박탈하면 그만이며 명목적 의례적인 천황의 역할만 남겨두면 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일본정부의 최고권력을 점령군정이 장악하고 군정 실시는 천황의 이름을 이용하자는 실용론을 떴다.³²⁾ 이러한 실무자들의 의견은 당초 간부들에 의해 거부되었으나 전 주일 대사였던 그루(Grew)³³⁾는 그러한 실무자들에 동조함으로써 실용노선이 대세를

29) 五百旗頭 眞, 『日米戦争と戦後日本』, 大阪: 大阪書籍, 1989, 30쪽

30) 이때 논의된 6가지 방안은 완전히 일본제국을 멸망시키고 일본국민을 노예화한다는 〈일본국 멸망론〉, 일본은 국제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고립집단으로 남겨둔다는 〈격리방지론〉, 천황의 대권을 그대로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일본제국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일본제국은존론〉, 장기적인 점령관리정책을 행하여 협법으로부터 사회제도에 이르기까지 침략전쟁의 요소를 제거하고 민족적 혐력을 실시한다는 〈개입변혁론〉, 천황제를 포함하여 일본의 원행제도를 존중하고 일본의 개혁과 함께 스스로 개혁을 진행하게 한다는 〈개입신중론〉, 개입변혁론과 개입신중론의 중간적 입장에서 대담한 개혁은 필요로 하되 일본의 전통적 권위는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적극적 유도론〉 등이다(五百旗頭 真, 위의 책, 37~43쪽 참조).

31) 천황제 유지론을 펴던 그룹에는 주일대사를 지냈으며 당시 국무성 차관보였던 Joseph C. Grew, 일본에 근무한 외교관이었던 Eugene Dooman과 Joseph Ballantine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반대하면서 반천황정책을 지지한 사람으로서는 중국문제 전문가인 Owen Lattimore, Andrew Ross, 국무성 차관이었던 Dean Acheson, 전쟁정보국장 Elmer Davis, 월리엄스터트 Drew Pearson 등이 있었다.

32) George BLakeslee라는 Hugh Borton 등이 그러한 주장을 한 전문가들이었다(五百旗頭 真, 위의 책, 30쪽)

33) Joseph C. Grew는 1932년부터 1941년까지 주일 미국대사를 지냈다. 이 당시는 국무성 차관보의 자리에 있었다.

장악하게 되었다.

그러나 천황제의 존속 그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그 존속의 형태와 허로히토 개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었다. 그루 대사는 천황 허로히토와 천황제를 구분하는 입장이었다. 설사 허로히토 개인이 전쟁에 반대하였다 하더라도 천황의 이름 아래 전쟁이 행해진 이상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허로히토는 퇴임하여야 하지만 전후 민주적 평화적인 일본을 재건하는데 천황제는 '자산'이라는 주장이었다. 또한 천황제가 존속되더라도 그 실질적 권한은 정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설득력을 가졌다. 천황제의 '일부 정지'라고 볼 수 있는 이 견해가 1944년 12월 말 국무·육군·해군 3성의 차관보로 구성된 3성조정위원회(State-War-Navy Coordinating Committee, SWNCC)에 의해 그대로 승계되어 대일정책의 기본이 되었다.³⁴⁾

(2) 포츠담선언의 수용을 둘러싼 일본과 연합국의 관계

원폭의 투하와 소련의 참전은 일본 지도자들에게 항복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었다. 패색이 짙어지자 일본은 항복을 준비하였다. 1945년 8월 9일 열린 최고 전쟁지도회의에서 몇 명은 여전히 국체유지, 전범, 무장해제, 점령의 범위에 관하여 조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만약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결사항전의 길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른바 이 '4조건'은 포츠담선언을 거부하는 것이어서 연합국이 수용할 리가 없었다. 긴박한 논의 가운데 천황제의 존속을 도모하는 이른바 '국체호지(國體護持)³⁵⁾'만이라도 요청해보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이리하여 중립국 스위스를 통하여 천황의 존재 그 자체는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뜻을 연합국측에 전달하였다.³⁶⁾

미국은 이미 유럽의 전장에서 독일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아냈을 뿐만 아니라 전선이 아시아·태평양에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무조건 항복만이

34) 五百旗頭 真, 앞의 책, 61쪽

35) '국체호지'란 종전 이전의 구질서, 즉 천황을 절대적 권리의 정상에 올려놓은 '제국헌법체제'의 유지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결국 천황제의 존속 여부가 구질서, 제국헌법체제 유지의 관건인 셈이었다(田中伸尚, 『トキメント 昭和天皇』第6卷 占領, 東京: 緑風出版, 149쪽).

36) 당시 일본이 전달한 정확한 질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포츠담)선언은 천황의 국가통치의 대권을 변경하는 요구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것을 수락한다. 제국정부는 이러한 이해에 잘못이 없음을 믿고, 본건에 관한 명확한 의향을 속히 표시해주기를 바란다"(島村喬, 『東京裁判秘史』, 東京: 株式會社 まじて, 1993, 75쪽).

있을 뿐이라는 것이 루즈벨트 대통령 아래 미국의 원칙적 입장이었다. 일본의 '본토결전'과 미국의 '본토상륙'이 예정되어 있을 뿐이었다.³⁷⁾ 그러나 트루만의 미국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내부적으로는 일본 통치에 천황제의 존속이 유효하리라는 결론을 내렸다.³⁸⁾ 이것은 그 당시 미국 당국자들의 일본 천황에 대한 호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남방전선 또는 오키나와 전투 등을 통하여 일본군의 강력한 저항을 경험한 미국이 일본 본토작전을 실행하는 데는 큰 저항과 희생이 따른다고 판단하고 일본 국민의 여망에 따라 철저한 무조건 항복보다는 천황제의 형식적 존속을 허용하는 방향이었다고 볼 수 있다.³⁹⁾

그렇지만 직접 천황제의 존속 여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항복하는 때로부터 천황 및 일본국 정부의 국가통치의 권한은 항복조항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연합국 최고사령관의 재한 아래 두도록 한다. 일본국의 최종적인 정치형태는 포츠담선언에 있는 것과 같이 일본국 국민이 자유로이 표명하는 의지에 의해 결정한다"고 대답하였다. 이 모호한 회답⁴⁰⁾ 속에는 천황제 존속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나 언질이 없다. 이 회답은 바로 일본의 속국화를 의미한다는 이유로 강경한 육군지도자들은 반대하고 나섰으나 대세가 기울은 것을 깨달은 여러 중신의 조언과 히로히토 자신의 결정으로 포츠담선언을 수락하고 항복선언을 하게 된다.⁴¹⁾ 이와 같이 일본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시 천황제의 운명에 대한 명확한 보장 없이 항복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항복 후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은 구태여 포츠담선언의 내용이 반드시 천황제와 모순되는 것은 아

37) 五百旗頭 真, 앞의 책, 64쪽

38) 루즈벨트 대통령이 국무성, 육군성, 해군성의 3장관 및 군수뇌부와 한 협의에서 천황제를 존속시키면서 천황을 이용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라는 점에 대체로 합의가 모아졌다. 자세한 것은 清瀬一郎, 「秘錄 東京裁判」, 讀賣新聞社, 1966, 75쪽 참조.

39) 清瀬一郎, 위의 책, 76쪽

40)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과연 일본의 항복이 '무조건'인지 '조건부'인지에 관하여 일본 학자들 사이에 큰 논쟁이 있다. 그 항복은 일본군대의 항복일 뿐이지 일본정부의 항복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당시의 항복결정 경위에 비추어볼 때 무조건 항복임이 분명하다는 견해가 크게 대립되었다. 자세한 것은 Daizauo Yui, "Democracy from the Ruins: The First Seven Weeks of the Occupation in Japan", *Hitotsubashi Journal of Social Studies* 19, 1987, p. 31 참조.

41) 당시 1945년 8월 14일 오전에 열린 최고전쟁지도회의와 각의의 '합동이전회의'에서 히로히토는 "국체문제에 관하여 여러가지 회의가 들지만 나는 이 회답문의 문의(文意)를 통하여 상대방은 상당한 호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중요한 것은 국민 전체의 신념과 각오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순간 상대방의 요청을 수락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함으로써 항복이 결정되었다(五百旗頭 真, 앞의 책, 123~124쪽).

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천황제의 존속을 획책하려 들었다. 항복 직후 시게미쓰 외상은 히로히토와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시게미쓰 포츠담선언에 담겨있는 민주주의는 이 나라의 제도(천황제도)와 본질적으로 불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저는 오히려 이 제도 아래에서 그 선언이 더욱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항복 문서에 서명하고 그 선언을 충실히 완전하게 지킨다면 우리나라의 행복된 운명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로히토 완전히 그대 생각에 동의한다. 내가 평소 지닌 생각을 그대로 유지하게 고마해주어 대단히 기쁘다.⁴²⁾

이러한 생각은 연합국의 민주화 요구는 천황제의 폐지 없이도 단지 명치헌법의 부분적 손질과 정치적 개혁만으로도 충족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나타내 주고 있다.

4) 종전 직후 일본의 '국체호지' 정책

(1) 종전 전후의 히로히토 퇴위론

전쟁말기부터 항복에 이르기까지 히로히토에게 전쟁책임이 있다는 사실은 내각이나 중신들 사이에 일반화되어 있었다. 특히 내대신 기도와 고노에 전 수상 등은 이미 폐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종전의 여러 구상을 논의하면서 전쟁책임을 지고 있는 히로히토의 퇴위를 상정하였다. 히가시쿠니(東久邇宮)와 기도와의 회담에서도 폐전의 책임을 둘러싸고 육군군 사이에 논쟁이 일어날 경우를 예상하고 히로히토가 모든 책임을 지고 이러한 논쟁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히가시쿠니와 고노에 사이의 회견에서는 정전과 함께 히로히토가 퇴위하고 황태자가 그 지위를 이어받아 다카마쓰미야(高松宮)가 섭정하는 것을 검토하였다.⁴³⁾

이러한 퇴위의 논의는 그 후 종전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람들 사이에 논의된

42) Mamoru Shigemitsu, *Japan and Her Destiny: My Struggle for Peace*, E. P. Dutton, New York, 1958, p. 373

43) 井上清, 앞의 책, 190~191쪽

기록이 있다. 항복 당시의 수상 스즈키(鈴木貫太郎) 역시 히로히토의 퇴위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폐하로서는 전쟁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오늘 혼란에 이룬 일본의 현상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일본을 부흥시킬 수 없다. … 퇴위를 생각할 수 없다. 퇴위에 관하여 나는 찬성할 수 없다. 재위하면서 전쟁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된다.” 이 말은 당시 히로히토의 전쟁책임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없이 받아들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퇴위의 논의까지 활발히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⁴⁴⁾

그러나 퇴위가 능사가 아니었던 점은 그 당시 히로히토를 포함하여 당시 일본 정계 지도자들의 공통된 인식이기도 하였다. 종전 직후인 8월 29일, 필리핀 등지에서의 전범재판의 진행 등에 긴장된 히로히토가 퇴위함으로써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질 수 없는지를 내대신 기도에게 물었다. 그러나 기도는 대단히 ‘감동적인 성단(聖斷)’이지만 연합국이 그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며 퇴위는 천황제 자체를 위협할 것이며 공화제와 민주주의의 도입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기도는 항복 이전에도 천황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기소로부터 더욱 안전할 것이며 퇴위는 죄의 시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⁴⁵⁾

(2) 히가시쿠니내각의 ‘국체호지’ 작전

천황제의 유지, 즉 ‘국체호지’가 곧 전후 일본 정계의 최대의 현안이 되고 말았다. 항복과 동시에 수립되었던 히가시쿠니⁴⁶⁾ 내각의 최대의 과제 역시 ‘국체호지’였다. 연합군이 진주한 바로 그날 히가시쿠니 수상은 다음과 같이 그 내각의 과제를 기자들에게 설명하였다.⁴⁷⁾

44) 鈴木貫太郎 자신이 “법제상 또는 일본정치의 관상으로 보면 천황의 전쟁무책임론이 성립하지만 황실과 일본국민의 기나긴 역사적 결론으로 보면 천황이 이 전쟁에 하등의 도의적 책임도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제1차대전 당시 독일·오스트리아·러시아 3국의 황제가 적국 또는 자국민에 의해 철저하게 징벌을 받았다. 이번 전쟁에도 허틀리, 무솔리니는 무참하게 되었다. 일본의 천황도 무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井上清, 위의 책, 229쪽).

45) Edward Behr, 앞의 책, p. 331

46) 히가시쿠니는 명치 천황의 막내딸인 도시코와 결혼함으로써 히로히토의 고모부가 되었다. 남경대학을 졸업한 후 중국사령관직에서 해임되어 공군력 중장을 주도하였다. 연합군사령부의 비밀보고서는 그가 군국주의자이며 민족지상주의자였다고 적고 있다(Edward Behr, 위의 책, p. 329).

47) 田中伸尚, 앞의 책, 138쪽

국체의 호지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나 감정을 초월하는 단단한 우리의 신앙이다. 조상 전래의 우리들의 혈액 속에 흐르고 있는 일종의 신앙이다. 사방에서 불어오는 비바람에 의해서도 결코 움직일 수 없는 것이라고 믿는다. 현재로서는 내려진 (포츠담선언 수락의) 조서를 봉체하고 이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국체를 호지하는 것이다. … 이때 나는 군관민, 국민 전체가 철저하게 반성하고 참회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전국민 총참회하는 것이 우리나라 제건의 제1보이며 우리 국내단결의 제1보라고 믿는다.

여기서 전쟁의 책임은 모든 일본국민에게 돌리고 그대신 ‘국체의 호지’, 즉 천황제의 유지야말로 불변의 ‘신앙’으로 요구하고 있음을 본다. 그러한 ‘국체호지’를 위해서는 바로 포츠담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이것은 결국 연합군의 점령을 받아들이고 그 점령정책에 협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천황제의 존속을 얻어내겠다는 전략이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일억 총참회(一億總懺悔)⁴⁸⁾’ 주장 역시 일본의 일반 국민에게 전쟁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히로히토의 전쟁책임을 회피시키려는 배경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것은 동시에 사실상 일본의 침략전쟁이 일부의 전쟁지도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온 일본국민의 지지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전쟁 그 자체를 미화하는 이론이기도 하였다.

히로히토의 장래는 연합국뿐만 아니라 일본국민 그 자신의 여론에 의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종전 이전에 군국주의의 피해를 입은 공산당 등 좌익⁴⁹⁾에서는 천황제의 폐지와 히로히토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었다.⁵⁰⁾ 항복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반히로히토 시위가 동경시내에서 일기도 하고 반히로히토 사설이 게재되기도 하였다.⁵¹⁾ 이러한 압력으로부터 천황제와 히로히토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는 위의 ‘일억총참회’론만으로는 부족하였다. 항복선언을 하는 과정에서 히

48) 당시 일본 본토 인구는 7천만 명으로서 일본의 식민지였던 ‘대만’과 ‘조선’의 인구를 포함하여 1억이 되었다. 따라서 ‘일억총참회’론은 참으로 허황된 논리 위에 서 있는 것이었다(田中伸尚, 위의 책, 145쪽).

49) 항복 후 상당한 기간 동안에도 치안유지법 등을 통하여 천황과 ‘國體’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을 억압하였다. 좌익 인사들에 대한 탄압으로 3천여 명이 감옥에 여전히 남아 있었고 7천 7백여 명이 연금상태였다(Daizaburo Yui, 앞의 글, p. 37).

50) 그러나 일반 국민은 항복의 결정과정에 아무런 역할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혀 그 내막을 알지도 못하였으며 항복 후에도 그 절대다수는 천황제 ‘護持’의 주문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천황의 전쟁책임을 묻는 운동이 국민 일반에 의해 일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井上清, 앞의 책, 229쪽).

51) Edward Behr, 앞의 책, p. 334

히로히토가 국민과 '제국'의 장래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전쟁지도자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결행한 것을 부각시킴으로써 그나마 본토결전이 큰 피의 희생 없이 종전된 것을 히로히토의 공덕으로 돌리는 여론을 일으키는 데 안간힘을 썼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히가시쿠니 수상은 '폐폐'나 '항복'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으며 전쟁이 끝난 것이 연합국 승리의 결과라기보다는 히로히토의 '위대한 결단'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인상을 주고자 하였다.⁵²⁾ 뿐만 아니라 종전 직후 취해진 등화관제의 해제나 서신 검열의 해제 등을 모두 히로히토의 명령에 의한 것으로 보도하게 함으로써 그 조치들이 과거의 군국주의 시대의 조치를 모두 다른 지도자들의 소행으로, 한편 천황은 민주주의 시대의 지도자로 인식되도록 하였다.⁵³⁾

(3) 히로히토의 '자력갱생'에의 길

1945년 8월 30일 맥아더는 일본의 운명을 손에쥔 점령군의 사령관으로 일본 땅을 밟았다. 9월 2일 미주리 함상에서의 항복문서 조인이 이루어졌고 9월 18일 맥아더의 본부가 요코하마에서 대본영 자리가 있었던 다이이치 벨딩으로 옮겨졌다. 히로히토가 맥아더 사령관을 만나기 위하여 미대사관을 방문한 것은 종전된 지 얼마되지 않은 9월 27일 오후의 일이었다.⁵⁴⁾

그날 오전 외무대신 시게미쓰가 맥아더 사령부를 찾아와 천황의 방문의사를 알렸고 이에 맥아더는 '황거(皇居)'도 연합국사령부도 아닌 제3의 미국대사관을 접견장소로 정한 것이었다. 이날의 만남은 처음 잠시 어색하였으나 '화기애애'한 가운데 끝났다.⁵⁵⁾ 서로 끔찍한 예의를 지켰고 존경의 의사표시를 했다. "앞으로

52) Daizaburo Yui, 앞의 글, p. 37

53) 田中伸尚, 앞의 책, 147쪽. 이에 따르면 『朝日新聞』 등은 등화관제 해제를 보도하면서 "고마운仁慈의 등, 밝아지게 된 帝都" 등으로 묘사하였다.

54) 이 만남은 기본적으로 폐전국 일본의 최고책임자 히로히토가 일본의 '새로운 주인'인 '미국인 쇼군' 맥아더에게 '복종의 결의'를 보여준 것이었다. 이 성격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그날 두 사람이 나란히 포즈를 취한 한 장의 사진이었다. 타이도 메시 않은 채 손은 포켓에 넣고 일상적 군복을 입고 우뚝 선 맥아더와 정장에 긴장한 얼굴로 맥아더의 어깨 정도의 키를 한 히로히토가 나란히 선 모습은 너무도 대조적이었기 때문이다(Edward Behr, 앞의 책, 서문 xiv). 이 사진은 강대국인 승자에 의해 일본이 폐배했다는 엄혹한 현실을 일본 국민에게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다. 미군정 당국이 천황이 이제 점령에 협조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교묘히 그 이미지를 활용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었다. 일본정부의 정보국은 이 사진의 계재금지를 시도하였으나 군정 당국은 계제를 허락하였다(Kyoko Hirano, Mr. Smith Goes to Tokyo : Japanese Cinema Under the American Occupation 1945~1952,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Washington D. C., 1992, p. 109).

55)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하여 맥아더가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고 한다. 러일전쟁을 참관하기

일본과 극동아시아 국민들을 위한 가장 바른 길을 일본이 가도록 자주 서로 만날 것을 약속"하기도 하였다.⁵⁶⁾ 이 만남 자체가 히로히토의 장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징표였다고도 볼 수 있었다. 그렇지 않다면 맥아더가 전범재판에 처해질 히로히토를 만나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신분에 대한 안전을 상당정도 확인한 히로히토는 9월 4일 의회에 나가 국민들에게 "불필요하게 복잡한 일을 초래할 감정의 폭발을 극도로 자제하고 혼란을 가져오거나 세계의 신임을 상실할 그 어떤 내부 논쟁이나 투쟁을 지양할 것"을 호소하였다.⁵⁷⁾ 의원들로부터는 아무런 열광도 없는 연설이었으나 맥아더에게는 천황의 항복선언 이해의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4) 천황의 무책임을 결정한 일본정부

그러나 황족인 72세의 나시모토(梨本宮守正)가 전범리스트에 포함되어 구속된 것에 이어 1948년 12월 16일 천황의 죄측근이었던 근위 공작과 내대신 기도 후작의 구속은 히로히토의 안전에 위기감을 가중시켰다. 한편 그해 12월 4일 AP통신은 워싱턴에서 천황을 전쟁범죄자 리스트에 넣는 문제를 토론하고 있음을 보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의 시데하라(弊原) 내각은 천황의 전쟁범죄, 특히 대영 미전쟁에 관한 책임의 선을 정할 필요를 느껴 이에 관한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당시 일본정부의 공식견해이기도 하였다. 이때 결정된 논리는 다음과 같다.⁵⁸⁾ 첫째, 이른바 '대동아전쟁'은 '자위전쟁'임을 천황이 믿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침략과 태평양전쟁이 결코 '자위적' 전쟁이 아니라 침략전쟁인 사실은 동경제판의 판결 자체가 입증하는 바이며 히로히토가

위해 일본을 들렀던 맥아더가 목격한 이야기였다. 군내에 만연하고 있던 콜레라를 방지하기 위한 약을 분배하였으나 맥아더는 일본군인들이 그 약이 든 캡슐을 먹으려 들지 않는 것을 목격하였다. 당시 맥아더는 히로히토의 아버지 메이지천황에게 그 캡슐이 든 상자에 '천황이 각 군인들에게 매 4시간마다 캡슐 하나씩을 복용할 것을 지시한다'고 써붙이게 하도록 권고하였더니 실제 이를 어기는 병사가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였다. 이것을 듣고 두 사람은 웃었다고 한다. 맥아더와 히로히토가 나눈 이 대화는 바로 일본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점령을 위해 히로히토의 존재가 필연적임을 암시하고 있다(Paul Manning, Hirohito : The War Years, Dodd, Mead & Company, New York, 1986, p. 16).

56) Paul Manning, 위의 책, p. 17

57) Paul Manning, 위의 책, p. 193

58) 井上清, 앞의 책, 222~223쪽

군대의 통수권자로서 일일이 개입하였음은 이미 자세히 검토한 대로이다. 둘째, 천황은 대미 교섭과정에서 평화적 타결을 원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히로히토가 개인적으로 평화적 타결을 바랐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다. 일본의 유일한 통치권자로서 무력을 선택하여 미국과의 전쟁을 결정하였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었다. 셋째, 천황은 보필책임기관의 결정을 일본의 헌법운용과 정치의 관례에 따라 형식적으로 재가한 것뿐이라는 점이었다. 그러나 이것도 전혀 사실이 아님은 위에서 본 대로이다. 히로히토는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 자신의 고유한 통수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였던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번에는 천황 자신도 일본정부의 위와 같은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여 자신의 무죄를 강변하고 나섰다. 1946년 2월 그는 시종장 후지타(藤田尚徳)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 “이번의 전쟁에 관해서도 어떻게 해서든 전쟁을 피하려고 나는 생각해왔다. 그러나 나의 힘이 땊는 한 노력을 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전쟁에 돌입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입헌군주제하에서나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절대군주의 권력을 누리고 있던 히로히토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⁵⁹⁾

5) 미국과 연합국사령부의 천황보호정책

(1) 연합군사령부의 천황 보호와 지지

맥아더 연합국사령관은 항복 직후인 1945년 8월 29일 이미 미국으로부터 ‘미국의 항복 직후 일본에 대한 초기정책(United States Initial Post-Surrender Policy for Japan)’이라는 점령정책의 가이드라인을 통고받았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다.

최고사령관은 미국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한 천황을 포함하여 일본의 정부기관을 통하여 그의 권한을 행사한다.… 이 정책은 일본의 현존하는 정부 형태를 이용하는 것이고 그것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중세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부형태의 변화는 허용되고 장려된다.

59) 井上清, 위의 책, 224쪽

일단 천황제의 존속과 그 활용을 지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천황제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천황제를 점령정책의 목적으로 이용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천황제의 폐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원래 미국과 맥아더는 군정을 실시하여 직접적인 통치를 계획하였던 것도 사실이었다.⁶⁰⁾ 그러나 항복 후 점령정책의 효율적인 실시에 기존 일본정부의 기구를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⁶¹⁾ 그러나 일본측으로서는 연합국사령부에서 내려지는 모든 종류의 명령을 왜곡하거나 사보타지할 수 있는 도구를 확보한 것이었다.

아무튼 곧이어 “천황에 대해서 특별한 별도의 명령을 받지 않고서는 그를 범으로 처리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명령이 1945년 10월 6일 미국정부로부터 연합국최고사령부에게 내려왔다.⁶²⁾ 히로히토에 대한 전범으로서의 조사가 일단 유예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일본 내에서도 맥아더와 히로히토 사이에는 점령정책의 수행과 새로운 일본 건설을 위한 동반자관계의 인식과 ‘우정’이 형성되고 있는 상태였다. 전범처벌의 선을 정하고 천황을 보호하는 데 히로히토와 맥아더 사령부 사이의 공모는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비록 히로히토에 대한 사실상의 체포나 조사는 유예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전범으로서의 책임이 완전히 면제된 것은 아니었다. 미국 국무성은 1945년 11월 29일에도 “미국정부의 입장은 히로히토가 전범으로서 체포, 재판, 처벌받는 것을 면제받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점령정책이 그가 없이도 민족스럽게 진행된다면 그의 재판문제는 제기될 것이다. 또한 그가 최종적으로 재판을 받든 안 받든 간에 증거를 수집하는 데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지시를 맥아더에게 하고 있었다.⁶³⁾

미국 국무성의 내부에는 천황제의 유지와 히로히토의 면책을 주장하는 다수의 온건파가 이에 반대하는 강경파와 대립하고 있었지만 맥아더는 비교적 처음부터

60) 1945년 8월 6일자로 작성된 ‘Basic Plan for Institution of Military Government : Black List Operation’이라는 문서는 맥아더가 폐전 일본에 완전한 군정을 실시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Daizabro Yui, 앞의 글, p. 38).

61) 이러한 배경에는 일본정부의 집요한 요청도 개재되어 있었다. 당초 직접적인 군정 실시를 발표한 맥아더에게 일본정부는 시게미쓰를 보내어 “포츠담 선언에는 일본정부의 존속을 포함하고 있으며 군정으로 갈음할 수 없다”고 항변하면서 “포츠담선언의 내용이 민족스럽게 이해되려면 일본정부의 기관을 통하는 것이 더욱 좋다”고 주장하였다(Shigemitsu, 앞의 책, p. 376).

62) A directive on “Identification, Apprehension and Trial of Persons Suspected of War Crimes”, Paragraph 17.

63) Edward Behr, 앞의 책, p. 346

천황에 대한 유화적인 입장을 보였다. 원래 보수적인 성격에다 보수적인 보좌진⁶⁴⁾을 거느리고 있었던 맥아더는 히로히토를 제거하고 근본적인 일본의 민주화를 기도하기보다는 점령정책에 활용하고자 하는 생각을 굳히고 있었다. 더구나 그의 필리핀 총독으로서의 경험은 이러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⁶⁵⁾ 한편 맥아더 사령부의 보수성은 오랜 세월 동안 일본 군국주의의 회생물로 옥중 생활을 해야 했던 많은 정치범들의 더딘 석방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⁶⁶⁾ 맥아더가 진정으로 일본을 민주적으로 재편하려 하였다면 군국주의의 화신인 히로히토와 손잡는 대신 그 회생자들이며 일본의 민주적 재건에 앞장세워야 할 정치범들의 석방을 그 토록 지연시킬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⁶⁷⁾

그 이후 맥아더는 히로히토에 대한 전범으로서의 면책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1946년 원단에 발표된 히로히토의 '인간선언'의 조서⁶⁸⁾는 그러한 관계의 상징이었다.⁶⁹⁾ 여기에 맥아더 사령관은 "파격적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예상하는 성명을 발표"⁷⁰⁾ 함으로써 화답한다.⁷¹⁾ 이미 수차례의 비밀회동을 통하여 맥아

64) 그 가운데 Charles A. Willoughby는 극우적인 인물로 분류되던 사람이었다.

65) Daizaburo Yui, 앞의 글, p. 40

66) 연합국사령부는 1945년 10월 4일이 되어서야 이른바 '인권규정(Civil Liberties Directive)'을 발표하여 구속자 석방에 이르렀다. 석방의 지연에 따라 자유주의자로 유명한 기요시 미키는 동경의 도요타마 교도소에서 영양실조, 신장병 등으로 같은 해 9월 26일 사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합국사령부의 태도는 공산주의자들의 석방과 준동을 두려워한 때문이기도 하였다(Daizaburo Yui, 앞의 글, p. 41).

67) Andrew Roth라는 언론인은 "이러한 남녀들의 석방은 일반 국민에게 엄청난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전제정치의 전당들의 자발적인 열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는 징표이다. 일본국민은 진정으로 우리가 민주적 흐름을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평화롭고 민주적인 일본에 관심을 가진 미국인들은 '궁정(palace)'이 아니라 '감옥(prison)'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꼬집었다(The Nation, September 29, 1945).

68) 이 詔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서 있으며 언제나 그들의 고락을 함께 나누길 바란다. 우리와 국민들 사이의 관계는 상호 신뢰와 애정 위에 기초해 있다. 그 관계는 이제 단순한 전설과 미신에 의존하지 않는다. 천황은 신이며 일본 민족은 다른 민족 보다 우수하여 세계를 지배하도록 운명지어져 있다는 혀구의 관념에 입각해 있지 않다"(Paul Manning, 앞의 책, p. 195에서 재인용).

69) 물론 이 선언이 일본의 정치, 사회에 미친 영향과 의미는 지대하다. 당시 간행된 어떤 유인물에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천황이 신이 아니고 단지 사람일 뿐이라면 사람들은 배꼽을 잡고 웃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생물학자라면 아마도 사람들은 그가 너무 연구에 몰遁한 나머지 미치고 말았다고 애석해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아무의 웃음을 자아낼도 없이 이루어졌다.... 천황이 인간으로 됨과 동시에 인간일 수 없었던 그의 국민도 인간이 되었다"(Moriya Emori, "Japanese Became Human Beings", Japan Review Vol. 1, No. 27, Kokusai Press, Tokyo, July 25, 1947, p. 17.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복사한 자료임).

70) 田中正明,『東京裁判とは何か』, 日本工業新聞社, 1983, 235쪽. 맥아더가 일본의 언론에 내

더는 히로히토에게 "미국의 대통령처럼 국민 앞에 나서 신성한 신이 아니라 국민의 왕"임을 보여줄 것을 권고한 바 있었다. '인간선언'의 조서는 바로 이와 같은 맥아더의 '인간화 프로그램(The Program to Humanize)'의 일환이었다.⁷²⁾

1월 8일 맥아더의 중요한 보좌역할을 수행하고 있던 애치슨은 국무성에 대한 보고에서 "히로히토가 전범으로부터 면제되어 있는 것은 분명 아니다. 그러나 그의 전범으로서의 대우는 우리의 일본에서의 전면적 목적과 분리될 수 없다"면서 히로히토의 재판은 주둔군의 강화, 점령경비의 증대 등이 초래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있다. 다시 1월 24일 시데하라 수상과 장시간에 걸친 회담을 한 그 다음날인 25일, 맥아더는 워싱턴의 트루만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전보를 친다.

천황을 전쟁범죄인으로 지명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천황을 전범으로 몰게 되면 예측할 수 없는 동요와 혼란이 초래될 것임이 명확하고 일본은 분해되고 말 것이다. 일본인은 연합국이 포츠담선언의 약속을 배신하였다고 느끼고 영구히는 아닐지라도 수세기 동안에 걸쳐 해소되지 않을 상호 복수의 연쇄반응이 시작되며 게릴라전으로 저항하고 모든 민주화의 희망이 소멸되어 일본은 공산화하고 말 것이다.... 만약 천황을 전범이라고 결정하면 적어도 백만 명의 점령군과 수십만의 민생위원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⁷³⁾

맥아더의 이 노력은 아직은 히로히토의 면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있지 못하던 국무성을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데 유효하였다. 한편 1월 19일 발표된 「극동국제군 사재판소조례」는 '피고인의 책임' 항에 "피고가 국가의 원수이거나 책임있는 관리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쳐별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경감할 이유로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뉴른베르크재판소의 조례와 달리 '국가의 원수'라는 단어가 삭제되고 "시기의 여하를 묻지 않고 피고인이 보유한 공무상의 지위"라고 수정되고 있다. 이 수

보낸 논평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 "천황의 신년 메시지는 나를 극도로 즐겁게 만들었다. 그럼으로써 그는 국민의 민주화에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는 자유주의적 노선을 정면으로 취하고 있다"(Paul Manning, 앞의 책, p. 195).

71) 히로히토의 '인간선언'은 완전히 미국의 제안과 감수과정을 거쳤음이 드러났다. 당시 히로히토의 부시총장으로 1924년부터 1946년까지 근무했던 기노시타 미치오의 일기는 히로히토 자신을 포함한 7명이 그 선언의 초안 작성에 참여하였으며 그것은 미국측이 먼저 제안하여 그 초안을 사전에 승인하였음을 보여준다(Herbert Bix, 앞의 글, p. 13).

72) Paul Manning, 앞의 글, p. 195

73) 田中正明, 앞의 책, 235쪽

정에 따라 천황은 이 재판으로부터 배제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⁷⁴⁾

(2) 일본과 미점령당국의 천황보호정책의 현실적 전개

히로히토를 전범의 이미지로부터 탈각시키는 데는 두 가지 전술이 동원되었다. 평화주의자(pacifist)로서의 이미지와 방관자(by-stander)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것이 그것이다. 천황을 전범으로 법정에 내세우기를 포기하고 점령정책 수행의 동반자로서 활용하기 위한 맥아더 사령부의 프로그램 중의 하나였다. 이것은 과거 전쟁중에 '야만적이고 인종적이라는 반히로히토 선전'이 이제 '민주적이고 평화애호적이며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군사적 모험에 끌려든 불운의 인간'으로 묘사하도록 대체되었다.⁷⁵⁾

먼저 천황을 일본군국주의의 상징으로부터 새로운 평화주의의 상징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였다. 위에서 본 '인간선언'의 조서 발표가 그 첫번째 노력이었다. 1946년 2월부터 1954년까지 지속된 천황의 지방나들이는 2단계 노력의 일환이었다. 1946년 3월 가와사키 공장의 방문은 2단계 이미지 개선책의 출발이었다. 그 이후 그는 혼슈에만 32회의 나들이를 계속하였다. 1947년 한 해 이 나들이의 비용은 3억 엔이 소요되었다. 일본국민의 복지에 대한 히로히토의 관심을 보여주기 위해 이루어진 이러한 나들이는 미국의 지원하에 전개된 '일본국민에 대한 부끄러운 음모'에 다름아니었다.⁷⁶⁾ 『뉴욕 헤럴드 트리뷴(New York Herald Tribune)』지의 알렌 레이몬드 기자는 "일본인의 천황 숭배는 '서양의 바람' 앞에 굽어지기는 하되 부러지지 않은 강한 나무와 같다. 조심스럽게 계산된 천황의 민주화는 그전보다 오히려 더 위대한 일본 민족주의의 상징을 만들고 있다"고 보도하였다.⁷⁷⁾

74) 田中正明, 위의 책, 236쪽

75) 전쟁 전후에 AP통신의 동경특파원을 지냈던 '러셀 브린' 같은 사람은 이러한 선전이 사실의 왜곡되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히로히토에 대한 재판이 다른 것은 몰라도 '역사를 바로잡는 일'에 공헌하였을 것이라고 하였다(Russel Brines, *MacArthur's Japan*, Lippincott, New York, 1948).

76) Chicago Sun 지의 Gayn 특파원은 맥아더 주변에 개혁을 입으로 밀하면서 전쟁 전의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고도의 반동적인 그룹이 있다고 썼다. 맥아더의 유력한 보좌관이었던 Brigadier Bonner는 '히로히토는 루즈벨트보다 더 전범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한다 (Mark Gayn, *Japan Diary*, William Sloane, New York, 1948).

77) *Post-war Japan : 1945 to the Present*, Edited by Jon Livingston, Joe Moore, and Felicia Oldfather, Pantheon Books, New York, 1973, p. 28

한편 맥아더 자신이 '푸른 눈을 가진 천황'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맥아더 사령부가 히로히토의 신성의 신화를 파괴하고 인간성을 전시하려 한 반면에 맥아더는 자신을 대중으로부터 격리시켰다. 자신을 만나는 일본인의 숫자를 극히 제한하여 그의 재임기간중 천황조차도 10회, 수상은 시케루 요시다를 단 한 번 만났을 뿐이었다. 맥아더는 여행한 적이 없으며 일본인이 가까이서 볼 수 없는 사람이었다.⁷⁸⁾

히로히토가 치와 아들과 함께 평범한 식당에서 하찮은 음식을 즐기며 미군 신문인 『더 스타즈 앤 스트라이프스(The Stars and Stripes)』를 읽고 있거나 정원에서 물을 주고 있는 사진 등이 공개되었다. 미카사 왕자는 다른 학생과 꼭같이 허름한 옷을 입고 동경대학을 다니고 있었으며 다키마쓰 왕자는 자신의 야채 정원을 가꾸고 있었다. 물론 이것은 면밀하게 연출된 것이었다. 1946년 7월의 SNWCC(3성 조정위원회)는 맥아더에게 천황을 '인간화하고(humanize) 인기있게(popularize)' 만들도록 일본국민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비밀히 도울 것을 지시하였다.⁷⁹⁾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히로히토는 이러한 '연출'로 인해 대단히 '민주적' 군주로 되었고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신으로서의 천황보다 더욱 인기를 누리게 되었다. 1946년에 이루어진 어떤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90% 이상이 히로히토를 좋아한다고 응답하였고 당시 등록된 89개 정당 가운데 4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그를 지지하였다. 그의 생일날에는 38만 명의 시민이 공개된 궁정의 일부를 방문하여 경의를 표하였다.⁸⁰⁾

전쟁의 항복을 유도, 결정한 것이 천황이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히로히토가 평화의 옹호자임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른바 '성단 신화'는 본질적으로 국가 의사의 결정주체가 천황이었던 명치헌법하에서 당연한 일이었으나 이를 통하여 궁중·중신그룹은 전후 천황을 기축으로 한 보수권력의 재구성을 시도하였다. 종전의 결단으로 '평화천황'으로 변신한 새로운 천황을 상징의 형식으로 이용하였던 것이다.⁸¹⁾ 국민을 전쟁의 참화로부터 구했다는 것은 곧바로 히로히토가 전쟁을 결정하고 지도한 전쟁범죄자로서의 책임을 상쇄시키거나 부정하는 가장 확

78) Kyoko Hirano, 위의 책, p. 111

79) Edward Behr, 위의 책, p. 362

80) Paul Manning, 위의 책, p. 211

81) '聖斷 神話'는 항복 직전 米内 해상, 木戸 내대신 등의 설득에 따른 하나의 '정치공작'이라는 것이다(山田 郎 외, 위의 책, 229쪽 이하 참조).

실한 길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천황은 점차 군국주의의 피해자이자 새로운 민주화의 상징으로 등장하였다.⁸²⁾ 또한 히로히토가 그 긴 전쟁의 와중에서 단순히 군부지도자들의 호전적 게임을 바라보고만 있던 방관자였다는 사실을 애써 입증하려는 노력들이 있었다. 이같은 주장에는 권위있는 연구자들의 견해가 보태어지기도 하였으나⁸³⁾ 중요한 전쟁의 개시와 확전에 개입하고 서명한 그의 역할은 지울 수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히로히토가 군인과 재벌의 '포로' 또는 '꼭두각시'로서 이용되었던 대단히 위약한 인간이라는 점을 부각하였다. '질질 끌리는 구두, 잘 맞지 않는 양복, 촌놈 같은 행동' 등이 모두 면밀하게 계산된 방어 메커니즘이었던 것이다. 그가 일반 시민들과 접촉하면서 나눈 대화는 언제나 서투르고 바보 같은 것이었다.⁸⁴⁾ 이 '연출'을 통하여 대부분의 외국 특파원들과 히로히토를 직접 대면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던 언론과 국민들은 히로히토가 충분히 도조를 비롯한 군인들의 협박과 술수에 놀아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다.

히로히토를 전범처벌로부터 보호하려는 맥아더의 노력은 여론몰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맥아더는 히로히토에 대한 전범재판이 준비중이라는 정보를 일본 언론에 훌리게 하고 일본 언론을 통하여 히로히토에 대한 광범한 지지와 연합국의 포츠담선언 위반의 여론을 모으게 하였다. 미국과 세계 언론에 동경 특파원을 통하여 이러한 일본 국내의 여론을 반영하게 함으로써 히로히토 처벌의 부당성을 유포하였다.⁸⁵⁾

한편 맥아더 사령부는 히로히토에 대한 비판과 부정적 선전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원래 히로히토는 태평양전쟁 기간 동안에 히틀러나 무솔리니와 함께 추축국의 침략전쟁과 잔혹행위의 상징으로 내내 묘사되었다. 전쟁 초기의 영화들에서 히로히토는 일본군국주의와 민족주의 종교적 광신집단의 상징

82) 월간잡지 *Van*에서 여러 계층의 국민에게 현재의 일본사회에서 가장 오래된 것(봉건적인 것)과 가장 새로운 것(민주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그 가운데 '고타로 짐보'라는 사람은 두 질문 모두에 대해 천황이라고 답변하였다. 가장 봉건적이면서 그 당시 가장 민주적인 이미지를 이미 구축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Japan Review*, Vol. 1, No. 47, Kokusai Press, Tokyo, December 12, 1947, p. 12).

83) Robert Butow의 *Japan's Decision to Surrender*와 같은 저작이 이러한 학술적 성과에 속한다.

84)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히로히토의 대응은 꼭 같았기 때문에 언론들은 그의 외부 방문을 'ah so deska 방문'이라고 이름 붙였다(Edward Behr, 앞의 책, p. 365).

85) Paul Manning, 앞의 책, pp. 218~219

이었다. 1942년에 제작된 영화 <전쟁의 서막(Prelude to War)>에서 히로히토는 전쟁의 선동자로서 악마적 이미지를 지니고 있었다. 1943년 제작된 <나치 스트라이크(The Nazis Strike)>는 도조가 아닌 히로히토를 중국에서의 일본 침략정책의 배후인물로 언급하고 있다. 1944년도의 <중국전쟁(The Battle of China)>에서 말을 탄 히로히토는 웅장한 배경음악과 함께 야만적 일본을 상징하고 있다. <적, 일본을 알라(Know Your Enemy Japan)>는 일본의 천황 숭배와 역사적 및 심리적 배경을 묘사하고 있다. 이 영화는 천황신(God-Emperor)이 일본의 독재와 광란의 군국주의의 원천이라고 결론짓는다. 그러나 이러한 히로히토에 대한 묘사는 1944년 완성된 같은 시리즈 <왜 우리는 싸우는가(Why We Fight)>의 배포금지로 일단 중단된다. 이 영화는 히로히토를 전범으로 묘사하고 있었던 때문에 알려졌다. 이제 히로히토가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결정에 따라 정책의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⁸⁶⁾ 1946년 8월 <일본인의 비극(The Japanese Tragedy)>이라는 영화의 상연을 금지하였다. 이 다큐멘터리는 '후미오 카메이'라는 사회주의자에 의해 만들어진 영화로서 일본의 15년 침략을 묘사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미군정 당국의 검열을 통과하여 일부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다가 갑자기 상연 금지조치가 취해졌던 것이다. 그 이유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히로히토를 전범으로 암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당시 영화전문가들은 이해하였다.⁸⁷⁾

(3) 미국 내의 여론

한편 미국 국내에는 천황의 전범재판 회부를 주장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았다. 전시중에도 미국변호사협회 이사회는 천황을 포함하여 일본의 전범들을 재판하는 연합국 법정을 개최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가 하면 상원 육군위원회에서도 천황의 전범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결의안이 조지아주 출신의 리차드 러셀 상원의원에 의해 제출되기도 하였다. 1943년경 갤럽이 조사한 여론에 따르면 천황의 사형을 주장하는 미국인이 43%였으며 무죄라는 주장이 4%에 지나지 않았다. 1944년 2월 미국의 교회협의회에서는 천황을 신격화하는 일본국민의 맹신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대표적 신사(神社)를 폭격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하였다.⁸⁸⁾ 진주만 공

86) Kyoko Hirano, 앞의 책, p. 108

87) Kyoko Hirano, 앞의 책, p. 106

88) 田中正明, 앞의 책, 242쪽

격, 미군포로에 대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전쟁이 끝나기 전후에 걸쳐 미국인의 일본에 대한 반감, 천황의 책임 추궁에 대한 여론은 높을 수밖에 없었다. 1945년 5월 29일 시행된 여론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⁸⁹⁾

처형하라	33%
제판소에서 결정하라	17%
여생 동안 감옥에 넣어두라	11%
외국으로 추방하라	9%
가만히 두라	4%
일본통치의 꼭두각시로 이용하라	3%
기타 의견	23%

3분의 1 이상이 처형을 원하고 있었던 것이다.⁹⁰⁾ 한편 국무성 내에도 천황에 대한 처리문제가 말끔히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 위에서 본 대로 대체로 천황제의 존속이 정책의 골격으로 자리는 잡아갔지만 반대론이 만만치 않게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벤스 국무장관 때의 차관 애치슨의 브레인으로 일했던 오웬 래티모어는 “천황과 황위 계승의 자격이 있는 남자는 모두 국외에 추방하여 유엔의 감시하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였다. 전 대사 그루가 우파였다면 애치슨 그룹은 좌파라고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국무성 내의 미묘한 갈등이 현지의 점령군에게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었다.

(4) 미국의 천황보호정책의 배경

이러한 미국의 여론을 바꾼 것은 무엇보다도 종전시에 보여준 천황의 위력이었다. 미국의 군부는 일본을 항복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이 초래되어야 할 것인가를 염려하고 있었다.⁹¹⁾ 이미 ‘신풍특공대(神風特攻隊)’라든가 ‘옥쇄장병(玉

89) John W. Dower, 앞의 책, p. 342

90) 일본의 항복 직후 시행한 영국의 여론도 일본의 천황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67%가 퇴위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22%만이 군주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John W. Dower, 앞의 책, p. 342).

91) 미국 전쟁성(War Department)은 이른바 ‘Operation Olympic’(암호명 Downfall)이라는 일본 본토진입작전을 수립하고 있었다. 이 문서는 일본의 지상군 숫자를 75만 명 정도로 계산하고 있으나 맥아더는 이것이 과소평가라고 여기고 있었다. 실제는 235만 명의 정규병력과 25만 명의 예비군, 320만의 민병대원이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맥아더는 일본 본토진입작전에서

碎將兵)’에 의한 광신적 공격형태를 경험한 미국으로서는 당연한 걱정이었다. 일본본토 점령을 위해 1백만 명에 달하는 미군의 희생을 예상하는 견해도 있었다. 원자폭탄의 특하로 전쟁의지는 꺾이고 있었지만 여전히 본토점령은 큰 희생을 요구할 것이었다. 그런데 일본의 항복은 너무도 쉽게 왔다. 5백만 일본 장병에게 천황은 자신의 목소리만으로 아무런 파란 없이 무기를 버리게 하였다. 이것을 미국이 목격하면서 천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⁹²⁾ 이들은 천황에 대한 신상의 변화가 어떤 지향을 야기할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맥아더가 워싱턴에 보낸 비밀보고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수동적이든 능동적이든 간에 모든 일본인이 이것(히로히토의 처벌)에 대해 저항할 것이다. 그들은 무장해제되었고 훈련받고 장비를 갖춘 군대에 특별한 위협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모든 정부기관은 붕괴될 것이고 문명화된 관행이 중단될 것이다. 산악지대나 변방에서는 게릴라전에 상당하는 지하의 혼란과 무질서가 초래될 것이다. 근대적 민주적 방식을 도입하려는 모든 희망은 사라지리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⁹³⁾

미국은 천황의 처리에 관하여 깊은 논의와 고민을 하였다. 전범으로서의 구속, 기소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하고 그 대응책을 강구해본 극비문서가 있다. 미군의 정보기관인 G - 2에서 만들어진 이 문서는 천황의 체포가 가져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⁹⁴⁾

히로히토가 천황직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범으로 체포된다면 일본인들은 이것을 천황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일 것이며 다음과 같은 심각한 충격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 (a) 내각과 대량의 공무원의 사퇴와 거의 모든 정당의 세로운 조각의 참여 거부
- (b) 일본인들은 연합국이 종전 당시 합의된 내용과 달리 악의에 의해 행동하고 있

1백만 명의 미군의 희생을 예상하고 있었다(Paul Manning, 앞의 책, p. 3).

92) 田中正明, 앞의 책, 243쪽

93) Paul Manning, 앞의 책, pp. 219~220

94) 이 문서의 제목은 ‘The Japanese Emperor’이고 Gen. Weckerling에 의해 기초되고 Polec Branch에서 마련하여 1946년 1월 15일 제출되었다. 이 문서는 필자가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찾아낸 것으로 그 분류번호는 RG 319(Army Staff)/Intelligence(G - 2) Library/P File 1946-1951/Box 1411/Project 2900이다.

다고 비난할 것이다. 1945년 8월 11일 일본정부가 “포츠담선언이 절대적 통치자로서의 천황의 대권을 훼손하는 어떤 요구도 하지 않는다는 이해하에 승인한다”는 각서와 연합국의 “일본정부의 최종적인 형태는 포츠담선언에 합치되고 일본국민의 자유로이 표현된 의사에 의해 수립될 것”이라는 담신이 천황의 체포에 의해 무효화되었다고 다를 것이다.

- (c) 연합국의 점령 프로그램이 훨씬 더 힘들게 되고 아마도 적지 않은 생명의 대가까지 치러야 하는, 그리고 일본 경찰에 의해서는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질 반연합국적인 다수의 충돌이 나타날 것이다. 연합국의 일본 전주 그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할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일본인들의 수동적 또는 능동적 저항은 훨씬 많은 숫자의 군대와 군정요원들의 사용을 불가피하게 할 것이고 연합국의 일본 점령목적 달성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 (d) 천황에 대한 공격은 일본인들 사이에 확고한 저항운동을 형성할 것이다. 그 저항을 암도할 연합국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연합국의 군대나 권위에 대해서도 일본인의 전열을 정비하는 유품가는 요소로서 오랫동안 남게 될 것이다.
- (e) 일본의 종래 지배계층은 천황제의 존속과 점령당국과의 선린관계 유지로써 지배적인 위치를 계속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황의 즉각적인 폐위와 자살이 몇 가지 어려운 선택 가운데 하나라는 권고를 하려고 할 것이다. 체포의 사전 통고가 있다면 히로히토가 살아서 연합국에 인계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히로히토의 퇴위 또는 처벌이 과연 맥아더나 그 휘하 관리들의 보고처럼 그토록 심각한 혼란이나 저항을 발생하였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⁹⁵⁾ 아키히토에게 양위케 하고 지치부, 다키마쓰, 미키사 등 히로히토의 세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을 섭정의 자리에 임명해두었다면 어떠한 우려할 사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일본 역사가들의 논평이었다.⁹⁶⁾

하지만 이미 일본의 패배가 기정사실이 되고 이제 일본을 손아귀에 넣은 미국의 관심은 오직 어떻게 효율적인 점령정책을 실시하고 미래의 일본을 미국의 영

95) 사실상 미국은 일본 천황의 위력에 대해 지나치게 과대인식하고 있었던 면도 있었다. 일본 본토의 폭격과정에서 ‘황궁’ 폭격을 피하려고 한 것은 “공포를 야기하기보다는 국민들 사이에 공격적 정신을 자극”할 것을 우려한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황궁’이나 ‘신사’는 폭격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항복 권유 떠리에서 천황보다는 ‘대본영’을 비난하는 등 신경을 썼다 (John W. Dower, 앞의 책, pp. 342~343).

96) Edward Behr, 앞의 책, p. 349

항권 아래 묶어둘 것인가에 쓸렸다. 히로히토의 처벌 또는 양위로 인한 위험부담을 각오할 생각은 없었던 것이다. 과거의 일본이 자행한 죄악과 그 범죄자들을 찾아내 처벌하는 일은 이차적 과업에 속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은 ‘무익한’ 것인 데다가 ‘비생산적’인 것이었을 뿐이다.⁹⁷⁾

천황제도의 유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제도가 시대착오적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일본국민이 천황제가 없는 완전한 민주주의를 자체적으로 꾸려나갈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른바 천황제의 존속을 주장한 ‘지일파(Japan Crowd)’의 핵심인 그루는 트루만 대통령에게 “천황제도는 의심할 여지 없이 봉건제 유제”라고 단언하면서 동시에 “일본에서 민주주의는 결코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입헌군주제의 발전이 최선”이라고 설득하였다. 조지 샌스(George Sansom)을 비롯한 영국외무성 관리들도 근본적 개혁정책을 반대하였던바 그 이유가 일본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없다는 관점을 가졌기 때문이다. 1945년 10월 시데하라내각이 수립되었을 때 동경의 영국대사관 직원이 “아프리카 부족 민족이나 차지적 정부에 맞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것이다.⁹⁸⁾

더구나 냉전의 시작과 확대 역시 미국의 천황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 중요한 요인이었다. 1947년부터 격화되기 시작한 냉전은 미국의 점령정책의 역전을 가속화시켰다. 미국은 일본 내에서 공산주의 세력이 부상하는 것을 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⁹⁹⁾ 더 나아가 일본이 중국대륙과 한반도를 거쳐 남하해오는 공산세력의 방파제가 되어 주기를 바랐다. 한때 아시아 전역의 지배를 꿈꾸었고 어느 정도까지는 현실화시켰던 일본의 잠재력을 소련의 팽창과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삽감시키는 데 이용하려 들었던 것이다.¹⁰⁰⁾ 한반도에서의 긴장과 한국전쟁은 그런 미국의 정책이 정당하였음을 증명해주는 것이었다. 소련 등 공산권에 대한 방어선으로서의 일본의 안정과 강화, 여기에 히로히토의 존재가 필요하였다.

97) Edward Behr, 위의 책, 서문 xxii

98) John W. Dower, 앞의 책, p. 344

99) 미국은 ‘자유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해외에 망명중이던 일본인들의 그룹을 모아 ‘국제일본민 중해방연합’을 도와 자유로운 민주정부를 세우는 것을 검토한 적이 있었으나 이것이 망명 공산주의자들에게 의해 저해당할 것을 우려, 포기해버렸다(Edward Behr, 앞의 책, p. 349).

100) 1949년 6월 15일 미국 국방장관이 국가안보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맥아더와 히로히토, 트루만 사이에 소련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일본의 중요성과 그 역할에 대하여 일정한 합의를 하고 있다(Paul Manning, 앞의 책, p. 226).

6) 극동위원회와 연합국의 입장

(1) 극동위원회의 논의와 미국정책의 추이

공식적으로 보면 당시 천황을 전범으로 처리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1945년 11월에 설치된 연합국의 '전범조사위원회'가 결정권을 가지게 되어 있었다. 보다 더 근본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는 연합국으로 구성되어 워싱턴에 설치된 '극동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1946년 1월 초 오스트레일리아는 런던에 있던 전범위원회(War Crimes Commission)에 히로히토를 전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공식적 요구를 해왔다. 같은 해 2월 26일 제1회 극동위원회가 워싱턴에서 개최되었을 때 참석한 소련대표는 일본에 공화제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 제안에 중국, 필리핀,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동조할 태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극동위원회의 주도권은 미국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다. 1946년 4월 3일 '극동에서의 전범의 확인, 재판 및 처벌(Prevention, Trial and Punishment of War Criminals in the Far East)'에 관한 정책결정을 통과시켰다(FEC-007/3). 이것은 천황의 전범 간주를 금지한 미국정부의 1945년 10월 6일자 명령과 내용 자체와는 유사하였으나 일본 천황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그러나 이 정책결정에 근거하여 미국정부가 연합국최고사령관에게 보내는 명령에는 "어떠한 직접적인 허가 없이는 천황을 전범으로 기소하지 않도록 문구가 만들어지는 것을 양해"하였다(FEC-007/4).¹⁰¹⁾ 이에 따라 1946년 4월 23일 미국의 합참본부가 연합국최고사령부에게 보내는 명령에는 극동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이 명령의 세번째 문장¹⁰²⁾은 천황을 전범으로 하는 어떠한 행동도 허가한 것으로

101) Far Eastern Commission, *The Japanese Emperor as a War Criminal*, April 17, 1950, p. 1(미국 국립문서보관소, RG 43/Records of International Conferences, Commissions and Expositions/Records Relating to Far Eastern Commission/U.S Delegation Subject File 1945-1952/Emperor-Soviet, Miscellaneous/Box.4, Entry 1084, File Name : Emperor 가운데의 문서)

102) 이 문장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귀관은 첫번째 장에 규정된 전쟁범죄를 정했다고 보이는 모든 용의자를 확인, 조사, 구금하는 모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다."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귀관은 천황의 처리에 관한 특별한 지시 없이는 그를 전범으로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FEC-054/9).

이 결정은 이제 천황을 더 이상 전범으로 기소하는 일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견제판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천황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극동위원회의 별도의 결정을 얻어야 하는데 극동위원회가 미국의 의사에 반하여 그러한 결정을 하기는 불가능했다. 1949년 2월 24일 극동위원회는 '일본전범의 재판'에 관한 정책결정을 승인했다. 더이상 A급 일본전범 재판은 없을 것이라는 점이 그 주된 내용이었다. 이 결정에는 필리핀과 소련이 기권했다. 이 결정은 미국의 국무장관을 통해 당연히 연합군최고사령관에게 명령으로 전달되었다(FEC-314/8).

다시 1949년 3월 31일 극동위원회는 일본전범의 재판에 관하여 각 회원국 정부에게 1949년 6월 30일 이전에 모든 조사를 완료하고 그리하여 같은 해 9월 30일 이전에 모든 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권고를 승인했다(FEC-314/16). 이 결정에는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인도, 뉴질랜드, 영국, 미국 6개국이 찬성하였고 필리핀이 반대하였으며 캐나다, 중국, 네덜란드, 소련이 기권했다.

(2) 천황의 처벌을 요구한 연합국들

미국은 천황의 면책을 미국 단독이 아니라 연합국 전체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는 방향으로 몰고 가는 데 극동위원회를 이용하였다.¹⁰³⁾ 필리핀과 소련 등 미국의 천황에 대한 정책에 반대하는 나라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극동위원회 회원국들은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였다. 이들 연합국 가운데 천황의 수사와 단죄를 강력히 요구한 것은 소련과 중국,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였다. 소련은 처음부터 천황제가 일본에서의 공산혁명에 가장 큰 장애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천황제 폐지를 시종일관 주장하였다.¹⁰⁴⁾ 그러나 항복당시 소련 영토

103) 1949년 1월 13일 미국의 *Evening Star*지가 일본의 점령 초기에 미국의 합참본부가 맥아더 사령관에게 이미 천황의 책임면제를 지시해두고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그 결정은 미국 단독 의사가 아니라 극동위원회의 결정(FEC-007/3, 4)에 따른 것이었다고 미국은 강변하였다 (Memorandum for the Files, Background of Far Eastern Commission Action Regarding Status of Emperor under War Criminal Policy, 5 April 1950, 위 국립문서 보관소 Box.4, Entry 1084, File Name : Emperor 가운데 있는 문서).

104) 소련의 일본대표단의 책임자는 데레비안코(Derevyanko)였는데 미국무성 정보담당자는 일본 내에서 '반천황적 요소를 확산시키려는 데레비안코의 노력을 일본을 소련의 위성국으로 전환시키려는 '숨은 침략(concealed aggression)'이라고 평가하였다(Paul Manning, 앞의

에 남아 있다가 강제노동에 처해진 57만 명의 일본인 등의 문제가 소련 자신이 다른 나라로부터 간섭받지 않아야 할 상황에 놓이게 만들었다.¹⁰⁵⁾ 대부분의 연합국들은 천황의 처벌에 관해 극동위원회에서 그토록 강경한 입장을 보이지는 않았다. 시간이 갈수록 당초의 강경한 입장을 포기하거나 유연하게 변경하고 있었다.

한편 중국의 경우 당초 천황의 처벌문제에 유연한 입장을 보이다가 종전이 임박하면서부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¹⁰⁶⁾ 그러나 중국의 여론은 종전 전후에 걸쳐 천황이 일본군국주의의 근거이므로 폐지하여야 하며 히로히토는 히틀러나 무솔리니와 동열에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범적으로는 전범임이 명백하므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¹⁰⁷⁾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받은 중국 인들에게는 당연한 반응이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아시아지역 밖의 국가로서 일본의 공습을 받은 유일한 국가였다. 1942년 2월 인도네시아의 안폰섬이 함락되면서 8백 명의 오스트레일리아 군인이 포로로 되는 등 2만 명 이상이 일본군의 포로로 학대받았다. 영국의 친히로히토 정책¹⁰⁸⁾으로 일본군에 대단히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외무성은 64명의 전범 리스트에서 히로히토를 일곱번째 순서에 올려놓고 있었다. 이미 전쟁이 끝나기 전부터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히로히토가 미주리 협상의 항복문서에 직접 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주 오스트레일리아 공사는 1945년 8월 13일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의 입장을 본국의 국무성에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국가의 원수로서 또한 육해군 통수권자로서 천황은 일본의 침략 행위 및 전쟁범죄에 관하여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다.¹⁰⁹⁾ 오스트레일리

책, p. 221).

105) Awaya Kentaro, "In the Shadows of the Tokyo Tribunal", *The Tokyo War Crimes Trial: An International Symposium*, 1986, p. 84

106) 카이로회담에서 장개석 총통은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에게 항후 일본침략을 방지하기 위해 천황제 폐지는 무의미하며 종전 후 일본인 자신에게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1945년 들어서면서부터 중국은 일본 천황을 침략의 원흉으로 선전하기 시작하였다. 연합국 조사위원회·극동분과위원회에서 마련한 전범 리스트에 일본 천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미 설명한 대로이다. 1945년 11월 28일의 상해방송은 천황 이하 3백 명의 전범자명부를 맥아더 사령부에 제출하였고, 같은 해 9월 26일 연안방송은 ‘일본육해군대원수’인 천황이 당연히 제일의 주범으로서 재판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田中正明, 앞의 책, 245쪽).

107) 중경에서 간행되는 『益世報』 기사(田中伸尚, 앞의 책, 143쪽에서 재인용)

108) 영국의 경우에도 노동당의 일부 의회의원들은 히로히토의 제거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하원 의원 제임스 칼라한(나중에 수상이 된 사람)은 히로히토의 퇴위를 주장하는 연설을 한 사실이 있다(Edward Behr, 앞의 책, p. 332).

아의 히로히토 처벌 방침은 그들의 포로들에 대한 일본군의 학대에 기한 국민의 반감 때문이었다. 뉴질랜드 역시 오스트레일리아에 동조하였다. 맥아더의 온건한 점령정책과 히로히토의 면책에 대하여 단호히 반대하면서 뉴질랜드 수상은 1945년 9월 20일 미국대사를 불러 다음과 같이 그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¹¹⁰⁾

온건한 평화는 있을 수 없다. 일본은 그 전쟁 잠재력이 완전히 제거되고 민주적 정부가 확립될 때까지 필요한 한 연합국에 의해 점령되어야 한다. 천황은 전범으로 재판받아야 한다.

소련을 제외한 다른 연합국들이 히로히토의 면책을 주장하는 미국의 입장에 동조한 것은 기본적으로 그의 처벌이 가져올 점령정책의 차질과 일본의 혼란에 대한 우려였다. 이에 대한 맥아더의 위의 보고는 영국수상 애들리, 전범위원회의 회원국 등에도 열람되었고 게릴라전까지 예상된다는 사실에 이들이 구태여 히로히토 면책에 반대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¹¹¹⁾

7) 동경제판과 천황

(1) 동경제판의 ‘아킬레스건’, 천황의 처리

동경제판의 전과정을 통하여 천황의 단죄문제가 끝없이 떠올랐다. 그만큼 전쟁의 수행과정에서 천황의 위치와 책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었고 이러한 상황이 연합국과 국제사회로 하여금 천황의 처단 여론을 환기시키게 하였던 것이다. 천황의 전범으로서의 기소는 일본 천황의 퇴위만을 의미하지 않고 나아가 천황제 자체의 폐지 논의로 연결되며 마련이었다. 피고인과 변호인, 일본 정부와 국민들이 ‘일희일우(一喜一憂)’하면서 동경제판의 주이를 지켜보았다.

동경제판의 수사와 기소를 위해 지명된 미국측 검사들은 동경으로 출발하기 전 “히로히토를 전범 리스트의 맨 꼭대기에 두는 것”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¹¹²⁾

109) 田中伸尚, 앞의 책, 144쪽

110) Daizaburo Yui, 앞의 글, p. 42

111) Paul Manning, 앞의 책, p. 221

112) Robert Donihi, “War Crimes”, *St. John’s Law Review*, Vol. 66, No. 3, Fall 1992, p. 742. 로버트 도나히는 필자가 지난 1993년 7월경 개인적으로 인터뷰한 바 있다. 그는 히로

그러나 출발하면서 공항에서 트루만 대통령으로부터 키난이 서신을 전달받았는바, 히로히토는 말할 것도 없고 천황의 가족 누구도 손대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었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¹³⁾ 어차피 히로히토의 운명은 실무적인 검사들이 결정할 일은 아니었다. 12월 6일 일본에 도착한 키난 수석검사는 기자회견에서 천황의 전범문 제에 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면서 일본의 역사를 단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자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일단 큰소리는 쳤다. 그러나 미국이 점차 맥아더의 권고를 받아들여 히로히토의 면책을 굳혀간 경과는 이미 살펴본 대로이다.

한편 일부 연합국들은 재판중은 말할 것도 없고 재판이 끝난 뒤조차도 천황의 재판문제를 물고늘어짐으로써 미국과 일본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었다. 예컨대 1950년 2월 소련대표는 천황이 세균전의 주범으로서 재판에 회부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중국 출신 판사는 “천황이 영구히 재판을 받지 않는다고 결정된 바는 없다. 새로운 사실과 증거가 나오면 언제라도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여 소련안을 지지하였다.¹¹⁴⁾ 이러한 연합국들의 태도로 말미암아 동경제판이 완전히 끝나고 추가 재판 계획이 없다는 선언이 있기 전까지 히로히토의 운명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다.

(2) 재판당사자의 천황 보호

A급전범으로 재판을 받았던 피고인들은 한결같이 천황의 보호를 자처하고 나섰다. 특히 도조(東條)는 천황을 보호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도조가 이러한 천황을 철저하게 옹호하고 나선 데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다.

(동경제판의) 피고인들의 가족은 어디에서나 따돌림을 당하였다. 도조는 면회온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소식을 듣고 그의 가족에 대한 나은 대접을 요구하였다. 도조는 히로히토가 재판의 속기록을 다 읽고 있음을 알았다. 히로히토의 승인없이 저지른 범죄는 전혀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천황을 어려운 지경에 놓이도록 만들 수 있었던 그는 천황이 그의 가족에 대한 혜택으로 자신을 입다물게 하도록 하였다. 도조의

히토를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은 미국 검사들 사이에서도 공유되어 있었으며 실제 면책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반발하였음을 증언하였다.
113) 미국측 검사의 한 사람이었던 Robert Donihi의 증언(Edward Behr, 앞의 책, p. 346)
114) 田中正明, 앞의 책, 245쪽

가족에게 곧바로 큰 혜택이 돌아갔다… 히로히토는 어느 재벌회사에 요구하여 그 가족을 돌보도록 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도조는 히로히토에 관한 옹호를 그의 재판의 전과정, 나아가 사형대에서까지 계속하였다.¹¹⁵⁾

아무튼 1947년 12월 26일 오후 도조는 직접 증인으로 나서서 여러 변명을 하는 가운데 일본은 처음부터 미국 등과 개전할 의도가 없었고 ‘자존자위’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전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천황은 아무런 전쟁책임을 질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극력 주장하였다. 특히 보필자의 ‘상진(上奏)’에 대하여 천황은 거부권을 발동할 입장에 있지 않았고 실제 정치에는 구체적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천황에게 개전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었다.¹¹⁶⁾

그러나 고지식하던 그가 일대실수를 하고 만 일도 있었다. 1947년 12월 31일 기도(木戸) 피고인을 담당하던 로간 변호사가 중언대에 선 도조의 반대신문을 하고 있었다.

문 천황이 평화를 희망함에 대하여 기도가 반대 행동을 취한 것이 있는가?
답 그러한 사례는 결단코 없다. 일본국의 신민인 자가 폐하의 의사에 반하여 이 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물며 일본의 고관이야 오죽하겠는가?

이 문답을 무심코 듣고 있던 키난 검사가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다. 도조의 이 답변에 따르면 만주사변, 진주만 공격 등 모든 전쟁범죄가 모두 천황의 의사에 따른 것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내세워온 ‘천황 꼭두각시론’의 파탄이기도 하였다. 급해진 키난은 당일 관련자들과 궁내성 장관까지 동원한 상태에서 이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어 도조를 설득시키기로 결정하였다. 도조가 ‘완전요해’한 것을 확인한 후인 1948년 1월 6일 법정에서 키난은 도조를 다시 신문하였다.¹¹⁷⁾

문 며칠 전 당신은 일본 신민인 자는 누구도 천황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없다고 하였는데 사실인가?
답 그것은 나의 국민으로서의 감정을 말한 것이고 법률적인 천황의 책임과는 별

115) Paul Manning, 앞의 책, p. 215

116) 島村喬, 앞의 책, 85쪽

117) 田中正明, 앞의 책, 258~259쪽

개의 문제이다.

문 그러나 실제는 미·영·네덜란드에 대하여 전쟁을 시작한 것은 사실이지 않은가.

답 나의 내각이 전쟁을 결의하였다.

문 그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하는 것은 천황의 의지가 아니었는가.

답 나의 진언, 통수부 기타 책임자의 진언에 의하여 마지못해 동의한 것이 사실이다. 폐하는 최후의 일순까지 평화애호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키난에게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다.¹¹⁸⁾ 이와 같이 미국과 연합국사령부, 그 영향을 받는 검사총¹¹⁹⁾은 히로히토의 전범처벌 논의를 처음부터 봉쇄하기 위하여 동경제판의 전과정에서 히로히토의 무책임을 입증해두려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히로히토의 책임을 확신하고 있던 웹 재판장과 부딪치기도 하였다. 재판 초기 웹은 왜 히로히토가 기소되지 않았는지 키난에게 물었다. 키난은 전쟁 전의 전기 간을 통하여 천황이 '갱들의 권리' 속에 있었던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¹²⁰⁾

전범의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았던 검사총의 히로히토 보호는 이 재판을 더욱 희극적으로 만들어갔다. 히로히토의 책임 부분이 나오면 황급히 질문을 줄이거나 대답을 가로막기가 일쑤였다. 어느날 하라누마(平沼騏一郎) 전 수상의 중인으로 불려나온 오카다(岡田啓介) 전 수상의 중인신문 과정에서 수석검사 키난은 전 주만 공격에 앞서 천황은 전쟁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가를 물었다. 그가 답하였다. "그것은 확실히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바 천황 폐하는 전쟁을 싫어하였습니다.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 자체가 싫었던 것입니다."¹²¹⁾ 키난은 이 중인을 통하여 히로히토에게 전쟁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해두

118) 그 이틀 후 키난은 온천지 아타미에서 전 수상 레이지로 와카쓰키와 우가기 장군 등으로부터 항응을 제공받으면서 "이제 천황의 무고함이 결정되었다"고 선언하였다. 수많은 술이 들이켜지고 키난에게는 '케이샤'가 제공되었다고 한다(Edward Behr, 앞의 책, p. 358).

119) 물론 국제검사단의 모든 검사들이 히로히토의 불기소에 동의하였다 것은 아니다. 검사들의 준비모임에서 히로히토의 기소 면제를 키난이 강조하자 영국의 한 검사는 "그것은 결정인가 아니면 제안인가?"라고 물었다. 키난은 그러한 정체가 이미 결정되었으며 단지 동의를 구하고 있을 뿐이라고 대답하였다. 그 영국 검사가 동의할 수 없다고 하자 키난은 그것은 절령정책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것이며 연합국의 보편적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이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즉시 국제검사단을 떠나도록 좋다고 응수하였다. 실제 몇 사람은 나중에 이에 반발하여 떠나버렸다(Edward Behr, 위의 책, p. 352).

120) Edward Behr, 위의 책, p. 352

고 싶었다. 그러나 웹 재판장은 무관한 사항을 묻지 말라는 식으로 제지하곤 했다. 소추되어 있지 않은 천황의 유무죄를 다툴 이유가 없다는 의미였다.

키난이 천황의 보호에 관한 지시를 받았던 것은 이미 재판 시작 이전부터였지만 재판 중간에도 본국으로 소환되어 동일한 지시를 거듭 받았다.¹²²⁾ 그 무렵 웹 재판장 역시 이례적으로 본국을 방문하고 돌아왔는바 웹의 태도와 관련하여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와 일정한 조율을 위한 것으로 추측하는 견해가 대부분이었다. "연합국에 의해 내려진 정벌의 철퇴가 일본의 급소를 피해간 것은 일본 뿐만 아니라 연합국의 행복"이라는 어느 일본인의 당시 간박한 재판 이면에 대한 평가는 천황의 동경제판 출연(出演)을 위한 숨가쁜 공작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¹²³⁾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들조차 천황의 책임은 언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두고 있었다. 피고인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천황의 책임에 대한 추궁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절대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천황에게 전쟁의 개시와 확대의 최종적인 결정권이 있었다면 그만큼 동경제판의 피고인들은 책임을 멀 수 있기 때문이었다. 1946년 4월 24일 '변호인회'가 발족하였고 이것이 동경제판의 개정 그 다음날인 5월 4일 '극동국제군사재판소 일본변호단'으로 확대 개칭되었다. 일본정부는 '변호의 방침'으로서 ① 천황의 책임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 ② 국가를 변호하는 것, ③ 전 2항의 범위 내에서 개인을 극력 변호할 것을 결정하여 변호단에 그 방침을 수용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동경제판의 피고인들은 개인적 지위로 기소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적인 연고에 의해 변론을 맡은 변호사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론방침에 대해서는 월가월부 이론이 있었다.¹²⁴⁾ 그러나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당시 변호인들은 이 재판을 개인을 위한 변론이라기보다는 천황과 일본이라는 국가를 변론의 우선대상으로 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전범을 기소하여야 할 검사총, 자신의 고객을 위해 '주범' 히로히토의 책임을 지적하여야 할 피고인들과 변호인측이 함께 공모하여

121) 田中正明, 앞의 책, 250쪽

122) 키난 검사는 이때 잠시 본국으로 귀환하여 국무성에서 대일정책의 필요상, 천황전범문제를 더이상 재론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법정에서 천황을 전범 용의자 취급하는 분위기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고 전범은 말할 것도 없고 중인 또는 참고인 등 어떠한 형태로도 천황의 퇴위를 촉구할 만한 일은 절대로 거부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지받았다고 한다(田中正明, 위의 책, 253쪽).

123) 田中正明, 위의 책, 255쪽

124) 豊田豊雄,『戦争裁判余録』, 東京: 泰生社, 1986, 104쪽

천황의 면책을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함께 동경제판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는 히로히토의 증인출석 여부였다. 동경제판의 재판장이었던 웨은 재판 진행중에도 진정한 책임자인 히로히토를 증인으로 불러내지 않고서는 공정한 판결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개인의견으로 드러내기도 하였다.¹²⁵⁾ 그러나 히로히토를 증인으로 불러내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웨이 출석하지 않은 자리에서 해버렸다. 그러나 검찰측의 에드워드 모나한에 의해 다시 히로히토의 동경제판의 출현 여부가 논의되었다. 모나한은 히로히토가 어릴 때부터 일기를 썼으며 이것이 전주만 공격에 중대한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그 일기를 법정에 제출하도록 소환장을 보내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키난은 비밀스런 쪽지를 통해 “이같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연합군사령부의 최고 당국으로부터 구체적 명령이 있은 뒤에야 가능하다”면서 그 주장을 일축했다.¹²⁶⁾ 히로히토는 동경제판에 얼굴조차 한번 내밀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3) 천황 면책과 동경제판에 대한 평가

히로히토의 불기소와 면책은 동경제판이 가진 정치적 성격 또는 소추의 불공평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었다.¹²⁷⁾ 그것은 동경제판 자체의 정치성과 편파성, 불균형성을 입증하는 일기도 하였다. 히로히토가 전범으로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경제판 자체에서 그의 유무죄가 언급될 수도 없었다. 단지 소수의견 가운데 프랑스 출신 판사 앙리 베르나드는 “전쟁선포에서 현재의 피고인들은 단지 종범에 불과한 것이고 기소를 면한 주범이 따로 있다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쓰기도 하였다.¹²⁸⁾ 그러나 이 재판의 재판장이었던 웨은 판결 직후 개인적 의견을 발표하면서 히로히토의 전쟁책임은 명백하며 그의 불기소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이었음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¹²⁹⁾

125) 清瀬一郎, 앞의 책, 77쪽

126) Edward Behr, 앞의 책, p. 352

127) 赤澤史郎, 『東京裁判』, 岩波書店, 1992, 54쪽

128) Edward Behr, 앞의 책, p. 359

129) 1948년 11월 4일자 『朝日新聞』이 UPI통신을 인용 보도한 내용(井上清, 앞의 책, 2쪽에서 재인용)

1. 천황의 권위는 천황이 전쟁을 종결할 당시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전쟁을 개시할 때에도 천황이 보인 현저한 역할이 검찰측으로부터 제시되었지만 동시에 검찰측은 천황을 기소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하였다.
2. 천황이 재판을 면제받은 것은 동경제판의 법정이 형의 선고를 내릴 때 당연히 고려해야 할 일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3. 전쟁 개시에는 천황의 권리가 필요하였던 것인데 천황이 전쟁을 바라지 않았다면 천황은 당연히 그 권위를 유보하였어야 마땅했다.
4. 천황은 평소 주변의 진언(進言)을 받아들여 행동했어야 한다는 견해는 증거에 반한 것인지만 설사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천황의 책임은 경감되지 않는다.
5. 나는 천황이 처형되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나의 관할 밖이며 천황이 재판을 면한 것은 모든 연합국의 최선의 이익에 기한 결정이었다.

재판의 전과정을 재판장으로서 심리한 웨으로서는 사실관계와 증거, 해당 법률이론에 가장 정통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사람으로서의 위와 같은 논평은 무게 있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 재판의 변호인단의 한 사람인 오웬 커닝햄은 가장 혹독한 비판자 중의 한 사람이었다. “검찰측에서 개인의 책임에 관하여 진실을 원하였다면 왜 천황을 증인석에 부르지 못하였던가”라고 그는 반문하였다. 이어 그는 “아무도 천황이 도조의 꼭두각시였다고 믿을 사람은 없다”고 단언하였다. 동경제판의 결과에 대해서 그 재판을 담당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켜본 언론도 천황의 면책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수 없었다. 『뉴욕 타임즈』는 당시의 동경제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¹³⁰⁾

동경제판의 피고인석에는 결석자가 1명 있다. 그것은 천황이다. 천황은 재판에 기소되지 않아 법정의 권한 밖에 놓여졌지만 이것이 잘되었는지 어떠한지는 면 장래에 판단될 일이다. 이 결정에 의해 인명이 구해지고, 짐령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또한 일본의 민주화가 용이하게 되었다면 이것은 현명한 조치였는지 모른다. 그 어느 것이건 간에 이것은 장래의 판단에 맡기지 않으면 안된다.

도조의 변호사는 도조가 천황에게 해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안도

130) 『朝日新聞』 1948년 11월 14일자 기사(井上清, 앞의 책, 4쪽에서 재인용)

했다고 전하였다.『고쿠사이 타임즈(Kokusai Times)』는 천황의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감출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일본국민에 대한 사죄로서 퇴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방신문들도 있었다. 공산당 기관지『적기(赤旗)』는 가장 혹독한 비판을 가하였다.¹³¹⁾

아무튼 이미 재판은 끝났다. 미국과 일본은 더욱 긴밀해지고 있었고 추가재판은 물 건너가버린 상태였다. 소련과 미국, 그리고 중국 등 연합국 진영 내부의 갈등은 냉전으로 한껏 깊어졌으며 서로가 적이 되었다. 히로히토의 범죄와 그에 대한 재판의 관심은 사라져갔다. 세월은 히로히토의 편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히로히토는 살아났으며 동시에 동경제판의 정의와 형평은 사라졌다.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러나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다.

3. '731부대'의 경우

1) 개관

확실히 일본의 군대에는 어두운 부분이 있었다. 전쟁이 끝난 후 이것을 큰일이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악과 군인의 악을 혼동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그 말기의 증상을 일본군 본래의 자세라고 생각한다는 기분이 든다. 외지에서 많은 잔혹행위가 있었을 터이다. 그러나 그것은 전쟁터의 흥분, 오랜 주둔지에서의 정신적 균형 상실, 또는 상대방 계릴라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구별 불가능 등에서 일어난 것이었다. 아무래도 나치가 저지른 것과는 절대로 달랐다. …그 당시는 세상의 절반은 발광한 상태였다. 평상시의 표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전후 일본군대에 대한 규탄에는 이와 같은 일이 상당히 참작되지 않았다고 본다.¹³²⁾

전쟁은 언제나 참혹하고 무고한 죽음과 고통과 희생을 초래하게 마련이다. 어느 전쟁이나 그러한 비극을 넘긴다. 그러나 일본이 아시아에서 벌였던 많은 전쟁과 전투, 또는 아무런 전쟁과도 관계없는 점령정책의 수행과정에서 통상적인 전

131) Edward Behr, 앞의 책, p. 358

132) 竹山라는 사람이 쓴『昭和の精神史』의 일부(ねつ・きさし, 앞의 책, 198~199쪽)

쟁의 목적 외에 가혹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동경제판의 도마 위에 올랐던 몇 가지 사례만 보아도 그 끔찍함을 상상하기 어렵다. 이른바 상해사변 이후 남경정부 수립 때까지의 4년 동안 일본군이 살해한 중국인의 숫자는 중국군에 속했던 군대를 제외하고 141만 1천 명에 이른다. 남경학살사건에서만 9만 5천 명이 무자비하게 죽어갔다. 요코하마 재판에서도 '비인도적 범죄'의 사례는 이루 다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잔혹한 사건이 많았다.¹³³⁾

그럼에도 위에서 인용한 어느 일본인의 주장은 그것이 그렇게 '큰일'이 아니라 고 한다. 원래 '일본군 본래의 자세'가 아니었다고 한다. 그것은 단순히 '전쟁터의 흥분' 또는 '장기주둔의 여파'일 뿐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것은 '온 세상이 미쳤던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니 '참작'될 만한 일이라고 한다. 또한 나치가 한 것과는 다르다고 말한다. 그러나 일본의 잔혹함은 나치보다 훨씬 심각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예컨대 포로의 사망률 하나만 보아도 나치보다는 일본군이 더 학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¹³⁴⁾ 무엇보다도 지금부터 살펴보는 731부대야말로 나치가 유대인들에 대해 행한 가스질식사, 생체실험 못지않게 악랄한 범죄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2) 731부대의 구성과 전학상

(1) 731부대의 설치와 확대과정

일본 육군은 1915년에 이미 독가스에 관한 비밀연구계획을 수립하였다. 독일은 같은 해 4월 서부전선에 최초로 독가스 공격을 시작한 바 있다.¹³⁵⁾ 일본이 독

133) 예전대 시나가와 수용소의 '미친 의사'로 알려진 히사키치 토쿠다는 수용된 포로들을 상대로 콩단백질 주사를 놓는 등 의학실험을 하거나 제미로 학대한 혐의로 B, C급 전범으로 요코하마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다(『타임즈』, 1948. 2. 16. 기사, p. 31).

134) 일본군에 의해 포로가 된 연합군 오스트레일리아 군인은 2만 2천 376명이었고 그 가운데 8천 31명이 사망하여 35.1%의 사망률을 보인다. 그 반면 독일·이탈리아의 포로가 된 오스트레일리아 군인은 8천 184명이었고 그 가운데 265명만이 사망하였다. 더구나 일본군 포로로 있다가 귀환한 포로 가운데서도 1945년부터 1959년까지 사망률이 다른 복귀자의 4배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栗屋憲太郎, 『今、戦争犯罪 裁判を考る』, 史苑, 第52卷 第1號, 立教大學史學會, 1991년 8월호, 4~5쪽).

135) 1915년 4월 22일 서부전선 유프레(Ypres)에서 독일은 '성공적인 가스공격'을 시도하였다. 당시 가스와 포격의 연합공격으로 5천 명의 연합군이 사망하고 1만여 명이 부상하였던 것이다(Peter Williams & David Wallace, *Unit 731, The Free Press*, New York, 1989, p. 8).

일의 그같은 공격의 선례에 눈을 뜨고 곧바로 독가스 연구에 착수한 것이었다. 그러나 세균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조금 후였다. 일본 군부는 이미 1930년대 초 육군 의과대학 방역학과의 교수였던 젊은 의학자 이시이 시로(石井四郎) 박사로 하여금 생물학 무기를 연구하도록 장려하였다. 이시이는 경도제국 대학의 의학부를 졸업하고 간부후보생으로 육군에 입대하였다. 그는 여러 곳에서 군의관으로 근무하다가 1928년부터 2년간 해외출장을 떠나 유럽 여러 나라의 세균전 연구 현황을 돌아보고 귀국하였다. 그 결과 그는 서구 열강들이 모두 비밀리에 세균전을 준비하고 있어 일본이 세균전의 준비를 소홀히 했다가는 큰 곤란에 직면할 것이며 자원이 부족한 일본으로서는 가장 적절한 병기라고 육군성 간부들에게 설득하고 다녔다.¹³⁶⁾ 이시이는 그때까지 후방에서 구호활동밖에 기대하지 않았던 군의 및 의학이 공격에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역설하였던 것이다.¹³⁷⁾ 이와 같이 이시이는 소극적으로 세균전 연구에 협력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연구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다닌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드디어 육군성 군무국장 니가타(永田鐵山), 참모본부 작전 제1과장 스즈키(鈴木率道) 등 육군지휘관의 도움으로 1932년 동경 육군군의학교 내에 방역연구소를 세웠다.¹³⁸⁾ 이 연구소가 731부대의 최초의 시발점이었다.

1931년 일본군의 중국침략이 이루어진 후 이시이는 만주를 방문하여 자신의 연구소를 세울 부지를 물색하였고 1933년 하얼빈 외곽에 이 연구소를 세웠다. 그 후 몇 년간 이 부대는 약 300명 정도의 규모로 확대되었고 그 가운데 약 50명이 의사였다. 만주는 러일전쟁 이후 남만주철도의 관리와 일본의 지배지역 경비를 위해 탄생한 관동군의 지배하에 있었다. 형식적으로는 동경의 육군성이나 참모본부의 통제하에 있었으나 실제적으로는 독단으로 야기한 유조구(柳條溝) 사건 이후 관동군은 독자적인 전쟁수행 기능을 행사하고 있었다. 괴뢰국인 만주국

136) *Materials on the Trial of Former Servicemen of the Japanese Army Charged with Manufacturing and Employing Bacteriological Weapons*(이하에서는 단순히 Khabarovsk라고만 약칭한다), Foreign Language Publishing House, Moscow, 1950, p. 295

137) 常石敬一, 『消えた細菌戦部隊』, 東京:ちくま文庫, 1993, 23쪽

138) 이 연구소의 설립경과를 『육군군의학교오십년사』(1936년)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이 신설에 관해서는 해외연구원으로서 서구에 체재하였던 육군 일등 군의 石井四郎가 각국의 정세를 시찰하고 아국에 이에 대한 대응시설이 없어 일대 국방상의 결함이 있는 것을 통감하여…상사에 의견을 제시하여…신설에 이르게 되었다”(常石敬一, 위의 책, 24~25쪽).

을 관동군이 완전히 지배하면서 ‘국가통제계획의 실험장’이었던 만주에 ‘대륙과학원’이 설치되어 일본 본토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과학동원체계가 시험되고 있었다.¹³⁹⁾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시이 연구소가 탄생되었다 것이다.

1936년 8월 천황의 군명으로 ‘관동군 방역부’가 설치되고 이는 1940년 8월 ‘관동군 방역급수부’라는 이름으로 개칭된다. 부대장은 물론 이시이 군의정이었다. 1939년 천황의 명령으로 이시이부대는 재편 강화되었고 이 부대를 위해서 방대한 부지가 하얼빈 남방 약 25킬로미터에 있는 평판(平房)에 조성되었다. 이 부대의 건물을 짓는 데 2년이 걸렸고 3천 명의 인부가 동원되었다. 500명 규모의 부대였다. 평판지역은 관동군의 특수지역으로 선포되었고 그 지역 내 혹은 그 주변에 조차 관계자 외에는 출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심지어 일본군 항공기조차 그 상공을 비행 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이시이부대의 강화는 세균전의 준비기간이 끝나고 노熾한 사건에서 보여주었듯이 실전에서도 사용가능성이 있음이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1941년 아래 이시이부대는 731부대로 불리게 되었다. 이 부대의 편성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¹⁴⁰⁾

제1부(연구부) 각종 세균(페스트균, 콜레라균, 탄저균, 장·파라티우스균 등)의 세균전 사용을 위한 연구 및 배양, 구내 감염의 관리

제2부(실험부) 세균병기(폭탄)의 개발·설계시험, 안달(安達)의 옥외실험장에서의 실험 및 그 관리, 부대 보유의 비행기의 운행 및 관리

제3부(방역급수부) 방역급수 및 병원, 1944년부터는 노수기(濾水機) 제작공장에서 세균폭탄 용기를 제작

제4부(제조부) 각종 세균의 대량생산 공장, 세균의 저장

교육부 신입대원의 교육, 세균전 요원 양성

총무부 서무부라고 호칭, 사무부

자재부 세균폭탄의 제조, 세균생산을 위한 재료의 준비, 저장

진료부 부대원용의 병원

139) 연구비나 연구테마 선정 등에 있어 만주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은 특별한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 만주는 이들의 신천지로서 많은 과학기술을 생산하기도 하였다. 1934년부터 영업을 개시한 ‘아지아 호는 시속 130킬로미터의 고속열차로서 오늘의 新幹線의 모체가 되었다고 한다 (常石敬一, 위의 책, 20쪽).

140) 常石敬一, 위의 책, 81쪽

1940년 역시 천황의 명령에 따라 이시이부대는 목단강 지부를 포함해 4개의 지부를 설치하게 된다. 이와 같이 1940년에는 이시이부대는 거대한 본부와 4개의 지부를 가진 부대로 성장한다. 그 부대 정원은 3만 명으로 되었다. 각 지부의 정원은 3천 명이었다.

이 부대에서 수많은 의학적 실험과 세균전 적용실험이 이루어졌다. 세균을 운반할 벼룩의 양산과 이것을 적지에 투하하는 안전한 방법 등에 관한 끊임없는 실험이 실시되었다. 10 내지 15그램의 벼룩을 생산하는 배양기가 4천 개 이상 설치되었으며 벼룩을 담는 도기폭탄의 제조와 투하실험이 안달(安達) 실험장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은 하나의 예에 지나지 않았다. 수많은 세균전 실험이 이루어지고 성공에 도달해가는 '강력한 실험왕국'이 설치된 것이었다.¹⁴¹⁾

(2) 731부대의 비인도적 범죄행위

1941년 이후 1945년 항복 때까지 731부대로 보내어진 실험대상 약 3천 명이 생체실험으로 희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⁴²⁾ 만주사변에 의해 관동군이 체포한 중국인은 군인뿐만 아니라 스파이 용의자 기타 민간인이 포함되어 이들이 실험 대상이었다. 1943년 3월 12일자 '극비문서'로 분류된 「特移扱に關する件 通牒」라는 문서는 일정한 사람을 '특이급(特移扱)'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적국의 스파이의 경우 몇 차례 체포되어도 활동을 정지하지 않는 자, 역스파이로 이용하기가 불가능한 자, 절대로 입을 열지 않는 자, 사상범과 민족주의자나 공산주의자의 경우 죄상이 중하여 사형이 확정된 자, 죄상이 경미하더라도 석방하면 일본군에 불리한 자 등이었다. 각지의 현병대에서 잡혀오는 중국인과 조선인 가운데 위와 같은 분류범위에 들어가는 자들이 이시이부대의 희생물이 되었다.¹⁴³⁾ 소련인도 적지 않았는데 1945년 2월부터 8월까지 반년 사이에 40여 명의 소련인이 이시이부대에 이송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이시이부대의 희생이 된 사람들은 중국인, 조선인, 소련인, 몽고인 등이었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부류뿐만 아니라 어린소년과 소녀, 그들의 어머니, 심지어

141) Peter Williams & David Wallace, 앞의 책, p. 30

142) 실제 생체실험은 이미 1932년부터 시작되었다. 1935년부터는 생체실험에 대한 활동사진이 관동군 간부들에게 상영되기도 하였다(Peter Williams & David Wallace, 앞의 책, p. 32).

143) 常石敏一, 앞의 책, 97쪽

임산부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731부대의 감옥으로부터 살아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부대의 터널 입구를 들어서면서 모든 수인들은 '돌아오지 않을 여행'을 떠난 것이다. 생체실험에 의해 살해되었으며 살아남았던 사람들조차 1945년 8월 종전 직전에 모두 감옥에서 독가스로 살해되었다. 이 잔학상은 이 부대에서 근무했던 젊은 병사와 한 의사의 회고에 의해 더욱 잘 드러난다.¹⁴⁴⁾

내 나이 18살에 나는 새로 들어온 죄수를 검진하는 특수분대에서 731부대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죄수들은 모두 일본말로 작개비라는 뜻을 가진 '마루타'로 지칭되었다. 우리는 그저 그들에게 번호만을 부여했다. 마루타는 단지 번호였고, 한 개의 실험용 재료에 불과했다. 그들은 인간으로 간주되지조차 않았던 것이다. 나는 특히 두 소녀를 기억한다. 하나는 중국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러시안이었다. 중국인 소녀는 21살이었는데 반일운동을 하는 사람에게 숙소나 물건을 제공함으로써 그런 활동에 도움을 주었다고 했다. 러시아 소녀는 19살이었고 키예프 출신이었다. 중국인 소녀는 약 2년간 생존했다고 생각된다. 러시아인 소녀는 막판에 폭살되었다.

나는 그곳에 도착해서 인간실험을 발견하였을 때 매우 충격을 받았다. 과학자들의 대부분은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죄수를 동물과 같이 취급했다. 그들은 죄수들이 실험과정에서 의학발전에 기여했다면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비록 나의 업무가 인간실험에는 직접 관련이 없었다 할지라도 매우 두려웠다. 나는 서너 번이나 연구부장에게 사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거기서 빠져나갈 방법은 없었다. 만약 내가 떠난다면 비밀리에 처단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731부대의 감옥은 400명을 수용할 정도의 크기였으며 통상 200명을 수용하였다. '마루타'는 하루에 2~3명씩 소모되었다. '마루타'들에게는 강제로 주사 또는 몰래 음식과 음료 등을 통해 세균이 주입되었다. 일본군이 아시아 전역으로 침략, 주둔하게 되자 여성 '마루타'들이 성병의 연구대상으로 희생되었다. 심지어 임산부가 성병 주사를 맞고 출산하자마자 아이와 함께 해부되기도 하였다.¹⁴⁵⁾ 영하 40~50도에서 벌거벗긴 채 고통받으며 사망해가는 전과정이 촬영되었다.

이러한 잔혹성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들 자신에게도 큰 정신적 상처를

144) 이토 나리히코, 「731부대와 그 청산」, 『반인륜행위와 청산 : 5·18 광주민중항쟁 15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광주 : 5·18민중항쟁15주년행사위원회, 1995, 53쪽

145) Peter Williams & David Wallace, 앞의 책, p. 41

남겼다. 동경대 전염병연구소의 조교수로서 이 부대에 차출되어 근무하였던 어느 의사는 포로에게 페스트, 티프스, 콜레라균 등을 마시게 하고 그 죽어가는 장면을 입회하는 등의 일을 하다가 정신이상이 생겨 일본으로 귀국하고 말았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그는 1995년 9월 2일 자살하였다고 한다.¹⁴⁶⁾

(3) 악마의 혼적, 그 인멸의 노력

히로시마에 원폭투하가 있고 소련군대가 만주에 진입하고 난 직후인 8월 9일 관동군 사령관인 야마다(山田乙三) 대장은 731부대의 모든 증거물을 제거하고 서울로 소개할 것을 명령했다. 당시까지 남아 있던 죄수들이 모조리 살해되었으며 731부대에서 노역하던 6백여 명의 만주인과 중국인들도 기관총으로 사살되었다. 그들의 시체는 소각로에서 불타 없었으며 인체에서 적출한 표본들 역시 소각로에 넣어졌다. 다 태워 없애기에는 너무 많아 남은 인체 표본들은 인근의 성가리강(Sungari River)에 던져졌다.¹⁴⁷⁾ 인체실험의 혼적뿐만 아니라 이들을 수용했던 김옥의 존재조차 인멸하기 위하여 50킬로 폭탄으로 폭파하였다고 한다. 포로로 될 경우를 대비하여 자결용 청산가리를 10대의 군속에게까지 배부하였다.

8월 11일 부대원들은 귀중한 자료들과 함께 기차로 한국의 통화(通化)로 이송되었다. 이리하여 이시이부대장을 포함해 본부 근무자들은 거의 소련측에 체포되지 않았다. 소련과의 국경지대에 설치되어 있던 지부에서는 연락이 늦거나 증거인멸작업이 지연되어 많은 요원들이 소련군에 체포되었다.¹⁴⁸⁾ 중국을 털출한 이시이부대원들은 8월 21일 부산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100명을 단위로 상륙용 주정(舟艇)에 타고 산구현(山口縣) 해안에 도착하였다. 간부들은 평양에서 비행기로 일본에 귀환하였다.

3) 731부대와 미국의 혼정

(1) 실험결과와 면책의 교환

전후 일본의 세균전 조사는 젊은 군인 과학자였던 머레이 샌더스 대령에게 맡

146) ねつ・まさし, 앞의 책, 213쪽

147) 이토 나리히코, 앞의 글, 53쪽

148) 常石敬一, 앞의 책, 234쪽

어졌다. 그는 세균전의 방어와 보복에 관하여 연구하는 미국의 세균전 본부에서 일하던 유능한 세균학자였다. 일본에 파견된 그는 당초에는 731부대가 무엇인지 조차 모르는 상태였다. 미군의 정보기관인 C-2로부터 방역급수부(Water Purification Unit)에 대해서 브리핑받은 바 있었지만 731부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통역을 맡았던, 사실은 731부대의 중령이었던 나이토로부터 중대한 자료를 입수한다. 그것은 731부대의 조직과 인원, 임무를 요약한 12페이지짜리의 문서였다. 여기에는 천황을 필두로 하여 이시이부대의 전모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¹⁴⁹⁾ 나이토는 이 문서의 제공과 함께 731부대원의 면책을 요구하였다.

이 자료는 즉각 맥아더에 의해 보고되었다. 731부대의 모든 실험자료들을 얻기 위하여 샌더스 대령은 면책을 약속해주기를 주장하였고 맥아더도 이를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이시이부대의 지휘관들은 보관하고 있던 자료들을 인도하였다. 샌더스는 동시에 1945년 9월부터 11월까지 관동군사령관 요시지로 우메즈, 육군참모차장 도라시로 쿠와베, 이시이의 부관 도모사다 마스다 대령, 세균폭탄 전문가 주니치 니즈마 소령 등 주요 인사들을 신문하였다. 그 결과를 이른바 '샌더스 보고서'에 담아 맥아더에게 전달하였다.¹⁵⁰⁾

그러나 샌더스가 미국으로 귀환한 직후 『더 퍼시픽 스타즈 앤 스트라이プ스(The Pacific Stars and Stripes)』와 다른 일본 신문들이 일본 공산당 지도자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일본의 군의관 그룹 멤버들이 만주에서 미국과 중국의 포로들에게 전염병 비루스를 주사했다"고 보도하였다. 이 기사는 이시이 중장이 가짜 장례식을 치렀을 뿐이고 여전히 일본에서 살아 있다는 사실도 주장하였다.¹⁵¹⁾ 미국은 샌더스에 이어 일본의 세균전을 조사하는 책임자로 톰슨 중령을 임명하였다. 톰슨은 1946년 1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이시이를 직접 신문하였다. 건강을 이유로 이시이는 자택에서 그의 딸을 대동한 채 신문에 응하였다. 신문의 분위기는 대단히 부드러웠으나 톰슨은 세균전 자료에 관한 일급 비밀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대단한 자료가 나온 것도 아니었으며 심지어 생체실험이 이루어진 사실조

149) 이 문서는 Peter Williams & David Wallace, 앞의 책, pp. 257~261에 부록 A로 전문이 첨부되어 있다.

150) 이 보고서 역시 Peter Williams & David Wallace, 앞의 책, pp. 262~264에 부록 B로 실려 있다.

151) *The Pacific Stars and Stripes*, January 6, 1946

차 모두 부인하였다. 그외에도 여러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있었으나 톰슨 역시 전임자인 샌더스와 마찬가지로 731부대 관련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갔다. 톰슨의 보고서는 1946년 5월 31일 완성되었으나 세균폭탄의 제조와 대량배양기술에 대해서 자세한 결과가 언급되어 있을 뿐 이 부대의 전모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 샌더스, 톰슨 두 조사책임자의 보고서에는 그 어디에도 생체실험에 대한 보고가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731부대의 일부 근무자들을 체포하고도 731부대의 전모를 밝히고 있는 소련과 극적인 대비를 이룬다. 이러한 점 때문에 맥아더 사령부가 이시이를 포함한 731부대의 고위 간부들과 사전에 거래를 함으로써 그 자료가 소련측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대신에 면책을 약속한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¹⁵²⁾

1947년 4월 다시 미국으로부터 제3의 조사책임자가 임명되었다. 노버트 펠 박사였다. 이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731부대의 주요 간부들이 그들의 생체실험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펠에게 털어놓게 된다. 미국의 점령정책이 일본의 지배세력과의 협력 속에 원만하게 진전되고 있었고 소련과의 냉전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이들은 보다 안심하고 그 비밀을 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펠은 일본에 도착한지 얼마 되지 않아 가메이, 마스다, 가네코 등으로부터 전범으로서의 면책을 조건으로 생체실험에 대한 소상한 정보와 고백을 듣게 된다. 이때 확인한 내용을 맥아더가 워싱턴으로 타전한 내용의 일부이다.

제2부. 생체실험에 관하여 세 일본인이 설명하였으며 이시이가 묵시적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따르면 중국군에 대하여 최소한 세 차례 암전 실험(field trials)이 실시되었으며 400킬로그램의 건조된 인체조직이 평판에서 1945년 8월 파괴되었다. 이시이의 완곡한 진술은 생체실험 프로그램을 알고 허락하였던 지휘관들이 있었음을 알려준다. 이시이는 그 자신과 지휘관, 부하들에 대하여 전범으로부터의 면책을 문서화된 형태로 보장해준다면 그 프로그램을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진술한다. 이시

152) 이 기간 동안의 경위를 설명하는 다음과 같은 증언이 있다(Peter Williams & David Wallace, 앞의 책, pp. 160~161 참조).

“미국인들은 이시이, 기타노 등이 중전 후 일본으로 비밀리에 돌아와 서로 비밀스런 접촉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다. 1945년 말과 1946년 초반에 미국인들은 이시이와 중장, 소장 등 간부들 5명과 가마쿠라의 음식점에서 만났다. 이 회동에서 이시이는 실험과 세균무기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였다. 반대로 그 부대의 어느 누구도 전범으로 기소되어서는 안된다고 요구하였다. 미국인들은 이 조건에 동의하였고 이들 사이의 비밀거래는 성립되었다.”

이는 극동의 지역적 여건에 맞는 세균전 연구와 냉전에서의 세균전 사용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공격 또는 방어에 관한 세균전의 전략적 또는 전술적 사용을 포함하여 고도의 포괄적인 이론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¹⁵³⁾

맥아더는 이 보고서를 통하여 전범재판에 대한 면책에 의해 생체실험의 결과와 자료를 획득할 것을 권고하고 있었다. 이러한 권고를 놓고 워싱턴의 3성조정위원회(SWNCC)는 뉴른베르크 재판에서 독일 의사들의 생체실험이 처벌된 것과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사실과 일본의 생체실험 결과의 입수가 국가안보를 위해 중요하다는 사실 사이에 토론을 벌였다. 국무성측이 나중에 이 사실이 알려질 경우 미국이 당하게 될 곤경을 제기하였으나, 대체로 일본의 생체실험 자료는 전범으로 기소하는 것보다 국가안보에 압도적으로 중요하고 이 자료들은 정보채널에서 보유되어야 하며 전범의 증거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¹⁵⁴⁾

1947년 8월 세균전에 관한 해군제독 토마스 잉리스(Thomas B. Inglis)의 보고서가 생체실험과 중국군에 대한 세균전 공격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있었다.¹⁵⁵⁾ 펠에 이어 에드워드 힐(Edwin V. Hill)이 세균전 조사담당자로 이 무렵 부임하였다. 그에게는 이시카와가 병리학적 표본을 확보한 내용을 확인하고 세균전 조사를 마무리 지으라는 임무가 부여되었다. 이시카와의 표본이란 각종 질병과 전염병에 관하여 생체실험한 인체의 표본을 말하는 것이었는데 많은 표본 가운데 연구에 적절한 것은 400개 정도였다고 힐은 보고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이시이는 인체실험의 수사라든가 사망률, 감염방법 등 개략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하였지만 인플루엔자 비루스는 ‘미국 소스’로부터 나왔음을 시인하였다. 그외에도 오타, 쓰아마, 우에다, 우치노, 가사하라, 기타노 등 731부대의 중요 부서 담당자들이 온갖 종류의 세균전 정보와 실험결과를 제공하였다. 힐은 “이 조사로부터 수집된 증거는 이 분야에서의 종전 연구를 엄청나게 보강하고 확대

153) 이 보고서는 이어 그러한 정보가 소련을 두려워하는 일본인들의 이용, 설득, 그리고 미국에 대한 협력에 의해 확보된 것이며 이시이에 대한 서면의 면책 약속이 그 부하들에 대한 협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쓰고 있었다(Peter Williams & David Wallace, 위의 책, pp. 194 ~195).

154) State-War-Navy Co-ordinating Sub Committee for the Far East, August 1, 1947, 미국 국립문서보관소 Record Group 153.

155) 이 보고서의 요약은 Peter Williams & David Wallace, 앞의 책, p. 266에 부록 D로 첨부되어 있다.

한 것”이며 “수백만 불의 경비와 수년의 노력으로 일본 과학자들이 획득한 자료”라고 하면서 이 귀중한 자료가 “다른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임을 말하고 있다.

1948년 4월경 이제 미국은 “필요한 정보와 과학적 자료를 민족스럽게 확보”하였고¹⁵⁶⁾ 동경제판에서 소련에 의해 더이상 이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채 거의 마무리단계에 왔음을 기뻐하였다. 미국은 자신의 국가이익을 위해 이 잔혹한 범죄를 역사의 무덤 속에 파묻고 만 것이다. 그 이후 동경제판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영국 또는 소련을 제외한 그 어느 연합국의 법정에서도 731부대 관련자들은 아무도 법정에 기소되지 않았다.

(2) 미국의 한국전에서의 세균전 문제

한국전쟁에서 미국이 세균전을 수행하였다는 북한의 주장은 이 전쟁에서 벌어진 가장 큰 심리전 중의 하나였다. 북한은 1952년 5월 평양방송을 통하여 2명의 미군조종사가 세균전에 참가하였음을 고백하였다고 발표하였다. 1953년 2월에는 중공에 의하여 격추되어 포로가 된 제1혜병항공대참모장 프랑크 슈웨이블 대령이 유엔군사령부는 합동참모본부의 명령하에 한국에서 세균전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장문의 성명을 냈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측은 증거문서로서 사진자료까지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1952년 6월 24일 클라크 유엔사령관은 다음과 같이 반박 성명을 냈다.¹⁵⁷⁾

과거 3개월간 공산지도자들은 유엔군이 한국과 중국에서 세균전을 사용하였다고 비난하는 일련의 음흉한 허위적인 성명을 발표하여왔다. 최근 공산측은 유엔군이 세균전에 참가한 것을 고백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이 비난을 실증하려고 기도하였다. … 유엔군은 한국전에서 어떠한 형식을 막론하고 세균전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사용한 일도 없다. 유엔군인을 재판하겠다는 공산측 위협에 반박하기 위하여 유엔군사령부는 공산측이 모든 유엔군 포로에 대하여 공정하고 인도적 대우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156) SANACC 351/3, State-Army-Navy-Air Force Co-ordinating Committee, March 11, 1948

157) M. W 크라 - 크, 『한국전쟁비사』, 성좌사, 단기 4288년, 339쪽

북한측이 제출한 증거에는 특별히 추운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제조되었다는 파리의 사진도 들어 있었다.¹⁵⁸⁾ 원래 이시이부대는 1939년 아래 만주의 오지와 소련과의 국경지대에서 발생한 유행성출혈열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그런데 전후 아시아지역에서 이 병이 발생하였다. 한국전쟁 기간 동안 한반도에서 이 병이 발생하였다. 그 이후에도 가끔 유행하는 이 병에 관하여 한국의 신문들은 그 원인을 이유불명으로 보도하고 있고 북한은 이를 “미군의 세균전 연구의 실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전쟁에서 유행성출혈열의 유행은 유엔군의 경우 1951년부터 시작하여 휴전에 이르기까지 38도선 부근에서 계속되었다. 환자수는 2천 6백 명에 이르렀고 사망률은 5% 가량이었다. 그 병은 남북한군 및 중국군에게서도 나타났다.¹⁵⁹⁾

이시이가 한국전쟁 기간 동안 미군의 세균전 업무에 개입하였다는 점은 그의 딸 하루미에 의해 부정되었다. 그가 한국에 갔다가거나 세균전 프로젝트에 관여하였다는 것은 완전한 허구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한국전쟁 기간 동안 미군에 방대한 실험용 동물을 제공한 일본실험동물실험소의 책임자인 고바야시를 자주 만난 사실은 시인하였다.¹⁶⁰⁾ 고바야시는 731부대의 민간인 요원이었다. 물론 이것이 그가 한국전쟁에서의 세균전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북한측과 유엔군측의 주장과 반박은 상호간에 결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로 끝없는 논쟁만 거듭해왔다. 한국전에 세균전이 시도되었다는 주장은 “입증할 수 없는 공격과 입증할 수 없는 반박의 거미줄” 속에 남아있는 것이다.¹⁶¹⁾ 그것이 북한의 허위선전이었던 아니면 실제로 존재하였든간에 731부대에 대한 망령이 이 한반도에 출현한 것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4) 731부대와 동경제판재판

(1) 세균전과 전쟁범죄

세균전은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 페스트균 등의 세균과 비루스를 이용하는 전

158) M. W 크라 - 크, 위의 책, 339쪽에 의하면 위 파리는 보통 파리에 불과하다고 유엔군은 반박하였다.

159) 常石敬一, 앞의 책, 141쪽

160) Peter Williams & David Wallace, 앞의 책, p. 245

161) Peter Williams & David Wallace, 위의 책, p. 252

쟁을 말한다.¹⁶²⁾ 세균전은 다른 형태의 무기와 다른 장점을 지니고 있다.¹⁶³⁾ 첫째, 폭탄제조 등에 필요한 거대시설이 세균전에는 불필요하다. 대량의 원재료 및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다. 둘째, 중성자폭탄과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생물만을 살상하는 것이 가능하다. 건물 등은 파괴되지 않고 남는다. 세균전의 공격을 받은 적은 그 회복에 상당한 시간과 경비가 든다. 이같은 세균전은 생물학, 의학의 진보에 의해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 또는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그 대량 생산과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세균전의 발전과 더불어 이를 금지하는 국제법적 규범도 탄생하였다. 1925년 제네바협정은 제1차 세계대전중의 비참한 독가스전의 경험¹⁶⁴⁾을 고려하여 독가스 사용을 국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안되었다. 그런데 당시 유럽 각국은 독가스보다 훨씬 더 살상에 효과적인 세균병기의 연구, 개발을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균병기의 금지도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는 수정안이 폴란드 대표에 의해 제의되었다. 참가국들은 이에 동의하여 수정안을 협정서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리하여 제네바협정 가운데 다음과 같은 문장이 들어가게 되었다.

아래의 전권위원회들은 각자 정부의 이름 아래 질식성 독가스, 독성 가스 또는 이와 유사한 가스, 이와 유사한 모든 액체, 물질 또는 고안을 전쟁에 사용하는 것이 문명 세계의 여론에 의해 정당하게 비난받는 것으로서 그 사용의 금지가 세계의 대다수 국가가 당사자인 제조약 중에 선언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지가 제국의 양심 및 행동을 구속하는 국제법의 일부로서 널리 수락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제약국은 위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조약의 당사국이 되지 않는 한 이 금지를 수락하고 이 금지를 세균학적 전쟁수단의 사용에 관하여도 적용하도록 하는 선언의 문구에 따라 상호간에 구속되는 것에 동의한다.¹⁶⁵⁾

162) 常石敬一, 앞의 책, 13쪽

163) 이시이는 세균전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역설하였다고 한다. “세균공격의 제일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효과가 크다는 데 있다. 철에 의한 공격은 그 주변의 일정한 대상밖에 소멸시키지 못하고 부상한 자도 곧 회복하여 전장에 복귀한다. 그러나 세균은 인간으로부터 인간으로, 촌락에서 도시로 그 효력을 넓힐 뿐만 아니라 그 해독성은 인체 깊숙이 침투하여 사망률도 가장 높다”([細菌戰, 晚聲社, 1975(常石敬一, 위의 책, 23쪽에서 재인용)]).

164) 독일은 독가스 사용을 금지하는 1899년과 1907년의 헤이그선언을 무시하고 Chlorine, phosgene, mustard gas 등을 제1차 세계대전 기간중에 사용하였다.

165) 常石敬一, 앞의 책, 14~15쪽에서 재인용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이 협정을 비준하지 않았다. 제네바협정 체결 이전인 1923년 워싱턴에서 개최된 군축회의는 세균병기에 관하여 국제연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의를 보고하였다. ① 세균에 의한 피해를 제한 또는 국소화(局所化)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② 페스트는 피공격자에게 위험한 동시에 이것을 사용한 군대에 있어서도 위험하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전쟁 기간에는 열악한 환경과 시설, 굶주림 등으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유행하게 마련이다. 미국의 L. A. 퀴스라는 학자가 1933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금세기가 될 때까지 전쟁 자체의 사상자보다 전쟁중의 전염병 등에 의한 사상자 수가 언제나 상회했다고 할 정도이다.¹⁶⁶⁾ 여기에다가 세균전을 수행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살상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세균병기에 대한 국제법적 금지의 노력이 경주되어온 것이다.

(2) 동경제판과 731부대

731부대에 관한 조사가 국제검사국에 의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토마스 모로우(Thomas Morrow) 중령은 오하이오 변호사회 회원으로서 국제검사국에 소속되어 중국에서의 일본침략에 대한 준비를 맡고 있었다. 모로우는 그 과정에서 생체실험 등을 통하여 비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731부대의 실체를 알고 이시이의 기소를 주장하였다. 세균전 분야에서 최고 지휘관이었던 이시이가 A급 전범으로서 기소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모로우는 키난 수석검사에게 낸 보고서에서 일본의 세균전 무기의 사용에 관한 정보를 개관하였다. 그러나 모로우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세균전 문제는 기소에서 제외되었다.

이 과정에서 소련은 동경제판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도록 노력했다고 주장해 왔다. 소련대표단의 주장은 키난에 의해 번번히 묵살되었다는 것이다. 뉴른베르크 재판을 마치고 이어 동경제판에 관여하였던 소련의 마르크 라진스키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소련대표는 키난에게 많은 증거를 제출하였다. 예컨대, 소련의 세르기 끌룬스키

166) 常石敬一, 위의 책, 16쪽

검사는 무기공급상 후지와라와 같은 재벌을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벌들은 일본의 공격적 정책의 배후였던 것이다. 그러나 소련측의 주장은 모두 키난에 의해 거부되었다. 키난은 일본군이 세균전 부대를 보유했다는 증거를 제공받았다. 소련측은 이 사건이 조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3개월 동안 키난은 이 정보를 혼자 수중에 두고 관심을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 맥아더 사령부는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아무런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음흉한 거짓이었다.¹⁶⁷⁾

1946년 12월 세균전 문제를 기소하지 않는다고 결정된 것은 사실이었다. 국제검사국에 의해 내려진 이 결정은 이시이부대의 비밀활동에 관련하여 충분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 비롯되었다. 소련은 1946년 9월 가와사와 및 가와시마의 신문조서를 미국측에 인도했으며 아직 동경제판의 기소가 마무리 되기 전이었던 것이다. 1947년 초에도 소련은 직접 이시이, 오타, 기쿠치를 신문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맥아더 사령부는 이 요청에 대하여 시간만 끌다가 거절하였고 희대의 범죄는 기소를 면하고 말았다.¹⁶⁸⁾

기소되지 않은 이 범죄가 동경제판 과정에서 몇 차례 등장한 사실이 있다. 먼저 동경제판이 개정된 후인 1946년 8월 29일, 검찰측 데이비드 넬슨 수톤 (David Nelson Sutton)이 이 문제를 제기하였다. 다음은 수톤과 재판장 사이에 오간 대화의 내용이다.¹⁶⁹⁾

수 톤 일본의 '타마 분견대(Tama Detachment)'는 그들의 민간인 포로를 의학 실험실로 보냈다. 그곳에서 유독 세균에 대한 반응이 조사되었다. 이 분견대는 가장 비밀스런 조직의 하나였다. 이 분견대에 의해 살해된 사람의 숫자는 확인할 수 없다.

재판장 그 실험실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려 하는가? 이것은 이 법정에서 현출되지 않은 전혀 새로운 주장이다.

167) Peter Williams & David Wallace, 앞의 책, p. 184

168) 소련측은 미국에 대해 소련측이 가진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를 데려와 조사업무를 보조할 수도 있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소련의 '대일이사회' 대표 쿠스마 테레비안코는 맥아더 사령부 월리비로부터 다음과 같은 최후결정을 통보받았다. "전 일본군 이시이 장군과 오타 대령은 전쟁 범죄로서 조사할 소련의 분명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여 소련측에 인도할 수 없다. 언급된 사람은 국제검사국이나 연합국사령부와 합동으로 조사를 고려중이다"(Peter Williams & David Wallace, 위의 책, pp. 188~189).

169) IMTTE, Vol. 2, Record of the Proceedings for August 29, 1946, pp. 4546~4552

수 톤 당장으로서는 이 문제에 관한 새로운 추가증거를 제출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웹 재판장은 이 새로운 주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제기되자마자 철회되고 말았다. 피고인측 변호인들은 수톤이 충분한 증거 없이 그런 주장을 했다고 반박하였다. 이들은 중국 국민을 위한 방역 프로그램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¹⁷⁰⁾

두번째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은 1947년 9월 8일과 9일이었다. 제임스 프리만 변호인이 일본군의 인도적 관심을 입증하기 위해 다시 오다지마 대령을 신문하면서 1,485명의 앵글로 색슨계의 포로들이 묵던 포로수용소로 '특정한 목적'으로 이송되어 당한 고통에 관한 보고서가 증거로 함께 제출되었던 것이다. 바로 그 다음 날인 9월 10일 사다오 아라키 피고인을 위해 로렌스 맥미누스 변호인이 한 발언에서 또 한번 731부대의 이야기가 나왔다. 맥미누스는 아라키가 독가스와 세균의 사용을 범죄라고 비난하고 이러한 파괴적 무기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 대해 검사는 반대하였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그러한 증거가 제시되지 못하였다.¹⁷¹⁾ 세균전과 731부대의 문제는 단지 이 짧은 몇 번의 언급으로 동경제판에서 다시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국제검사국은 이 세균전 문제에 관해 보다 방대한 자료를 입수하고 있었음을 알리는 문서가 발굴되었다. 국제검사국 증거서류 1896호로 분류된 문서는 「1943년 중국에서 1644부대에 의해 수행된 세균전에 관한 오사무 하타바 진술서」라는 제목을 달고 있었다. 이것은 1942년 이시이가 중경전투에서 세균전을 수행하고 있을 당시의 정보를 담고 있었다. 하타바는 이시이의 남경 1644부대 요원으로서 전쟁중 중국에 귀순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사장되었고, 이시이가 동경제판 또는 그 어떤 재판에도 피고인으로 설 기회는 영원히 없게 되었다.

한편 동경제판은 아니지만 생체실험을 한 사건이 B, C급 전범으로 심판받게 된 경우가 있었다. 1945년 4월 규슈에 억류되어 있던 미국 조종사들에게 생체실험과 혈관에 해수를 주입한 사건이었다. 이때문에 1948년 8월 27일 요코하마 재판에서 9명의 일본인이 교수형 또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¹⁷²⁾

170) Peter Williams & David Wallace, 앞의 책, p. 176

171) Peter Williams & David Wallace, 앞의 책, p. 216

5) 소련의 731부대 재판

동경에서와는 달리 동해를 건너 소련에서는 활발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일본의 항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련군은 킹한 산맥을 넘어 치치하로 진군하였다. 소련군은 공수부대를 통하여 하얼빈, 친킹, 뮤톈, 다이렌 등을 신속히 점령하였다. 이 작전에서 야마다 관동군 사령관을 포함하여 60여만 명의 일본군이 포로로 잡혔다. 뿐만 아니라 소련군이 노획한 문서 가운데 이시이부대의 활동과 그 부대로 보내어진 희생자들의 명단 등이 입수됨으로써 731부대의 전모가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포로가 된 도미오 카라사와 소령은 1946년 초기에 731부대의 전모를 자백하였다.¹⁷³⁾

이 재판이 열린 것은 동경제판의 판결이 선고된 직후였다. 1949년 12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 동안에 이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다. 항복 당시 관동군 사령관이었던 오도조 야마다를 비롯한 12명의 피고인들이 재판을 받았다. 이 재판에 참여한 서방 언론은 하나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세균전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731부대를 창설한 사실과 이곳에서 생체실험과 세균전 무기들을 제조, 실험한 사실들을 모두 자인하였다. 비록 소련에 체포된 731부대 관련자들은 적은 숫자였지만 이 부대와 그 잔혹한 활동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는 충분하였다.

731부대에서 실험실부를 포함하여 주요 부대장으로 근무했던 가와시마 소장은 이 하비롭스크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솔직하게 실험대상이 무엇이었는지 대답하였다.¹⁷⁴⁾

검사 피고인, 우리에게 왜 박테리아 전쟁이 일본이 아닌 만주에서 행해지고 있었는지의 이유에 대해 말하겠는가.

가와시마 만주는 소련과 인접해 있는 국가이고 소련과 전쟁을 치를 경우에는 만주에서 박테리아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용이하고 편리했을 것이다. 그리고 만주는 박테리아를 실험하는 데 편리한 장소였다.

검사 편리하다고? 어떤 식으로?

172) *Time*, September 11, 1945

173) *Khabarovsk*, p. 516

174) 이토 나리히코, 앞의 글, 54쪽

가와시마 만주에는 광활한 토지가 있고 충분한 실험물이 있었다.
검사 '실험물'이라니 무슨 뜻이냐? 헌병대에 의해 731부대의 수용소에 끌려온 사람들 말이냐?
가와시마 정확히 그렇다.

이 재판의 스미로노프 검사는 하비롭스크 법정으로부터 수천 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관객들의 귀에 들리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 “이시이와 그 일당들은 인류에게 수많은 TNT와 원자폭탄, 치명적인 세균을 투하하려는 꿈을 꾸고 있는 제국주의 진영의 반동적 세력의 품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라고 면책을 제공하고 있는 미국을 지칭하여 비난하였다.¹⁷⁵⁾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선고받았다.¹⁷⁶⁾

아마다, 가지쓰카, 다카하시, 가가와시마	25년간의 노동교화
가라사와, 사토	20년
나시	18년
미토모	15년
오누에	12년
히라자쿠라	10년
규루시마	3년
기쿠치	2년

소련은 이 재판에 담긴 내용을 전파하기 위해 외교적 채널과 미디어를 통해 안간힘을 다했다. 12월 24일 타스통신은 이미 세균전을 준비하고 실행한 일본군 인들의 기소 사실을 알리는 호외판을 내놓았다. 이 보도는 피고인들의 기소 사실을 요약하고 731부대가 히로히토와 육군성 등의 비밀 지령에 의해 움직인 사실을 담고 있었다. 몇 차례의 호외가 계속되면서 보다 상세한 재판 내용이 보도되었다. 심지어 미군포로에 대한 생체실험에 대해 가와시마가 자백한 내용도 실려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사는 소련과 일본 외에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한편 바로 12월 24일 4강대국의 연합국위원회가 열렸으나 전후 소련에 억류된 37만 6천 명의 일본인 송환문제가 제기되어 소련은 퇴장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175) *Khabarovsk*, p. 465

176) Peter Williams & David Wallace, 앞의 책, p. 222

다. 미국과 소련간의 냉전이 이미 한참 달아올랐을 때였다.¹⁷⁷⁾ 아무튼 하비롭스크 재판소식은 미국에게는 당황스런 일임이 분명하였다. 미국이 획득한 진실을 감추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소련의 공세를 무시할 수밖에 없었다. 이 재판은 또한 소련의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는 기회가 되었다.

한편 동경제판 시작 당시에도 이미 확보하고 있었던 731부대의 진실에 관하여 소련이 왜 침묵을 지켰는지 그 의혹¹⁷⁸⁾은 해명되지 않은 상태이다.¹⁷⁹⁾ 기소의 대상으로 관동군 사령관 우메즈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 소련이 731부대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다. 위에서 본 대로 이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 적은 있었으나 강경한 입장은 보이지는 않았다. 수톤 검사가 충격적인 731부대의 문제를 동경제판에서 제기하였을 때도 소련측 검사는 침묵을 지켰다. 미국이 이 부대의 실험결과를 인수함으로써 그 대가로 주요 지휘관들에게 면책을 준 것은 소련에게 그 실험결과를 넘겨주지 않으려 했기 때문인 것임은 위에서 본 대로이다. 그렇다면 소련도 구태여 이것을 공개함으로써 자신이 취득하고 확보한 세균전 비밀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였기 때문일까? 그렇다면 냉전이 죄인가?¹⁸⁰⁾ 그 후 소련은 1950년 2월 1일 미국 국무장관에게 인류에 대한 가장 악랄한 범죄이며 전쟁법을 위반한 세균전을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친왕과 다수의 장군을 고발하는 내용의 각서를 전달했다. 이들의 재판을 위한 특별국제군사재판소가 설치되어야 하며 그 앞에 가장 심각한 인도에 대한 죄를 범한 전범으로 기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같은 해 2월 3일 이미 극동위원회의 어떠한 특별한 결의가 없이는 친왕의 기소를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린 바 있기 때문에 더이상 그를 기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보냄으로써 답변을 대신하였다.¹⁸¹⁾

177) Peter Williams & David Wallace, 위의 책, p. 226

178) 하비롭스크 재판의 검사는 최후 진술에서 신문결과는 키난 수석검사에게 전달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전달된 날짜 등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B. V. A Rölling, "Introduction", *The Tokyo War Crimes Trial: An International Symposium*, edited by C. Hosoya, N. Ando, Y. Onuma and R. Minear, Tokyo : Kodansha Ltd., 1986, p. 209 참조).

179) B. V. A Rölling, 위의 글, p. 19

180) 냉전의 격화는 분리된 동서 양 진영의 주역인 미국과 소련으로 하여금 "전쟁범죄에 엄정한 정의를 가져오도록" 한 포츠담선언보다는 자신들의 국가이익에 매달리게 만들었다. 1946년 7월 24일 워싱턴이 맥아더에게 미국의 국가안보이익을 해할 수 있는 정보, 특히 과학적 정보의 보호를 명하였던 것은 그 하나의 실례이다. 이 명령에서 "영연방을 제외하고는 어떤 국가에게도 과학과 전쟁 물질의 연구와 발전과 관계된 정보가 누설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시하고 있었다 (Peter William & David Wallace, 앞의 책, p. 185).

181) Far Eastern Commission, 앞의 'The Japanese Emperor As a War Criminal', p. 6

1949년 하비롭스크에서 소련에 의해 재판을 받은 과학자들은 감옥과 강제수용소에서 복역했다. 1956년 소련은 히로히토의 사촌인 쓰네요시 타케다가 그의 731부대 구속 동료들에게 서신과 구호물을 차입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그가 구속자들을 방문하는 것은 거절하였다. 1956년 12월 13일 소련정부는 인도적 입장에서 모든 일본인 전범들을 석방하고 고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¹⁸²⁾

6) 731부대의 진실 탐색과 오늘의 731부대

(1) 731부대 진실 탐색의 길

731부대의 비인도적 범죄는 동경제판에서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진실은 확인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다. 미국과 일본은 계속 731부대의 진실을 은폐하고 있었다.¹⁸³⁾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단지 그 부대가 중국 동북부에 존재했다는 사실뿐이었다. 1982년 4월 6일 후생성이 중의원의 내각위원회에 「관동군 방역급수부 약력」이라는 수페이지짜리 문서를 제출하였다. 여기에는 이 부대의 정식 별족이 1936년으로서 수차례 재편 강화되어 종전시에는 지부를 포함하여 2,300명 가량의 부대원이 있었다는 사실만 기재되어 있었다. 중국 각지 및 노먼한에서의 세균전 실행이라든가 부대본부에서 대규모의 인체실험이 행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았다.¹⁸⁴⁾

그러나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일본의 일부 작가들과 언론인들에 의해 731부대의 진실을 알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 모스크바 외국어도서출판사에서 간행한 『세균전 병기의 준비 및 사용 협의로 기소된 전 일본군 군인의 사건에 관한 자료(Materials on the Trial of Former Servicemen of the Japanese Army Charged with Manufacturing and Employing Bacteriological Weapons)』(Moscow :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50)는 731부대에 대한 공식적 자료를 담고 있는 공간물이다. 여기에 위 하비롭스크 재판의

182) New York Times, July 20, 1965

183) 이러한 상황은 독가스 등 화학전에서도 마찬가지였다("대륙지령 110호, 독가스를 살포하라", 『신동아』, 1993년 4월호, 613쪽 이하 참조).

184) 常石敬一, 앞의 책, 266~267쪽

공소장, 피고인과 증인 신문조서, 판결문, 중요 증거들이 수록되어 731부대의 전모를 대체로 알려주고 있다. 그 후 일본에서도 아키야마(秋山浩)의 『특수부대 731』(三一書房, 1956) 등의 단행본이 나왔으며 『진상(眞相)』, 『문예춘추(文藝春秋)』, 『삼광(三光)』 등의 잡지에 이에 대한 기사 등이 실렸다. 그 후 이 부대의 진실은 탐정소설가인 모리무라 세이치가 3권의 다큐멘터리로 정리해낸 『악마의 포식』이라는 책자에 의해 그 전모가 가장 잘 드러났다.

이러한 진실이 드러나는 데는 당시 731부대에 배속되어 일했던 병사들의 참회나 회고가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다. 예컨대 다무라 요시오(田村良雄)는 731부대의 방역진료조수 병장의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목격한 내용을 고발하였다.¹⁸⁵⁾ 1991년 4월 중국정부에 의해 공식 간행된 전범재판기록 가운데 제3권에는 『세균전과 독가스전』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과 731부대 사이의 거래에 관해서는 1980년 존 파월이 발표한 논문에서 상세히 언급되고 있다.¹⁸⁶⁾ 그는 당시까지 정보공개법에 의해 획득한 비밀자료들에 의해 맥아더, 월러비, 법무부장 알바 키펜터와 국무·육군·해군성 3성조정위원회 사이에 벌어졌던 '면책 거래'를 폭로하였다. 맥아더 사령부와 미국 국무성 등 관련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던 많은 자료들이 공개되면서 보다 많은 진실이 밝혀졌다. 이 글에서 많이 인용한 퍼터 윌리암스(Peter Williams)와 데이비드 월레스(David Wallace)의 『731부대』라는 책자도 위와 같이 공개된 문서들과 생존하고 있던 수많은 관련자들을 인터뷰하여 정리한 획기적인 저작이었다.¹⁸⁷⁾

(2) 731부대와 관련자들의 오늘

전쟁이 끝난 후 731부대의 과학자들은 대부분 살아 남았다. 맥아더와 자신들의 지휘관들 사이의 거래로 보호되어 재건된 일본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들을 잡았다. 이들은 일본의 의학 또는 과학계에 원로 또는 존경받는 이름으로 남았다.¹⁸⁸⁾

185) 이 고발 내용은 『삼광』이라는 책자에 실려 있다. 한국어로 번역되었다. 중국귀환자연학회 편, 『만행자의 증언 : 중국에서 일본은 무엇을 했나』, 명성출판사, 1982, 26~50쪽 참조

186) John. W. Powell, "Japan's Germ Warfare : The U.S Cover-up of a War Crime", *Bulletin of Concerned Asian Scholars*, Vol. 12, No. 4, 1980

187) Peter Williams는 신문기자 출신이었으며 David Wallace는 731부대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사람이었다. 두 사람 다 영국의 TVS의 직원이었다.

188) Peter Williams & David Wallace, 앞의 책, pp. 236~241

기요시 아사누마 1942~43년 평판에서 근무. 자연자원연구소에서 일하게 되었으며 동료였던 아사하나는 후생성의 예방건강연구소의 곤충학과장이 되었다.

겐이치 카나자와 731부대에서 '송고' 진드기에 관한 연구 담당. 타케다제약회사의 연구부장이 되었다.

고지 안도 다이렌 소재 731부대의 왁찐 생산분소의 책임자였던 이 사람은 동경대학 전염병연구소의 교수가 되었다.

쓰네사부로 후지노 성가풀 지부의 전 직원. 오사카대학 생물학연구소의 교수가 되었다.

다치마루 이시카와 731부대의 병리학자로서 수천 개의 인체병리학 샘플을 집으로 가져온 이 사람은 가나자와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그는 이 대학의 의과대학 학장이 되었다. 지역신문이 그의 지역사회 공헌을 기려 메달을 수여하려 하였으나 그의 전쟁기간중의 경력을 안 학생들의 반대로 취소되었다.

렌 키무라 이시이에게 학위를 준 교토대학의 세균학자로서 젊은 의학도들을 731부대로 차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이 사람은 의과대학 학장이 되었다. 나고야 시립의과대학의 학장이 되었고 일본학술원장을 수상하였고 뉴욕과학원 회원이 되었다.

마사오 쿠사미 731부대의 약리학의 책임자. 쇼와대학의 약물학 교수가 되었다.

도루 오가와 731부대 남경지부에서 음식과 음료수를 중독시키는 티푸스, 장티푸스 등에 관하여 연구하여 연구으로서 나고야 시립의과대학에서 일하게 되었다.

고조 오카모토 1938년부터 1945년까지 평판에서 생체실험에 종사하던 병리학부 지도자로서 교토대학의 교수 및 이 대학의 의학부장이 되었다. 나중에 명예교수가 되었고 오사카의 친기대학 의학부장이 되었다.

기주 타베이 1938년부터 1943년까지 평판에서 이질, 티푸스, 장티푸스를 연구하면서 밀크에 배양한 균을 인체에 주입하여 실험하는 일에 종사. 교토대학의 세균학 교수가 되었다.

다케오 타미야 동경제국대학에서의 731부대를 위한 인재발굴 담당자. 1945년 4월 의과대학장이 되었으며 일본의 국립암센터 소장 및 일본의학회 회장이 되었다.

히데오 타나카 731부대의 벼룩 대량생산 전문가. 오사카 시립대학의 의학부장

이 되었다.

요시즈치야 남경지부의 해부 그룹의 선임자. 준텐도대학의 명예교수가 되었다.
도시카즈 암마다 731부대의 최기 세균부대 소장. 구마모토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다보쿠 암나카 1940년 2월부터 남경지부의 민간 기술자. 오사카 의과대학장이 되었다.

히사토 요시무라 731부대의 냉동실험을 지휘하여 많은 희생자들을 냉동치사시켰던 그는 1950년대 교토 시립의과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나중에 학장이 되었다. 일본의 남극탐험대의 고문이 되었고 1973년 일본 기상학회 초대회장이 되었다. 5년 후 그의 경력이 알려져 축출되었다. 나중에 코베여자대학장이 되었고 냉동식품회사의 고문이 되었다. 그는 냉동실험 자체를 시인하면서 그것은 '마루타'들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강변하였다.

히데오 후타키 731부대의 결핵연구 책임자. S. J Company 사장이 되었다.
기요시 오타 731부대의 군의관으로서 창제시에 세균공격을 이끌었던 사람으로서 전후 개업.

마사히코 타카하시 평판의 페스트 선임연구원. 치바현에서 의사 개업
수에오 아키모토 전쟁말기 평판으로 징집된 젊은 혈청학자. 731부대의 정신적 후유증으로 학문적 진로를 포기하고 의학 윤리에 관한 책을 썼다. 죽을 때까지 과거를 참회하면서 그들을 비난할 용기를 가지지 못했다고 실토했다. 아키모토는 자신의 동료들과 접촉을 끊고 그들이 과거를 부끄러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놀라면서 "만주에서 그들의 일이란 애국심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단지 악마적인 엘리트주의일 뿐"이라고 비판하였다.

슌이치 스즈키 산시의 731부대 지부의 경리부서의 대위. 나중에 동경시장과 자민당 간부가 되었다. 직접 생체실험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731부대의 비밀은 알았다고 시인하였다.

세이치 니즈마 샌들러의 신문기간 동안 731부대의 과학적 정보가 미국인에게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예방하였던 인물. 일본 자위대 동경연구소에 들어갔다. 80대에는 제국 일본군을 위한 클럽을 운영하였다.

즈네요시 타케다 명치천황의 손자로서 관동군 본부와 731부대 사이의 고리 역할을 했던 인물. 점령당국의 포고령으로 왕족의 태이틀을 상실. 그러나 1962년 10월 일본 올림픽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었다.

마사지 키타노 이시이 아래에서 731부대를 지휘한 2인자. 소장. 종전 후 와전 제조회사를 설립하였으나 부도

나이토 731부대에서 대체 혈액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말의 혈액을 주입하는 등의 연구를 담당한 자. 나중에 일본의 혈액은행 설립. 오사카에서 다국적의 Green Cross Corporation을 설립하여 다수의 전731부대원들을 고용. 1985년 한해 이익금이 60억 엔에 상당. 뉴욕과학원 회원. 1963년 일본과학원으로부터 인공혈액의 선구적 공헌으로 수상. 그러나 이 회사는 인공혈액을 여성 노인환자들에게 실험하였다고 하여 다시 소동. 1982년 사망

생존한 731부대 관련자들은 거의 과거를 밝히지 않으려 하였다. '나에오 이케다'라는 사람은 오사카 교외에서 혈액 관련 질병을 전문으로 하는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1968년 일본의 과학저널에 만주에서 행했던 생체실험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논문 속에서 파상풍균을 환자에게 주입하였음을 보여주었으나 이를 취재하는 기자들에게는 그 실험의 경위에 대하여 함구하였다. 일본정부 스스로 이 문제에 관한 엄중한 은폐의 노력을 하였다. 1945년 이시이는 부대원들에게 모든 비밀을 무덤 속까지 가져갈 것을 서약하도록 하였으며 서로의 연락과 공적인 모임을 가지지 않도록 하였다. 하급 직원들은 모두 공포에 떨면서 지냈고 연금을 청구하는 일까지 포기하였다. 그러나 점차 이들이 동료들과의 만남을 재개하였고 정기적인 추도 모임이 열리곤 하였다. 1981년 9월 5일 아마베의 마쓰모토 마을에 있는 호텔에서 관동군 731부대 모임이 공식적으로 열렸다. 동경 근교의 타마 묘지에는 이 부대에 바치는 2미터 높이의 탑이 세워졌다.¹⁸⁹⁾

731부대의 인쇄공이었던 '나오지 우에즈노'는 전쟁이 끝난 후 2~3년 동안 악몽 속에 시달렸으나 그 후 젊은 세대에게 무엇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도록 모든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의 의무라고 믿게 되었다. 이 부대의 사진사였던 '다다시 야마시타', 생체실험의 기술보조자였던 '마사쿠니 쿠루미자와' 등과 우에즈노는 접촉하고 있었다. '나오카타 이시바시'는 영영실조 실험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의학윤리의 문제를 토론하는 모임에 다니면서 참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참회파'는 소수였다. 1958년 8월 17일 동경의 타마 묘지 주변

189) Peter Williams & David Wallace, 위의 책, p. 243

에 있는 어느 가옥에서 종전 후 13년 만에 이시이는 처음으로 731부대원들 앞에 얼굴을 드러냈다. ‘과거 동지’들의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 전역에서 모여든 사람들 앞에서 여전히 국수주의적이며 엘리트주의적인 연설을 했다. 그는 731부대의 초기를 회상하였고 이 부대가 서구로부터 포위된 일본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하였다. 동시에 종전 후에 초래된 고통에 대해 사과하였고 그대신 731부대의 추억을 자랑스럽게 간직하라고 권고하였다. 이시이가 사망하였을 때 그의 뼈는 동경 타마 묘지의 731부대 기념물, ‘세이콘 탑’ 밑에 묻혔다. 매우 존경받는 사람을 위한 불교적 관습이었다.¹⁹⁰⁾

나치시대의 의사들로서 뉴른베르크에 섰던 칼 브랜트(Karl Brandt) 등 20명의 의사들, 그리고 아우슈비츠의 ‘죽음의 천사’였던 의사 멘젤레(Mengele)가 어떻게 추적, 처벌받았는지를 상기하면 이 부대의 지휘관들이 이룩한 성공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¹⁹¹⁾ 미국정부가 731부대에 의해 확보된 과학적 자료와 교환으로 면책을 제공함으로써 동경제판을 조롱한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동경제판 종료 후 독일과 달리 전범재판에 대한 재개나 공소시효의 연장 등이 없었던 일본에서 731부대원과 그들의 잔혹한 비인도적 범죄 역시 영원한 면책이 보장되었다. 그러나 여러 경로로 그들의 비밀은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고 역사 속에서 인류의 양심은 이 잔혹한 범죄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

4. 결론

히로히토 천황과 731부대 책임자들의 면책은 전후 미국과 일본이 별인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 게임의 전형적 사례였다.¹⁹²⁾ 미국은 히로히토의 보호로써 일본의 안정된 점령과 반공기지로서의 일본의 확보를 노렸으며 731부대 책

190) Peter Williams & David Wallace, 위의 책, p. 247

191) 나치 의사들의 생체실험, 우생학적 단종, 안락사 등의 범죄와 이들의 재판내용에 대해서는 Robert Jay Lifton, *The Nazi Doctors : Medical Killing and the Psychology of Genocide*, Basic Books Inc., New York, 1986 및 Alexander Mitscherlich & Fred Mielke, *Doctors of Infamy : The Story of the Nazi Medical Crimes*, Henry Schuman, New York, 1947 참조.

192) Herbert Bix, 앞의 글, p. 13

임자의 방면으로 보다 구체적인 세균전 자료를 입수하게 되었다. 일본은 비록 신의 권위를 포기당해야 했지만 천황제의 존속으로 전전의 ‘국체’를 유지하는 데 성공하였고 가장 비인도적인 범죄의 상징이었던 731부대의 참혹함을 역사에서 지울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거래로써 미국은 돌이킬 수 없는 반대급부를 내놓아야 했다. 천황의 불처벌에 의하여 일관되지 못한 전범처리, 나아가 전후처리의 본질을 드러내게 되었고 731부대의 면책으로 미국의 도덕성에 큰 흠집을 내기도 하였다. 연합국의 반발을 초래한 것은 물론이고 일본조차 전범재판을 정치적이며 보복적인 것으로 비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소나무는 용감하네

그 색깔을 바꾸지 않고,

눈으로 덮힌 채

국민들도 그리하네

당연히 그러해야 하는 일이지만

1946년 말 히로히토가 지은 시이다. 이 시를 통하여 연합국의 점령에 의해 그 ‘색깔’을 바꾸지 말고 ‘점령이라는 눈’을 견디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¹⁹³⁾ 과연 일본국민은 그의 주문대로 과거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¹⁹⁴⁾ 동경제판의 한계와 천황제의 잔존은 일본의 철저한 반성의 기회를 박탈하였고 이어 우익세력의 재집결을 가져왔다. ‘평화헌법’ 아래에서 자위대의 막강한 재무장과 사회세력으로서의 우익집단의 발호가 야기된 것이다. 1973년 5월 26일 마쓰하라 에키치(増原惠吉) 방위청장관은 천황을 방문하여 일본의 군사상황을 ‘내진(內奏)’하였던바 천황은 “구군대의 좋은 점을 이어받아 군비를 한층 발전시키라는 격려”를 하였다. 이것이 문제되어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방위청장관이 물러나기도 하였다.¹⁹⁵⁾ 천황제는 언제나 군국주의 세력과 우익집단의 중심적 고리가 되어왔다.

193) Edward Behr, 앞의 책, p. 368

194) 1986년 히로히토 즉위 60주년을 맞아 「아사히 신문」이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는 84%의 일본 국민이 천황제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만 교도 통신이 조사한 결과로는 히로히토에 대한 우호적 생각을 가진 국민의 비율이 10년 전의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경감한 사실을 보여주었다(Jerrold M. Packard, *Sons of Heaven : A Portrait of the Japanese Monarchy*, Macdonald Queen Anne Press, London, 1988, p. 348).

이러한 상황은 이미 미국의 당국자들이 예측한 바이기도 하다.

애치슨이 실무위원회에서 지적한 대로, 천황제도는 일본에서 시대착오적이고 중세적 정서를 가진 집단에서 활용되기 십상인 시대착오적이고 중세적 제도이다. 이 제도를 그대로 두는 것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래에서도 그대로 이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각오하는 일이다.¹⁹⁵⁾

이러한 견해는 일본을 정확히 알고 있던 소수 지식인들에 의해 공유되었다. 케티모어는 1945년 2월 그의 저서 『아시아에서의 해결(Solution in Asia)』에서 “일본이 ‘민주적 군주제’라는 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며 “천황은 일본의 팽창에 핵”이었음을 상기시켰다.¹⁹⁶⁾ 1860년대부터 시작된 서양인의 축출과 천황제 수호로 아시아인의 해방을 가져오자는 선동은 서구의 아시아 지배에 대해 일본이 투쟁하고 있다는 신념으로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¹⁹⁷⁾ 오늘날 과거의 전쟁이 빚어낸 불행을 셋는 데 진력하기는커녕 ‘천황’을 ‘핵’으로 하여 그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데 여념이 없는 오늘의 일본사회를 보면서 미국의 과거 일본점령정책과 천황면책 결정이 앞으로 어떤 사태로 연결될 것인지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일본의 상황이 지속되는 한 “과거는 결코 죽지 않는다. 과거일 수조차 없는 것이다(The past is not dead. It's not even past).”¹⁹⁸⁾

(변호사, 참여연대 사무처장)

195) 井上清, 앞의 책, 229쪽

196) McCleish to Bynes, July 6, 1945, FRUS, Potsdam I, pp. 895~896

197) Owen Lattimore, *Solution in Asia*, Little, Brown & Co., Boston, 1945, pp. 47~48

198) Ian Buruma, 앞의 책, p. 36

199) William Faulkner의 말(Michael Bilton & Kevin Sim, *Four Hours in My Lai*, Viking, New York, 1992, p. 358에서 재인용)

특집 : 동경제판이 은폐한 전쟁범죄를

‘인도(人道)에 반하는 범죄’로서의 일본 종군위안부 제도

—동경군사재판소에서의 기소 실패를 중심으로—

김 원

1. 서문

1994년 9월 1일, 소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스처로서 일본 무리야마 토미이치(村山富市) 수상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중 약 20만 명의 여성을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종사하게 한 데 대한 보상차원에서 문화행사 및 학생교류를 위해 10억 달리를 조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¹⁾ 그러나 그 계획에는 일본군을 위해 강제로 군 사창소에 종사한 한국, 중국, 필리핀 그리고 기타 국가의 소위 ‘위안부’를 위한 직접적인 보상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²⁾ 많은 한국 여성들은 일본의 계

* 이 글은, 1994년 10월 8일 조지타운대학 법률센터의 수잔 로스와 앤 골드슈타인 교수가 제출한 「여성의 권리에 대한 국제비교법 세미나 보고서」에 들어있는 글이다.

논문 작성자의 의도를 고려하여 Comfort Women은 ‘위안부’로 Military Sexual Slaves는 ‘군대성노예’로 번역한다. 그러나 Military Sexual Slavery는 ‘군대성노예제’로 번역하는 대신, 이해의 편의를 위해 ‘종군위안부제도’로 번역했다. 그리고 원 자료의 본문 중 고딕 부분이나 각주의 밑줄 부분은 번역과정에서 모두 고딕으로 통일하였다(역자).

1) “Seoul Women Protest Offer by Japanese on War Sex”, *New York Times*, 1994. 9. 1, A 11 참조(이하 “Seoul Women”)

2) 일본 제국주의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중 종군위안부제도를 위한 시설들을 설치했고 소위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강제로 아시아 여성들을 징집했다는 것은 지금은 잘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Yvonne Park Hsu, “Comfort Women from Korea : Japan’s World War II Sex Slavery and the Legitimacy of their Claims for Reparation”, 2 Pacific Rim Law &

획이 종군위안부제도 희생자 보상에는 부적절하다고 거세게 반발하면서 일본대사관 앞에서 계란세례를 퍼부으며 구호를 외쳤다.³⁾

'위안부'라는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중 일본군을 위한 성노예로 종사케하기 위해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강제동원된 약 20만 명의 아시아지역 부녀자를 일컫는 말이다.⁴⁾ 특히 한국은 1910년에서 1945년까지 일본의 식민지였기에 전체 희생자의 80%는 한국여성이었다.⁵⁾ 일본의 종군위안부제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알려진 잔학행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성노예로 강제종사한 여성들에 대한 막대한 인권유린에 대해, 유죄판결은 고사하고 국내외 재판소의 기소조차 전혀 없었다. 더욱이 일본정부는 아직도 이러한 잔학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다.⁶⁾

영어로 '위안부(Comfort Women)'는 일본어 '이안후(いんふ, 慰安婦)'를 번역한 말이다. 일본어로 '이안후'란 군인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성행위를 제공할 책임이 있는 여성들을 뜻한다. 영어인 '위안부' 혹은 '위안소녀'란 말은 「심리전 : 조사공보 No. 2」와 「일본군 내 편의시설」이라는 미국 군사문서에 나타나 있다. 이 문서들은 미군이 버마의 일본군을 패배시킨 1945년에 준비된 것들이다.⁷⁾ 미국

Policy Journal 97, 1993 참조 ; LEXIS 도서관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의 상세한 목록은 Karen Parker와 Jennifer F. Chew, "Compensation for Japan's World War II War - Rape Victims", 17 Hastings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Review No 3, 1994 볼호, p. 497 참조.

3) "Seoul Women" 앞의 주 1)

4) 윤정우, "정신대—한국종군위안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간행(필자화일), 1992. 또한 Parker, 앞의 주 2), p. 498 참조

5) Korean Women Drafted for Sexual Service by Japanese Army : Petition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이하 "Petition"),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1991. 12. 6(필자화일, 1919년 일본의 한국강제합병의 역사적 배경을 아시아전쟁을 향한 일본제국주의정책의 일부로서 논의한 것) 참조 ; Hsu, 앞의 주 2) 한국과 일본 역사의 일반적 배경

6) 일본정부는 처음에는 종군위안부제도와의 어떤 공식적인 관련성이거나 강제성도 부인했다. 일본 정부와 일본제국주의 군대가 관련이 있음을 드러내는 군대문서가 밝혀지고 나서야 일본정부는 어쩔 수 없이 공식적인 관련성과 강제성을 인정했으며 종군위안부제도의 희생자들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희생자들에게 어떤 직접적인 보상도 거절하고 있으며 대신에 아시아 여성들의 교육기금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이 기금은 희생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또한 "Seoul Women" 앞의 주 1) ; Parker 앞의 주 2), pp. 500~501 참조

7) South - East Asia Translation and Interrogation Center, "Psychological Warfare : Interrogation Bulletin No. 2", 1945. 1. 2(이하 "Psychological Warfare") ; General Headquarters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Amenities in the Japanese Armed Forces", 1945. 11. 15(이하 "Amenities") (필자화일) 참조. 위성단시의 국가기록보관소는 제2차 세계대전중 특히 버마, 마닐라 그리고 다른 남태평양지역에서 행해진

정부는 일본제국주의 군대를 위한 종군위안부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내용은 극비사항이었고 최근까지 기밀로 분류되어 묻혀 있었다.⁸⁾ 일본군 사창소 내의 여성들이 강제로 '매춘부'로서 종사해야 했다는 것이 증거로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고서들은 사창소를 군대를 위한 편의시설로 취급했다.⁹⁾

일본정부가 공식적인 군 사창소를 군인들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로 운영했다는 것, 그리고 그같은 행동이 전혀 법 적용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 전쟁중 여성들의 비인간화를 예시해주고 있다. 여성해방학자인 앤 스케일러는, '군국주의'란 도처에 널리 퍼진 힘으로서 역사를 미치광이로 만들고 여성의 비인간화를 영속시키며, 여성을 억압한 데 대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¹⁰⁾ 또한 "군국주의는 여성 해방론자의 의제로서만 여겨져서는 안된다. 그것은 성억압과 근본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고 주장했다.¹¹⁾

군국주의하에서, 특히 전쟁중에는 남성적인 가치가 과장된다. 반면에 여성적인 가치는 상대적으로 열등한 것으로 취급된다.¹²⁾ 그리하여 일찍이 프리드리히 니체는 "남자는 전쟁을 위하여 훈련을 받아야 하고, 여자는 그 전사를 위한 노리개로 훈련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¹³⁾ 일본군은 군 사창소를 설립함으로써 니체의 가르침을 따랐다. 전쟁터에 병사들을 위한 군 사창소를 설립하는 정책에 대한 정당화는, 병사들의 성적인 자극을 어떤 수단으로든지 만족시켜야 한다는 불가피한 가정에서 유래한다. 이런 가정에 기초해서, 여성의 존엄성과 인권은 침해당했다.¹⁴⁾ 군국주의하에서 그리고 특히 전쟁중에는 여성의 희생을 대가로 한 군사

일본의 종군위안부제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기밀해제된 미군문서를 보관중이다.

8) "Psychological Warfare"는 1973년 기밀해제되었다. "Amenities"는 1992년 기밀해제되었다.

9) 미국문서는 다음의 항목들을 일본군대에 필요한 편의시설로 열거했다. 군매점, 오락시설(운동시설, 영화, 게이샤 그리고 오락부대, 사창소), 신문, 우편. "Amenities", 앞의 주 7) iii 참조

10) Ann Scales, "Militarism, Male Dominance and Law : Feminist Jurisprudence as Oxymoron?", 12 Havard Women's Law Journal 25, 봄, 1989, p. 26

11) 위와 같음

12) 예를 들어, Susan Brownmiller는 파시즘의 본성은 남성 중심의 보통사회와 가치가 과장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독일인과 마찬가지로 일본인들에게 강간은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의 달성을 중대하고 논리적인 역할을 했다. 그 목적은 '열등한 민족에 대한 모욕과 폐괴 그리고 자신들이 속한 인종을 주인인종으로 세우는 것이다(Susan Brownmiller, *Against Our Will : Men, Women, and Rape*, 1975, pp. 48~49 참조).

13) 위의 글, p. 48

14) Scales는 성이 구별된 세계는 남성의 세계를 더 중시한다고 주장했다. 그녀에 의하면 전쟁터에서 상징화된 남성의 세계는 중요하고 강력하며 필요한 반면, 가정에서 상징화된 여성의 세계

창소 혹은 종군위안부제도가 남성들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졌다.

제2차 세계대전중의 이러한 성차별적인 관념으로 인해, 연합군은 동경군사재판소에서 모든 전범들을 처벌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여성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인식하지 못했다.

제2차 세계대전 말에 국제사회는 전쟁 개시자들에 대한 법적인 유죄를 결정하고 혐의자들을 법정에 세우기 위해 뉴른베르크와 동경에서 최초로 국제군사재판소를 설립했다.¹⁵⁾ 극동 국제군사재판소측의 수석검사인 조셉 키넌의 말에 의하면, 검사단 참가자들은 처음부터 “오랫동안 국제법질서에 분명한 영향을 끼칠 세계적인 드라마의 참석자”로서 자신들의 막중한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¹⁶⁾ 동경군사재판소의 검사들은, 동경현장의 주요 목적이 피고들을 단순히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 법의 올바른 개념과 평화유지의 필요성을 전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¹⁷⁾

이 논문의 목적은, 일본이 ‘종군위안부제도’를 통해 정책적으로 소위 ‘위안부’에 대해 성적 잔학행위를 자행했으며, 이 행위들이 동경군사재판소에서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서 기소되었어야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상, 필자는 ‘종군위안부제도’라는 용어를 군법하에서 병사들에게 성적 위안을 제공하기 위해 여성들을 징집, 납치 또는 매매하여 전쟁터로 이송시킨 공식적인 정책이라고 정의할 것이다. 이 군법에 의해 위안시설 내의 여성들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한되었다. 또한 이 논문은 여성의 비인간화가 전쟁기간중 용인되었다는 기본적인 가설을 밝히고, 이는 일본이 실행한 종군위안부제도에 의해 증명됨을 그리고 이후에 동경군사재판소가 이를 기소하지 못했음을 폭로하려는 시도이다. 또한 이 논문은 아시아 여성에 대한 인종차별이, 동경현장에서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서 ‘종군위안부제도’를 처벌하는 데 연합군이 실패한 또 하나의 이유임을 주장한다. 제2장에서는 종군위안부제도가 일본군법 하의 전쟁계획 및 그 작전의 일부로서 설립된 정책이었음을 기술한다. 제3장은 ‘동경군사재판소’ 설치 및 ‘인

는 바보같고 우연적이다(Scales, 앞의 주 10), p. 26).

15) Joseph B. Keenan, *Crimes Against International Law*, 1950, p. 7

16) 위와 같음

17) 수석검사는 말했다. “피고인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완벽한 사례를 제시한다고 하는 시급한 목적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사법환경 발전에 일조한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한낱 일순간의 일일 뿐이었다. 이러한 향후 사법환경의 개선은 국제형사법 재창조를 위한 재판 절차의 운용과 관련해 상당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주로 이 재판이 인간관계로 이루어지는 역사에 끼치는 충격의 긍정적 효과에 관심이 있었다”(위의 글, p. 155).

도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관할권에 대해 기술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의 법적 요소들을 분석하고, 종군위안부제도가 동경현장이 규정하고 있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함을 보여줄 것이다.

이 논문은, 동경현장법을 시행하고 ‘인도에 반하는 범죄’의 범법자를 기소할 책임을 진 동경군사재판소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국제법이 종군위안부로 강요당했던 아시아 여성 희생자들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들 여성들에 대해 저질러진 범죄들이 명백한 현장 위반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동경군사재판소는 한국여성과 다른 아시아 여성들에 대한 종군위안부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한 책임자들과 이들 여성들에 대해 집단강간을 반복했던 개인들을 기소하지 않았다. 또한 이 논문은 이들 여성들에게 행해진 범죄에 일본정부가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합군 특히 미국이 그같은 범죄를 기소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희생자들에게 당시의 적절한 법적인 구제절차를 제공하지 못한 책임을 나누어 떠맡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논증한다. 이들 여성들에게 가해진 성적 잔학행위는 50년이 넘도록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다.

2. 제2차 세계대전중 일본의 종군위안부제도

1) 군 사창소의 설립 : 종군위안부제도를 위한 여성의 납치 및 노예적 촉사

1930년대 초 만주사변과 상해침략에 뒤이어 1937년경 일본은 조직적으로 수많은 ‘군 사창소’를 설치하기 시작했다.¹⁸⁾ 일본 문서에서는 ‘사창’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지만, 군대 내에 그러한 시설을 설립한 목적은 납치한 여성들을 감금하고, 그들을 성노예로 쓰기 위한 것이었다. ‘사창’이라는 용어는 위안시설 내 여성의 존재가 자발적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위 ‘위안부’들은 강제로 성노예로 종사하도록 억류되었기 때문에 ‘사창’이라는 용어보다는 ‘군대

18) 일본과 중국은 1937년 7월 7일 노구교(蘆溝橋)사건으로 전면전쟁을 시작했다. 전쟁이 오래 끌게 되자 일본은 같은 해 12월 13일 남경을 점령했다. 남경으로 전진중, 점령기 그리고 점령 후 몇주 동안 일본군대는 대량의 포로들을 불법으로 죽였고 강간과 살인을 포함한 야만적 행위를 반복했다. 일반적으로 윤정옥, 앞의 주 4); “Petition”, 앞의 주 5) 참조

성노예기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일본정부는 애초부터 성노예제에 대해 어떠한 공식적인 관련도 부인했다.¹⁹⁾ 그러나 최근의 조사에 의해 밝혀진 군대문서에 의하면, 사창소 운영 및 여성들의 징집, 납치 등에 일본정부와 일본제국주의 군대가 명백히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²⁰⁾ 군대성노예기지—일본 문서에서는 '위안소'라 불리는—는 처음에는 중국에서 설립되었고 이후 대단위 일본군이 주둔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널리 확대되었다. 또한 베마와 다른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관한 기밀해제된 미국 보고서는 '위안소'나 '휴식처'가 최전선에 세워진 첫번째 시설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²¹⁾

일본정부가 전쟁터에 군대성노예기지를 설립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번째 이유는 점령지역 내에서 일본병사들이 민간여성들을 강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²²⁾ 일본이 중국을 침략했을 때, 상해와 남경에서의 대량 강간은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러한 반일감정이 일본정부로 하여금 민간여성들의 대량 강간을 금지하기 위한 소위 '위안소'를 설치하도록 만들었다. 둘째, '위안소'는 일본병사들에게 전쟁에 참여한 대가로서 성적 휴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군대가 해외에 주둔하고 있을 때, 병사들에게는 휴가도 없었고 매춘만이 그들이 유일하게 즐길 수 있는 오락이었다.²³⁾ 세번째 이유는 병사들의 비뇨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으로부터 온 직업적 매춘부들은 전쟁초기 중국에

19)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 Statement of Japan(Right of Reply), U.N.Doc. E/CN.4/SR.34, p. 16(1992). Parker에서 재인용 ; 앞의 주 2), p. 500 참조

20) 일반적으로 Yosiaki Yoshimi, *Jugun Ianfu Shiryoshu*, 1992(일본어, 군대성노예의 목적으로 여성들을 징집하는 데 일본정부와 군대가 관련된 것에 관한 공식적인 군사문서첩), 한국어 번역으로는 *The Collection of Documents related to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정대협(이하 "Documents Collection") 참조 ; 또한 Parker, 앞의 주 2), pp. 500 ~501(일본정부와 군대의 관련성을 가리키는 문서첩) 참조

21) "Psychological Warfare", 앞의 주 7) ; Parker, 앞의 주 2), p. 504(일본제국주의 군대 종군위안부제도를 위한 시설들을 설립한 아래와 같은 장소 목록 : 중국, 한국, 홍콩,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필리핀, 말레이지아, 싱가폴, 영국령 보르네오,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 베마, 일본군의 태평양섬들과 오키나와)

22) 1932년 상해사건 때 일본군에 의한 강간이 빈번하자, 오카무라 야스지(岡村寧次) 육군중장은 나가사키현지사에게 군대위안부를 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오카무라는 말하기를 "전시 전에는 위안부들이 없었다.... 군대위안부에 대한 경책을 제안한 사람은 바로 나는. 왜냐하면 소화 7년(1932) 상해사건 때 여러 건의 강간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원정군 참모부장으로서 나가 사기 현지사에게 위안부를 구해주도록 요청했다"(Inabe Masso, ed., *Materials from the General Okamura Yasuji*(일본어), "Petition"에서 재발간, 앞의 주 5), p. 11).

23) 일본군대는 대개 고국에 있을 때는 휴가를 받았다. 그러나 남서태평양지역에서는 휴가나 순회정책이 없었다는 증거들이 있다("Amenities" 앞의 주 7), p. 5).

있던 병사들 사이에 광범위한 비뇨기 질병을 전염시켰다. 군의 통제 아래, 군의 관들은 군대성노예기지의 여성들에게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했고 병사들은 콘돔을 쓰도록 요구되었다.²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정책은 전쟁기간 동안, 종군위안부제도를 목적으로 한 한국여성들의 조직적인 징집을 초래했다. 1910년 일본의 한국 강제합병 초기부터 1945년 종전 때까지, 일본의 식민정책은 한국의 천연자원, 경제·문화적 자원을 말살하는 것이었다. 인력착취의 한 형태로 일본은 해외 강제노동을 위해 한국민들을 대량으로 이송시키기 시작했다.²⁵⁾ 특히 전쟁중, '자발적인 여성노동 군대'라는 뜻의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한국여성들이 징집되었다.²⁶⁾ 그러나 이들 여성들의 대부분은 실상 그들의 의지에 반해 강제로 군대성노예가 되었다. 일본은 자원을 착취하고 특히 한국여성들을 군대성노예로 강요함으로써 조직적으로 한국민들을 말살하기 위한 계획을 실시했다. 즉 일본정책은 일종의 집단살해계획이었음이 논증될 수 있다.

한국여성들에 대한 징집은 사기와 기만을 통해 교묘하게 시작되었다.²⁷⁾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진행될수록 그리고 전쟁터에서 성노예들에 대한 요구가 커갈수록 노골적이고 공격적이 되었다. 납치에 참여했던 전 일본장교와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것은 노예사냥이나 다름없었다.²⁸⁾ 회생자들의 증언은 또 한 대부분의 군대성노예들이 납치되거나 거짓선전에 속아 모집되었음을 밝히고

24) 위생에 관한 일본규율에 따라 여성들은 일주일에 한 번 지정된 장소에서 군대 외과의사로부터 검사를 받았다. 콘돔 사용은 규율로 정해졌고, 병사들 사이의 비뇨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다른 수단들도 사용되었다(위의 글, p. 10~11).

25) 일본은 십년 동안 수만 명의 한국인들을 징집했다. 징집된 사람들은 아시아의 이웃들과의 전쟁으로 보내져 아시아 전역의 일본점령지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해야 했다("Seoul Women", 앞의 주 1)).

26) 윤정옥, 앞의 주 4) ; "Petition", 앞의 주 5) 참조

27) 기밀해제된 "Psychological Warfare"에서 기술된 사기징집은 한국에서 행해진 방법들 중의 하나이다("Psychological Warfare", 앞의 주 7), p. 1 참조). 그러나 중국에 끌려간 많은 생존자들은 일본군대에 의해 강제로 납치되거나 유괴되었다고 증언했다(정대협, *The Testimonies of Surviving Victims of Japan's Military Sesual Slavery*, 1993(한국어, 한국에서 생존한 회생자들의 증언록, 이하 "Testimonies"))

28) 일반적으로 "Documents Collection", 앞의 주 20) 참조. 한국에서 정집의 명수였던 요시다 세이지(吉田清治)는 군의 명령으로 그와 다른 병사들이 1943년 제주도에서 205명의 한국여성들을 납치했다고 증언했다. 요시다의 증언은 Zeno Park에 영어로 실렸다("Korean 'Comfort Girls' Recalls Days as a Sex Slave", *Agency France Press*, 1992. 1. 15, LEXIS, 세계 도서관, AFP 화일, Parker에서 재인용, 앞의 주 2), p. 505).

있다.²⁹⁾ 일본은 한국여성들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지아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여성들을 붙잡았다.³⁰⁾ 인도네시아에서는 일본군이 민간인 억류시설에서 몇 명의 네덜란드 여성들을 납치했다.³¹⁾ 군대성노예 시설의 운영은 지역에 따라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설들은 군법에 복속되었다.³²⁾ 그래서 일본정부와 군대는 군대성노예로 강제종사했던 이들 여성들에게 가해진 범죄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었다. 일단 납치되고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송되고 나면, 여성들은 군대성노예기지에서 비인도적이고 모욕적인 대우를 받아야 했다. 좁은 방에 감금된 채, 하루 평균 20~30명을 상대하도록 강요당했다. 주말 동안엔 그 숫자는 예사로 넘겼다.³³⁾ 이들 여성들은 무수한 병사들에 의해 집단으로 강간당한 희생자들이었다. 낮시간 동안에는 갖가지 노동을 해야 했고 모욕적인 대우를 참아야 했다.³⁴⁾ 심지어 이미 사용한 콘돔을 다시 쓰도록 강요당했다. 육체적인 학대과 모욕은 일상적인 일이었고 저항할 때는 다른 소녀들에게 표본으로 보이기 위해 공개처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다.³⁵⁾ 병사들의 요구에 반항한 여성들에 대한 위협으로 일본장교들은 강제로 중국병사들의 처형장면을 보게 했다. 일본정부를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에서 원고들 중 한 사람은 아래와 같이 말했다.

29) 일반적으로 "Testimonies", 앞의 주 27) ; Parker 앞의 주 2), p. 505(성노예의 납치와 사기징집을 논의한 글)

30) 일반적으로 "Documents Collection", 앞의 주 20) ; Parker 앞의 주 2), p. 506 참조. 현병과 군요원은 시골마을에서 여성들과 소녀들을 잡아오도록 명령받았다.

31) Jeanne O'Herne, "Cry of the Raped", *The International Public Hearing concerning Post War Compensation of Japan*(이하 "Public Hearing"), 1992. 12. 9, p. 91(인도네시아에서 일본군대에 의해 성노예로 강제되었던 네덜란드 여성의 증언, 필자화일)

32) 문서들은 성노예를 위한 세 가지 종류의 시설들을 보여준다. ① 일본군대에 의해 직접적으로 운영된 시설, ② 민간인들에 의해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일본군대 관리들에 의해 설립되고 통제된 시설, ③ 주로 개인시설들이었지만 일부가 군의 용도로 쓰인 시설. 그러나 이 모든 시설들은 일본군대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었다(Parker, 앞의 주 2), p. 504 참조).

33) 일반적으로 "Public Hearing", 앞의 주 31 참조. 희생자들은 매일 약 15번의 강간을 보고하지만 어떤 이들은 매일 20~30명 사이로 기억한다(Parker, 앞의 주 2), p. 508(동경 청문회에서 희생자들의 증언을 인용한 글).

34) 황금주, "Testimonies", 앞의 주 27), p. 93 ; Parker, 앞의 주 2), p. 409 참조(희생자들은 콘돔을 깨끗이 셋는 것을 "역겨워"했으며, 콘돔 하나를 다섯번씩 사용하게 했다고 증언했다)

35) 희생자들은 군대가 여성들에게 다른 성노예들이나 전쟁포로의 처형을 목격하도록 강요했을 때 그들이 겪은 폭력을 회상한다. 일반적으로 "Testimonies", 앞의 주 27) ; Parker, 앞의 주 2), p. 508 참조

하루는 한 일본병사가 두 명의 중국인을 기지로 데려왔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은 뒤로 손이 묶인 채 눈알이 도려지고, 일본도로 머리를 잘렸다. 한국여성들 역시 모두 이 장면을 목격했다. 그들은 한국여성들도 복종하지 않으면 똑같이 될 거라고 말했다.³⁶⁾

전쟁중 이들 여성들의 삶은 그저 병사들을 위한 잠시동안의 소모품이었다. 병사들이 필요로 하는 한에서, 그 여성들은 쓸모가 있었다. 상당수의 여성들이 죽음을 당한 연합군의 공중폭격 동안에도, 일본병사들은 살아남은 여성들에게 심지어 여우굴에서도 강간을 저질렀다.³⁷⁾ 군대가 이들 여성들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 때는 그들은 버려졌고 살해당했다. 전쟁이 끝날 즈음, 퇴각하는 일본군대에게 이들 여성들은 '성가신 것'이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종군위안부제도의 희생자들 중 단지 몇 명만이 살아남았다.³⁸⁾ 전쟁 동안 저질러진 잔학행위를 감추기 위해 일본군대는 군대 사창소의 실시와 관련된 모든 문서들을 폐기시켰다.³⁹⁾ 살아남은 희생자들은 거의 비슷하게 전쟁중 군대성노예로서 겪은 고통 때문에 얻은 심각하고 고질적, 의학적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를 이야기한다.⁴⁰⁾ 이 생존한 희생자들의 대부분은 집단강간을 당한 결과로 자궁을 들어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비뇨기 질병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 이 여성들 중 한 명은 자신에게서 유전받은 성병으로 40살에 정신병이 발병한 아들이 있다고 증언했다.⁴¹⁾

36) "Petition"의 "원고 김학순", 앞의 주 5), pp. 34~35 ; Washington Coalition for Comfort Women Issues, *Comfort Women's Testimony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1994, pp. 25~26.

노종자 씨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어떤 경우에는 '포로가 된 중국병사들의 처형을 보도록' 그 소녀들을 정렬시켰다. 중국병사들은 구멍을 향해 서있었고 도끼로 잘리고 나면 머리들이 그 구멍으로 굴러들어갔다. 일본병사들은 소녀들을 처형에 강제로 참여시킬 때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었으므로 너희들은 용감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37) "Psychological Warfare"에 따르면, 연합군의 폭격이 맹렬했고 대단했다는 것이 위안부들의 공통된 견해였다. 그리고 그 때문에 위안부들은 마지막 날들의 대부분을 여우굴에서 지내야 했고 심지어 그곳에서도 일을 해야 했다("Psychological Warfare", 앞의 주 7), p. 5).

38) 후미코 카와다, *The House with the Red Tiles*, Parker 제인용, 앞의 주 2), p. 509

39) 1945년 8월 1일 일본이 항복을 피할 수 없음을 알았을 때, 일본육군대신은 모든 본부에서는 일본에 해로운 정보를 포함한 모든 기밀문서를 즉시 없애라는 명령을 내렸다(*The Law of War : A Documentary History*, vol. II, pp. 1122~1123(Leon Friedman ed., 1972). 이하 *The Law of War*).

40) 일반적으로 "Testimonies", 앞의 주 27) 참조

41) 최명순, 앞의 글, p. 267

일본정부에 의해 군대성노예로 강요당했던 이들 여성들에게 행해진 범죄는 5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었다.

2) 기밀해제된 미국 군사문서 : 제2차 세계대전중 일본 종군위안부제도

기밀해제된 미군 문서, 「심리적 전투(Psychological Warfare)」와 「편의시설(Amenities)」은 군 사창소를 설립하고 이를 시설들의 운영을 통제한 일본의 공식적인 정책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⁴²⁾ 문서 내의 일본 전쟁포로들의 증언은 일본병사들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로서 「사창소」와 「위안부」를 들고 있다.⁴³⁾ 그 문서에 의하면, 일본군대는 심지어 병사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전방지역에 「위안소」를 설립했다. 미국 군사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전방에 만들어진 군 사창소는 일본병사들을 위한 확실한 오락거리였다. 전쟁 중 한 포로는 대단위 군대가 있는 곳에는 즉시 사창소가 설립되었다고 증언했다. 일본군 사창소의 대부분의 여성들은 일본인, 한국인 그리고 중국인이었다. 일본군은 사창소를 설립하는 데 열심이었지만, 수요는 공급을 엄청나게 넘어서 것으로 보인다.⁴⁴⁾

더구나 미국 군사문서의 내용은 미국과 연합군이 「종군위안부제도」를 성립시킨 군 사창소에서 여성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미군에 의해 밝혀진 이들 여성들은 그들이 모집되거나 일본 인들한테 가족들로부터 팔렸다고 증언했다. 당시 일본인들은 그들에게 전쟁터에서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을 제공하겠다고 그들을 속였다. 보고서는 모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 「봉사」행위의 본질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고 병원에서 부상당한 이들을 방문해 병대를 감고, 일반적으로 병사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과 관련된 일로 생각되

42) "Psychological Warfare"와 "Amenities". 앞의 주 7)

43) 미국 문서는 다음의 항목들을 일본군대에 필요한 편의시설로 들고 있다. 군대매점, 오락시설(운동시설, 영화, 게이샤, 오락부대 그리고 사창소), 신문 그리고 우편("Amenities". 앞의 주 7), iii)

44) 위의 글, p. 5

었다. 이들 기관들에 의해 사용된 유혹물은 돈, 가족의 빚을 갚을 기회, 쉬운 일 그리고 싱가폴라는 새로운 땅에서의 새로운 삶의 전망 등이었다. 이같은 거짓 설명에 의해 많은 여성들이 해외근무를 자원했고 미리 몇 배 엔이 주어졌다.⁴⁵⁾

미군은 또한 일본군이 여성들의 모집을 명령했고 한국에서 버마로 여성들을 이송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⁴⁶⁾ 기만의 증거와 일본군대에 의해 지휘된 강제 매춘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이들 여성들의 곤경을 무시했고 그들의 주장은 개의치 않고 그들이 매춘부들이었다고 결론지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기재되어 있다.

이들 여성들은 그들의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 그들은 매춘부나 병사들을 위해 일본군대에 부설된 '직업적 기지종사자들'과 다름없다.⁴⁷⁾

「군 사창소」의 운영과 관련된 일본군법과 규정은 일본군대가 적극적으로 종군위안부 시설의 설립과 운영에 관여했음을 나타내고 있다.⁴⁸⁾ 미국 보고서 「편의시설(Amenities)」은 버마, 마닐라 다른 태평양 지역의 군대성노예기지의 운영에 대한 일본군대 규정의 전체 내용을 번역하고 있다. 이는 미군이 성노예제에 일본군이 개입한 것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보여준다.⁴⁹⁾ 지역에 따라 종군위안부제도 시설이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설들은 똑같이 엄격한 일본군의 통제하에 있었다. 일본군 당국에 의해 직접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시설에서도 군대는 소유자에게 허가권을 발행했으며 이의 운영을 통제했다.⁵⁰⁾ 예외없이 모든

45) "Psychological Warfare", 앞의 주 7), p. 1

46) 버마의 사창소 소유주의 증언에 의하면, 「위안부」를 한국에서 버마로 데려오라는 제안은 일본군대사령부에서 시작되었고 수많은 비슷한 한국 내 일본 '사업가(business men)'들에게 전달되었다(위의 글, p. 10).

47) 위와 같음

48) 미국 군사문서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군 사창소에 대한 일본군의 규정을 수집해 번역해놓았다. 예를 들어 마닐라에서는 일반규정, 사업운영, 관리, 징계 그리고 특정 클럽에 대한 규정을 포함했다. 버마, 수마르타 그리고 남서태평양 지역에서는 다른 규정들이 있다("Amenities", 앞의 주 7), pp. 9~20).

49) 위와 같음

50) 미군문서 보고에 따르면, 사창소를 누가 소유하고 통제했는지에 대해 매우 상이한 의견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버마와 남서태평양 지역 곳곳의 많은 전쟁포로들의 증언은 사창소들이 개인적으로 소유되었으나 군대의 감독하에 있었음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마닐라에서, 이들 시설들의 사업운영은 마닐라지역의 담당병참조직 장교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었다(위의 글,

시설들은 그 운영을 위해 일본군대가 만든 문서화된 규정에 따라야 했다.⁵¹⁾ 예를 들어 일본군대는 시설들의 영업시간을 통제했고 병사와 장교들의 시간표를 작성했다.⁵²⁾ 또한 비록 많은 희생자들이 그들은 결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보고했지만, 시설들 내 성노예들을 이용할 때의 자세한 가격제도가 규정에 명시되어 있었다.⁵³⁾ 가격제도는 비자발적인 성노예제도를 공식적인 매춘 운영으로 합법화하려는 일본정부의 시도를 예증한다.⁵⁴⁾

사창소의 합법적인 운영을 암시하는 자세한 군대규정에도 불구하고, '군 위안소'제도의 실상은 자발적인 매춘의 운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들 여성들은 매춘부가 아니었고 그들은 강제로 성노예가 된 희생자들이었다. 일본정부가 그들이 단순한 매춘부였다고 주장함으로써 이들 여성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유린을 사소한 일처럼 취급하려고 했다는 사실과 미군이 그러한 일본의 논리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이들 여성들은 강간피해자로서 자신들의 의지와 달리 군대기구에 의해 군대성노예가 되었던 것이다.

성노예 시설의 운영을 위한 일본의 군대규정은 여성의 존엄성을 비인간화한

pp. 5, 9).

51) 이미경, "한국에서 위안부의 실상", *in War Victimization and Japan*, pp. 9~10; Parker 인용, 앞의 주 2), p. 504

52) 예를 들어, 남부지역의 군인마사에 멀린 특별사창소의 사용을 통제하는 규정에는 각 부대의 이용 일과표가 다음과 같이 열거되어 있다(위의 글, p. 13).

일요일 : 연대본부, 연대직속부대 / 월요일 : 1 대대, 4 야전병원 / 화요일 : 2 대대와 다른 부대 / 수요일 : 연대본부, 연대직속부대, 3대대 / 목요일 : 1대대 / 금요일 : 2 대대, 4 야전병원 / 토요일 : 3대대

53) 마닐라에서의 규정에 의하면, 가격은 군대의 동의를 얻어 마닐라지역의 병참조직담당 장교에 의해 결정될 것임을 가리키고 있다. 성노예로 일했던 여성들은 자신들의 소득을 장교에게 사업 상황을 보고하도록 요구되었던 관리자에게 맡겨야 했다. 가격표와 이 저금보고서의 형식은 "Amenities"의 별첨 A에서 보인다(위의 글, p. 10). "Amenities"는 또한 어떤 시설들을 위한 가격비율의 자세한 차트를 포함한다("Figure 4. Established Rates of south Sector Billet Brothel", 위의 글, p. 12 참조). 어떤 경우에는 일본군대가 병사들에게 성적 위안행위의 대가로 여성들에게 지불할 '군표'를 제공했다. 일본군대는 시설에 개인적으로 소속된 여성들에게 대가로서 현금 대신에 '군표'를 사용했다. 여성들은 이를 '군표'들을 계산하기 위해 관리자에게 반환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군표'를 받았던 사람들 중의 어떤 이들은 전쟁 말기에는 쓸모없다고 중언했다. 그러나 한국의 대부분의 희생자들은 시설의 소유주나 군대로부터 전혀 돈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증언했다("Testimonies", 앞의 주 27); Parker, 앞의 주 2), p. 505 참조). 여성들은 계급에 따라 남자 한 명마다 16센트씩을 받았다. 시설의 소유주는 지속적으로 여성들의 순소득의 60%를 차지했다("Wartime Army directly in Brothels, Report Says" 인용, UPI, 1992. 1. 27).

54) 20세기 초까지 일본에서는 매춘이 합법화되었기 때문에, 일본정부와 군대는 그들이 만든 종 군위안부제도를 합법적인 매춘의 한 형태인 양 감추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군대기관의 뚜렷한 본성을 보여준다. 병사들은 '위안소'에 들어갈 때는 군복을 입도록 요구되었다.⁵⁵⁾ 군복을 입은 병사들의 모습은 병사들에게 성적 위안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은 여성들에 대한 그들의 우월함을 반영했다. 또한 규정들 중 한 조항은 구체적으로 병사들이 '위안부 여성들에게 입맞추는 것'을 금했다.⁵⁶⁾ 그같은 규정은 병사와 이들 여성들간에 잠재적일지언정 어떠한 감정적인 관계도 제거하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개인적 관계나 감정적인 밀착을 금지함으로써, 이 규정은 군대 내 여성들의 역할에 대한 군사적 시각을 반영한다. 그들은 이들 여성들을 감정과 느낌을 가진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병사들의 성적 욕망의 충족을 위한 소모품으로 생각했다. 어느 평자가 지적한 대로 "군국주의는 여성들의 억압을 일반화한다."⁵⁷⁾

비인간화의 더 자세한 증거로서, 군대규정은 이들 여성들의 일상적인 행동을 제한하고 여성들의 신체를 통제했다. 보안을 이유로 여성들이 감시원 없이 밖으로 나가는 것과 심지어 한국어로 얘기하는 것조차 금지되었다.⁵⁸⁾ 건강과 위생을 이유로 그들은 군의관 앞에서 비뇨기 질병 검사를 받도록 요구되었다. 임신을 방지하기 위해 그들에게 주사가 놓여졌다.⁵⁹⁾ 임신의 경우에는 낙태가 강요되었다. 어떤 이들은 잘못 시술된 낙태로 죽었다.⁶⁰⁾

전쟁중 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너무 극악해서 차라리 죽음이 이들 여성들에게 휴식을 가져다주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부끄러움과 고통으로 자살했다.⁶¹⁾ 또 어떤 이들은 전쟁이 끝난 후 다른 병사들과 함께 자살하도록 강요당했다. 일본군대가 패배했을 때, 그들은 살아남은 여성들을 전쟁터에 버렸다.⁶²⁾ 베트남에서 연합군에 의해 발견된 여성들은 일본군이 퇴각한 후, 강

55) 예를 들어, Matsunaga Force에서 간행된 "Tacloban Brothel Regulations" 특히 "Dress shall be the liberty uniform"을 묘사한 부분. 다른 규정들 역시 병사들의 신분이 입구에서 검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켰다("Amenities", 앞의 주 7), pp. 14~20).

56) 위의 글, p. 11

57) Scales, 앞의 주 10), p. 42

58) 예를 들어, 일본군장교는 위안부들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한국어를 말한 한 소녀의 목을 잘랐다(김영실, "How can we permit their sins?", *War Victimization and Japan*, pp. 56~57; Parker에서 인용, 앞의 주 2), p. 508).

59) Parker, 앞의 주 2), p. 509; "Testimonies", 앞의 주 27)

60) 노골적으로 시술된 자궁절제술에 관한 보고서가 있다(Hicks, "They won't allow Japan to Push the 'Comfort Women' Aside", *Int'l Herald Tribune*, 1993. 2. 10, p. 33, Parker 인용, 앞의 주 2), p. 509).

61) 위와 같음

62) "Document Collection", 앞의 주 20)(많은 사전증거 중, 전쟁터에서 한국위안부로 판명된

을 건널 어떤 수단도 없이 강둑에 남겨졌다.⁶³⁾ 이러한 사례는 군대성노예로 종사해야 했던 대부분의 여성들이 전쟁이 끝날 때 겪은 전형적인 경우이다. 일본군에게는 이들 여성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필요했던 것이다. 전쟁에서 패하면 “군국주의는 여성들을 더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⁶⁴⁾

연합군이 일본군으로부터 태평양 전쟁지역을 탈환했을 때 종군위안부제도의 회생자였던 생존자들에게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다. 미군은 종군위안부제도의 실행에 일본이 관련되었다는 어떤 범죄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베마와 다른 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이 모은 증거가 이들 여성들에 대해 가해진 범죄에 대한 더 상세한 조사를 이끌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들이 ‘매춘부’였다고 결론지음으로써 여성들의 고통을 간과했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도 이들 여성들의 기본적 인권을 유린했던 가해자들에 대한 기소가 없었다. 다음 장에서, 필자는 동경군사재판소의 관할권과 ‘인도에 반하는 범죄’의 법적 요소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3. 동경군사재판소 헌장에 따른 ‘인도에 반하는 범죄’

1) 동경군사재판소의 관할권

1946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극동군사재판소 헌장에 따라 극동지역⁶⁵⁾의 무력분쟁의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 동경에 국제군사재판소가 설립되었다.⁶⁶⁾

여성들의 신체를 찍은 한 사진은 대량학살과 일본군대에 의해 자살이 강요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63) 베마에서 위안부들은 밤에 군대의 첫번째 퇴각으로부터 세 시간 후에 군인들을 따라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여성들이 이 명령을 따랐을 때, 그들은 군인들의 자취를 찾을 수도 없었고, 강을 건널 어떤 수단도 없이 강둑에 버려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영국장교가 이끄는 한 부대에 의해 잡힐 때까지 3일간 근처 집에 머물렀다(“Psychological Warfare”, 앞의 주 7), p. 5).

64) Scales, 앞의 주 10), p. 41

65) 극동국제군사재판소의 헌장은 1946년 1월 19일(이하 동경헌장), *The Tokyo War Crimes Trial*, Vol. 1, p. 3. John R. Pritchard, eds 1987에서 재발간(동경재판소의 초고집. 이하 TWCT).

66) 동경재판소는 포츠담선언의 원칙에 따라 세워졌다. 헌장은 태평양지역의 연합군최고사령관 맥아더 장군의 포고령에 의거한 집행이었다. 영국, 미국, 중국정부에 의해 협의·결정된 1945년 7월 26일의 포츠담선언은 일본의 모든 전쟁범죄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가할 것이라는 점

헌장의 제1조는 동경군사재판소가 정의롭고 신속한 재판과 극동지역의 주요 전범들의 처벌을 위해 설립되었음을 명시하고 있다.⁶⁷⁾ 동경군사재판소의 주요한 목적이 전범들을 처벌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노예로서 매춘행위를 강요당했던 아시아 여성들에게 가해진 잔학행위로 인해 기소된 일본군은 없었다. 성적 잔학행위를 기소하지 못한 이유들 중 하나는 동경군사재판소가 본질적으로 남성 중심의 기구인 군사재판소였다는 것일 수 있다. 동경헌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요소는, 헌장이 조약이 아닌 11개 기소권이 있는 국가들을 대표한 연합군 최고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의 포고에 의거한 것이라는 사실이다.⁶⁸⁾ 미군의 후원 아래 맥아더 장군은 동경군사재판소 설립과 재판의 책임을 맡아 동경군사재판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⁶⁹⁾ 따라서 동경군사재판소에서 기소와

을 경고했다. 선언문의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우리들은 일본인을 민족으로서 노예화하거나 또는 국민으로서 멸망케하려는 의도는 없으나, 우리 포로들을 학대한 자를 포함하는 일체의 전쟁범죄인에 대하여서는 엄중한 처벌을 가할 것이다”(“Declaration of Potsdam defining Terms for Japanese Surrender”, 1945. 7. 26 ; Keenan 재발간, 앞의 주 15), p. 1].

67) 동경헌장, 앞의 주 65), 제1조

68) Keenan, 앞의 주 15), p. 2. 맥아더 장군은 심지어 국제재판소의 재판관들을 11개의 기소국 기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임명할 권한을 가졌다. 그는 재판소절차의 규칙을 규정하고 동의할 권한을 가졌다. 그는 또한 자신이 임명한 재판소의 재판관들을 운용할 책임과 재판소가 정한 판결에 동의하거나, 축소 혹은 변경시킬 권한까지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형을 증가시키지는 못하는 권한이었다.

다음은 맥아더 장군이 임명했던 동경재판소의 재판관들이다(Sir Willian F. Webb, chief Justice, supreme Court, Queensland(Australia) ; E. Stuart McDougall, K.B., Quebec(Canada) ; Mei Ju - ao, Acting chairman, foreign Affairs Committee of the Legislative Yuan(China) ; Lord Patrick, Senator of His Majesty's college of Justice in Scotland, i.e., Judge, court of Session, Edinburgh(great Britain) ; Judge Bernard V.A. roling, Court of Utrecht(Netherlands) ; Mr.Justice Northcroft, Supreme court(New Zealand) ; Major General of Justice, I.M. Zaaryanov of the Military Collegium of the supreme Court of the soviet Union(Soviet Union) ; John P. Higgins, chief Justice of the superior Court of Massachusetts(United States, succeeded by Major General Myron C. Cramer) ; Judge Henri Bernard, Avocat General, Premiere classe(France) ; Judge R.M.Pal, High court of Cacutta(India) ; Delfin Jaranilla, Associate Justice, Supreme court of the Philippines(Philippine Islands).

Hon R. M. Pal, Justice, Member from the Government of India는 1946년 5월 17일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다. Hon. Delfin Jaranilla, Justice, member from the Commonwealth of the Philippines는 1946년 6월 13일에 재판석에 합류했다.

69) 미국의 정책에 따라, 동경헌장의 제17조는 판결이 공개재판에서 발표된 후, 그 후속행동을 위해 맥아더 장군에게 재판기록이 바로 전해져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판결은 그의 동의명령이 있을 때에만 집행되도록 되어 있었다(Article 17. Judgement and Review). 판결은 공개재판에서 발표된 것이며 그러한 판결이 내려지게 된 이유를 밝힐 것이다. 재판기록은 곧바로

판결은 미군정책에 의해, 특히 맥아더 장군을 통해 지대한 영향을 받았음에 틀림 없다.

두렷한 군사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동경군사재판소는 국제재판소로서 광범위한 관할권을 가졌다. 국제재판소는 '평화와 인도주의법에 반하는 범죄들에 관한 국제법'을 적용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⁷⁰⁾ 현장의 제5조는 군사재판소에 전쟁범죄를 재판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동경군사재판소의 관할권을 확립했다.⁷¹⁾ 전쟁범죄는 세 개의 일반적인 범주로 묶였다. '평화에 반하는 범죄', '통례의 전쟁범죄' 그리고 '인도에 반하는 범죄'. 극동지역에서의 잔학행위의 본성이 이들 전쟁범죄의 세 범주에 포함된다면, 동경군사재판소는 그에 따라 이 잔학행위들에 대해 기소해야 했다.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범죄' 사이에 가장 근본적인 차이라면, '전쟁범죄'가 무력분쟁이라는 맥락에서 한 국가의 무장한 일원에 의해 다른 국가의 개인에게 저질러지는 반면, '인도에 반하는 범죄'는 희생자의 국적과 상관없이 민간주민에게 저질러진다는 점이다.⁷²⁾ 뉴른베르크현장⁷³⁾은 '인도에 반하는 범죄'라는 특

연합군 최고사령관에게 전해질 것이다. 사령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형을 감소시키거나 변경시킬 수 있지만, 형을 증가시킬 수는 없다(동경현장, 앞의 주 65), 제17조).

70) *Tokyo Trial Transcript*, 1946. 5. 3. p. 22; Keenan 재발간, 앞의 주 15), p. 10

71) 동경현장의 제5조는 다음과 같이 관할권을 부여한다.

a. 평화에 반한 범죄 즉 선전포고 여부를 불문한 침략전쟁, 국제법, 조약, 협정 또는 보증 등을 위반하는 전쟁을 계획, 준비, 개시하는 행위, 혹은 상기 행위에 대한 공동계획이나 모의에 참여하는 행위

b. 통례의 전쟁범죄 즉 전쟁법규 또는 전쟁관례의 위반

c. 인도에 반하는 범죄 즉 전전 또는 전쟁중 저질러진 살륙, 섬멸, 노예적 혹사, 추방 기타의 비인도적 행위 혹은 범행지의 국내법 위반 여부를 불문하고 본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의 수행으로서 또는 이에 관련하여 행한 정치적 혹은 인종적 이유에 의한 박해행위, 상기 범죄의 어느 것을 범하고자 하는 공동계획 또는 공동모의의 입안 또는 실행에 참가한 자도자, 조직자, 교사자 및 공범자는 그러한 계획의 수행하에 행하게 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그 어느 누구에 의해 행사되었던가를 불문하고 책임이 있다.

72) M. Cjerif Bassiouni, *Crimes Against Humanity in International Criminal Law*, 1992. p. 529. 통례의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범죄 사이의 차이라는 면에서, M. Bassiouni는 전쟁범죄는 네 가지의 국제적 요소를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① 범죄행위가 전투라는 맥락에서 한 국가의 무장세력의 일원에 의해 다른 국가의 무장세력의 일원이나 민간주민에 대해 저질러진다. ② 그 행위는 초국경적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 ③ 그 행위는 한 국가 이상에 영향을 끼친다. ④ 그 행위가 무력분쟁에 관한 국제법규에 위반된다(이상이 '인도주의 법'을 구체화시킨다).

뉴른베르크현장에 만들어진 '인도에 반하는 범죄'는 희생자의 국적과 상이한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때로는 서로 다른 국가간이 아닌 일국 내에서의 행동에까지 형사책임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Bassiouni는 말한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쟁범죄의 처음 두 가지 국제적인 요소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쟁범죄의 나머지 두 개의 국제적인 요소는, 그 행위가

정 용어를 사용한 첫번째 기구였고, 동경현장의 제5조에 규정된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정의하는 데 범적인 기반과 본보기가 되었다. 뉴른베르크현장에 의해 '인도에 반하는 범죄'가 제정된 깊은, 전쟁과 관련해 자국민에 의해 자행된 범죄 행위로부터 민간주민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관할권의 확장을 위해서였다.⁷⁴⁾ 뉴른베르크현장은 제6조(c)에서 다음과 같이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정의했다.

전전 또는 전쟁중 어떠한 민간주민에 대하여 행한 살륙, 섬멸, 노예적 혹사, 추방, 기타 비인도적 행위 혹은 범행지의 국내법 위반여부를 불문하고 본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의 수행으로서 또는 이와 관련하여 행한 정치적, 인종적 혹은 종교적인 이유에 의한 박해행위⁷⁵⁾

나치독일에 의해 유대주민들에게 자행된 전례없는 잔학행위들에 직면하여 뉴른베르크현장은 역사상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국제범죄의 분명한 범주로서 다루었다. 제1차 세계대전중 온세계는 아르메니아인 집단학살⁷⁶⁾을

일개 국가 이상에 영향을 끼치고 근본적인 '인도주의법'에 위배되는 한,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나타나게 된다.

이들 국제적인 요소들에 덧붙여,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국가행위나 정책'의 소산이어야 한다. '인도에 반하는 범죄'와 달리 전쟁범죄는 그 행위를 지지하는 '국가 행위나 정책'이 아닌 개인들에 의해 자행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이들 두 국제범죄의 범주간에 본질적인 차이다.

73) 국제군사재판소현장, 1945. 82 U.S.T.S. 279, p. 284(이하 뉴른베르크현장)

74) 예를 들어, 1907년의 육전(陸戰)법규 및 관례에 관한 헤이그협약 전문(前文)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거주자들과 전투원들은 국제법의 원칙의 보호 및 그 지배하에 있게 될 것이다. 이 원칙은 문명국 사이에 널리 퍼진 관례, 인도주의법, 공공양심의 요청에 따라 제정되었다." (*Hague Convention of 1907 Respecting Law of War on Land*, 1908. 10. 10. 전문, 36 U.S.T. 860 T.S. No. 9, David Matas 재발간; *Prosecuting Crimes Against Humanity : The Lessons of World War I*, 88 *Fordham Int'l Law Journal* 86, 1989~1990, p. 94).

75) 뉴른베르크현장, 앞의 주 73), 제6조(c)

76) 아르메니아인 학살이란, 오스만터키 제국의 국경 안에 있는 모든 아르메니아인들을 섬멸시키기 위한 시도로 수십만 명의 아르메니안 남성, 여성 그리고 아이들을 터키인들이 살해한 것을 뜻한다. 터키인들에 의한 아르메니아인 학살은 독일과의 공모에 의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1914년과 1918년 사이에 20만 명 이상의 아르메니아인들이 살해되었다(Matas, 앞의 주 74), p. 86;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Pamphlet NO. 32, *Violation of the Laws and Customs of War : Report of Majority and Dissenting Reports of American and Japanese Members of the Commission of Responsibilities for the Conference of Paris*, 1919 인용).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르사이유조약은 인도에 반하는 범죄와 관련된 어떤 용어 또는 인권침해를 다를 다른 어떤 적당한 용어도 포함하지 않았다.⁷⁷⁾ 국제사회가 한 국가에 의해 그 국가 내 소수인종에 대해 자행된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처벌하기로 동의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지나서였다. 인도에 반하는 범죄가 적극적으로 기소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더 극악한 방식으로 되풀이될 것이라는 점이 국제사회가 배운 교훈으로 보인다.

그래서 한 국가의 무장세력에 의해 소수인종을 포함해 그 국가 내의 민간인에 대하여 가해진 범죄행위는, 통례의 전쟁범죄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뉴른베르크헌장의 원칙 아래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한다.⁷⁸⁾ 뉴른베르크헌장의 원칙에 따라 동경군사재판소의 제5조(c)도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다음과 같이 비슷한 용어들로 정의했다.

전전 또는 전쟁중 행한 살륙, 섬멸, 노예적 혹사, 추방 기타의 비인도적 행위 혹은 범행지의 국내법 위반여부를 불문하고 본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의 수행으로서 또는 이에 관련하여 행한 정치적 혹은 인종적 이유에 의한 박해행위 상기 범죄의 어느 것을 범하고자 하는 공동계획 또는 공동모의의 입안 또는 실행에 참가한 지도자, 조직자, 교사자 및 공범자는 그러한 계획의 수행하에 행하게 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그 어느 누구에 의해 행사되었던가를 불문하고 책임이 있다.⁷⁹⁾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포함해 광범위한 관할권에도 불구하고, 동경군사재판소는 희생자인 한국 식민지주민을 제외한 원고국(原告國)들의 민간주민에 대해 저질러진 범죄에 국한해서 기소와 판결을 하였다.⁸⁰⁾ 동경헌장에 의한 '인도에 반하는

77) *Treaty of Versailles*, 1919. 6. 28, 13 Am. J. Int'l L. Supp. 151, 16 Am. J. Int'l L. Supp. 207, U.K.T.S. No. 4(1919)(Cmd 153), Matas 인용, 앞의 주 74), p. 90

78) Bassiouni, 앞의 주 72), 제4장(인도에 반하는 범죄의 법적 요소들을 논의한 글)

79) 동경헌장의 제5조(c), 앞의 주 65); The Control Council Law No. 10. 또한 제11조(c)에서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어떠한 민간주민에 대하여 저질러진 살륙, 섬멸, 노예적 혹사, 추방, 구금, 고문, 강간, 기타의 비인도적인 행위들을 포함하지는 않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전학행위들과 범죄행위들, 혹은 범행의 국내법 위반여부를 불문하고 정치적, 인종적 혹은 종교적인 이유에 의한 박해행위'(Allied Control Council Law No.10 Punishment of Persons Guilty of War Crimes, Crimes Against Peace and Against Humanity, 1945. 12. 20. *Official Gazette of the Control Council for Germany*, No. 3, Berlin, 1946. 1. 21; Bassiouni 재발간, 앞의 주 72), p. 590).

80) 일반적으로 TWCT, 앞의 주 65) 참조. 동경군사재판소의 기소와 판결기록에는 위안부로서 강요받았던 한국여성들을 포함해 한국인들에 대해 저질러진 전학행위에 대한 논의가 보이지 않

'범죄'를 논의하면서 동경군사재판소 수석검사인 조셉 키년은 뉴른베르크헌장의 제6조(c)가 동경헌장의 제5조에 상응하는 조항임을 인정하였다.⁸¹⁾ 검찰단의 수석검사로서 키년은 재판소의 관할권 내의 전쟁범죄를 조사하고 기소할 책임을지고 있었다.⁸²⁾ 그러나 그는 일본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인도에 반하는 범죄'가 나치의 범죄행위와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독일과 달리, 일본은 전쟁발발 이전에는 대규모의 강제수용소를 쓰거나 일본의 소수인종을 박해하고 혹은 평화시에 사람들을 대량으로 추방시키고 노예적 혹사를 가한 경우도 그리고 그럴 이유도 없었다.⁸³⁾

이러한 주장은 한국의 강제징집자 대량 동원과 한국여성들을 종군위안부로 체계적으로 노예화시킨 것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일본의 소수인종에 대해 저질러진 박해에 관해 동경군사재판소의 아무런 재판절차 기록문서도 없기 때문에 이미 알려진 것으로부터 추정이나 가설에 의해 그것들을 재구성하려고 시도해야 한다.⁸⁴⁾ 동경군사재판소가 설립되었을 때, 기본 정책은 민간인들과 연합군의 전쟁포로들에 대해 자행된 범죄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다.⁸⁵⁾ 미국이 일본의 종군위안부제도의 수행을 알았다는 사실에 근거할 때, 연합군측에 대해 저질러진 범죄에 초점을 맞추게끔 한 정책은, 검찰측으로 하여금 한국과 다른 아시아 희생들에게 저질러진 범죄의 범위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하였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동경헌장에 의한 법적 요소들이 충족된다면, 전쟁중 일본정부에 의한 한국인들

는다.

81) Keenan, 앞의 주 15), p. 120

82) 동경헌장, 앞의 주 65). 제8조는 수석검사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수석검사:연합군 최고사령관이 임명한 수석검사는 본 재판소의 관할권 안에서 전쟁범죄의 조사와 기소를 책임지고 있으며 그 적절성에 관해 최고사령관에 대해 적절한 법률적 보좌를 행하여야 한다."

83) 위와 같음

84) TWCT, 앞의 주 65), xx 참조. 동경군사재판소의 기록 부록으로 역사가들은 동경군사법정의 재판과정을 추적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The Tokyo War Crimes Trials*의 편집자에 의하면, 재판의 역사적 중요성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재판소의 기록을 보존하거나 출판하려는 실체적 노력은 없었다. 일체의 기소관련 서류, 작업서류, 의사록, 서기록 등을 발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85) The Special Far Eastern and Pacific Committee의 "United Nations War Crimes Commission Draft Summary of Recommendations Concerning Japanese War Crimes and Atrocities" 참조 ; TWCT 재발간, 앞의 주 65), xi 참조